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선생님은 더 안심되게!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Childcare center Safety &
Insurance Association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선생님은 더 안심되게!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Childcare center Safety &
Insurance Association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목차

제1장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5

1. 안전사고 현황

6

2. 안전사고 유형별 특성과 연령(발달수준)

7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11

1. 실내 환경구성별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12

실내환경(현관, 보육실, 유학실 등)

12

(심화) 주제 1. 소방

19

(심화) 주제 2. CCTV 운영

26

(심화) 주제 3. 전기

31

(심화) 주제 4. 가스

39

2. 실외 환경구성별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43

실외환경(담장, 놀이터, 기타 등)

43

(심화) 주제 5. 석면

48

(심화) 주제 6.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51

(심화) 주제 7. 통학차량

58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61

1. 안전사고 대처법

62

2. 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응급처치

64

(심화) 주제 8. 화상

68

(심화) 주제 9. 응급처치(기도가 막힌 경우)

74

부록 ① 어린이집 분야별 안전점검 (소방, 전기, 가스)

81

부록 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의무화 및 콘텐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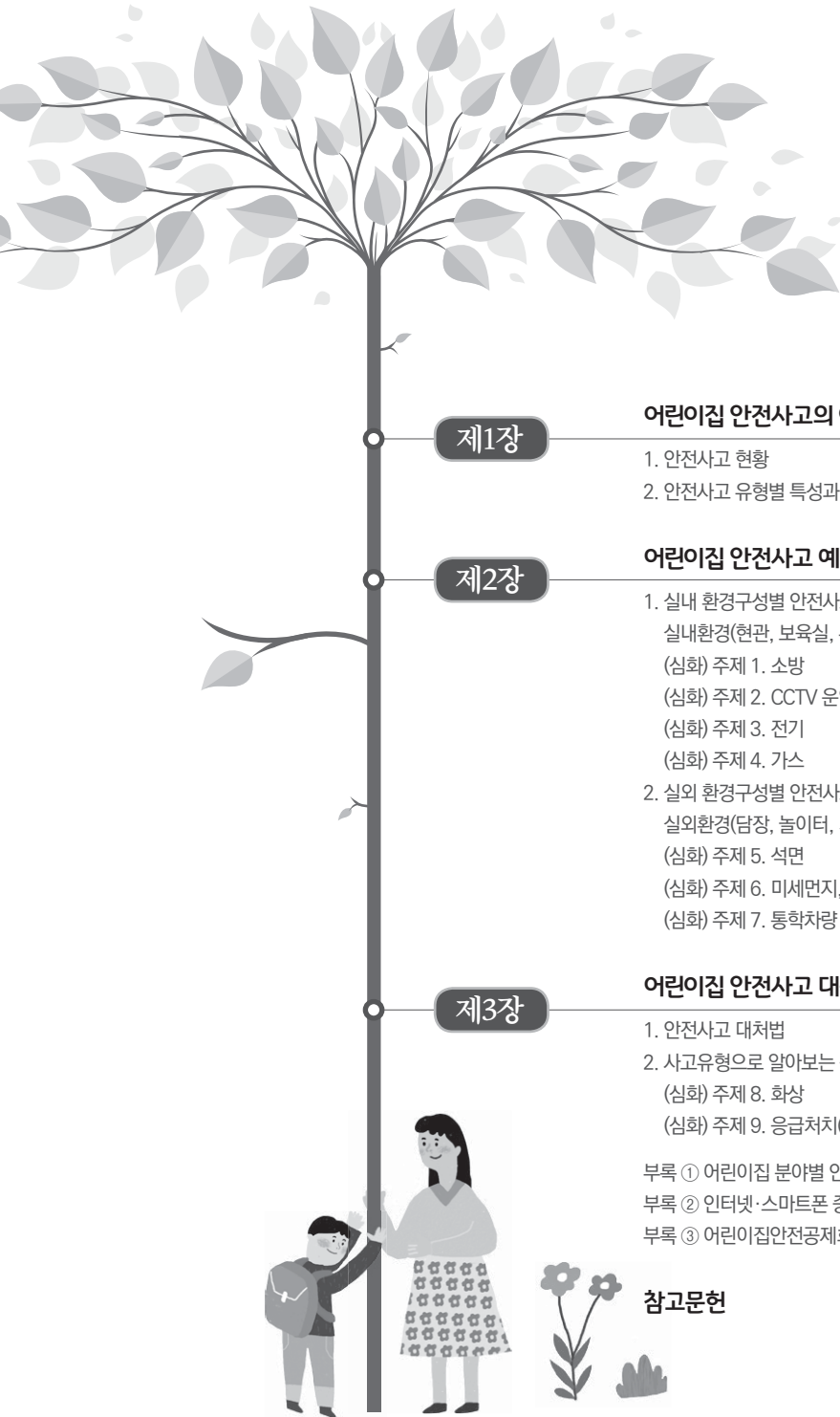
82

부록 ③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발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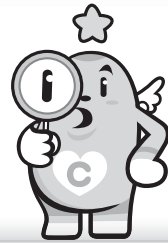
83

참고문헌

84



사례로 알아보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기획/편집

성명	소속	직위
김심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국	국 장
이미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안전팀	팀 장
신상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안전팀	대 리
장미령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안전팀	주 임

감수/자문

(가나다순)

성명	소속	직위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 수
김용주	한양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 수
류인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 수
문상희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주무관
이세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재난안전부	부 장
이승환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주무관
이진희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팀	팀 장
탁송수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제1장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학습목표

- 보육 활동에서 ‘안전’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이해한다.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연령별/발달수준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의 특성을 이해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르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보육활동공간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되, 그 속에서 가정과 연계된 공통된 안전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공간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치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과 원인 등을 통계자료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안전사고 현황

2. 연령(발달수준)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별 특성



01

안전사고 현황¹⁾

가. 연령별 보육현원 비율과 사고율 특성

2017년도 말 기준, 어린이집 보육 아동의 전체 인원은 1,450,243명이었으며, 이 중 남아 749,266명(51.7%), 여아 700,977명(48.3%)의 분포를 보임. 어린이집 재원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은 2세(391,715명, 27%)였으며, 다음으로 1세(330,868명, 22.8%), 3세(236,665명, 16.3%) 순으로 나타남

연령별 보육 현원 비율

(단위 : 명, %)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보육아동	1,450,243	139,654	330,868	391,715	236,665	188,540	156,093	6,708
비율	100	9.6	22.8	27.0	16.3	13.0	10.8	0.5

2017년도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로 공제회로 보상 청구(접수)된 총 19,897건의 연령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연령별 사고건수 및 사고비율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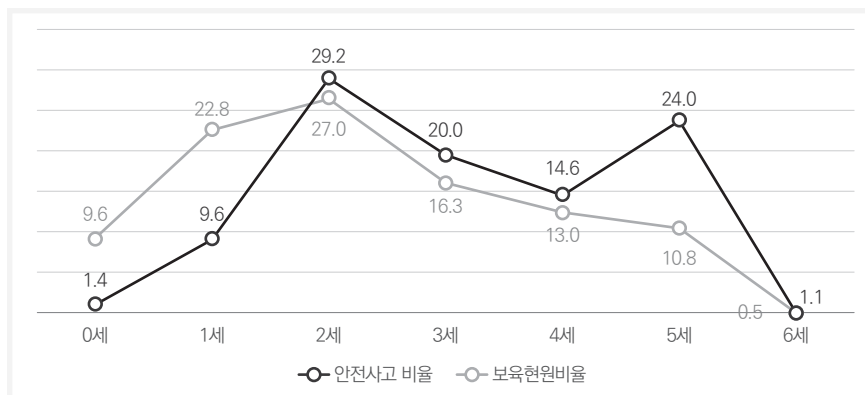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사고건수	19,897*	282	1,908	5,807	3,971	2,911	4,782	224
비율	100	1.4	9.6	29.2	20.0	14.6	24.0	1.1

*연령 미상 12건 포함

연령별 보육 현원 대비 사고비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연령별 현원 비율 및 사고비율

(단위 : %)



먼저, 전체 보육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2세(391,715명, 27.0%)가 사고 접수 건수(5,807건)에서도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재원 아동 수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절대 건수도 비례하여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음

1) [안전사고 통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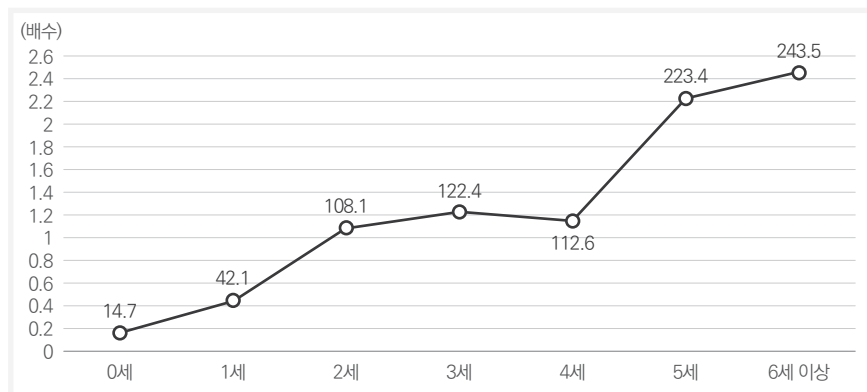
• 분석 대상 : '17년도 재원아동('17.3월~'18.2월)에게 발생하여 공제회로 '18.4월까지 접수된 건

※ 일반통계(보육통계) 수치는 '17년도 12월 말 기준임

나. 연령별 사고 비중과의 상관관계 및 안전사고 예방 중요성

연령별 사고율

(단위 : %)



* 산식: 연령별 사고비율 ÷ 연령별 보육현원 비율

전체 보육 현원에서 각 연령대별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대비 사고율과의 관계는 위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고확률이 확연히 높아짐을 알 수 있음
다만, 0세, 1세 영아의 경우 사고율은 낮으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체적 발달이 미약하며 사고(예 화상, 이물질삼킴에 따른 질식)로 인한 후유증 등 치명적 상처로 남을 수 있으므로, 각 연령별 사고유형에 대한 특성 파악 및 예방이 중요함

02

안전사고 유형별 특성과 연령(발달수준)

가. 안전사고 유형과 연령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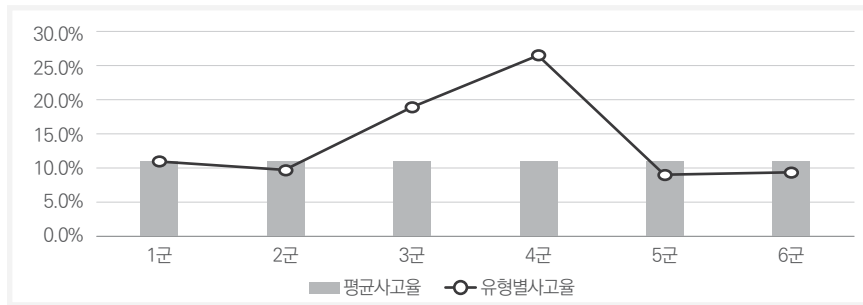
연령별 발달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현황 분석을 위해 각 사고별 비중 및 사고원인 등에 따라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연령별 사고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안전사고별 유형군과 사고건수 비율

구분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기타)
세부 사고유형	넘어짐 떨어짐 미끄러짐	물체에 부딪힘 사람에 부딪힘	꼬집음/물림/ 할렘/	화상	이물질삼킴(삼입) 및 흡입/ 음식물섭취	끼임/눌림/할렘/ 당김/찔림/베임, 기타
비율	6,786건 (34.1%)	6,098건 (30.7%)	1,559건 (7.8%)	379건 (1.9%)	365건 (1.8%)	4,698건 (23.6%)
0~1세	739	587	293	100	33	438
2세	1,974	1,696	684	119	71	1,263
3세 이상	4,073	3,815	582	160	261	2,997

0~1세 사고비율 대비 유형별 사고율

(단위 : %)



※ 0~1세 영아의 사고비율은 11.0%(2,190건/19,897건)임. (참고: 현원 비율은 32.4%)

사고유형별 특징

① 화상 사고(4군) 발생률*이 특히 높게 나타남

* 전체 379건 중 0~1세 100건(26.4%)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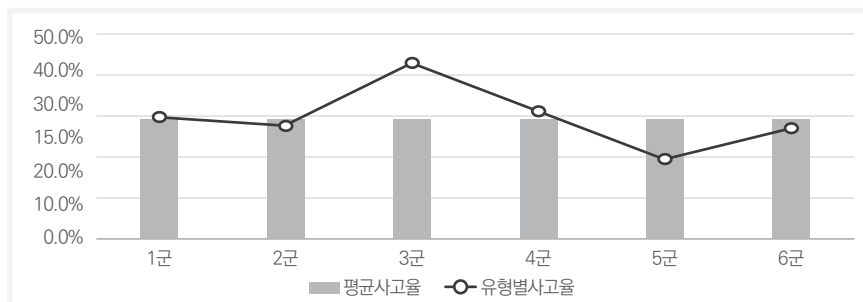
② 자기감정조절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또래간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아 꼬집음/물림/할퀴/(3군) 사고도 자주 발생함

* 전체 1,559건 중 0~1세 293건(18.8%) 발생

③ 신체조절능력이 능숙하지 못하여 스스로 넘어짐/떨어짐/미끄러짐(1군) 사고가 물체나 사람에 부딪힘(2군)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남

2세 사고비율 대비 유형별 사고율

(단위 : %)



※ 2세 영아의 사고비율은 29.2% (5,807건/19,897건)임. (참고: 현원 비율은 27.0%)

사고유형별 특징

① 자기감정조절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또래간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아 꼬집음/물림/할퀴/(3군) 사고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1,559건 중 2세 684건(43.9%)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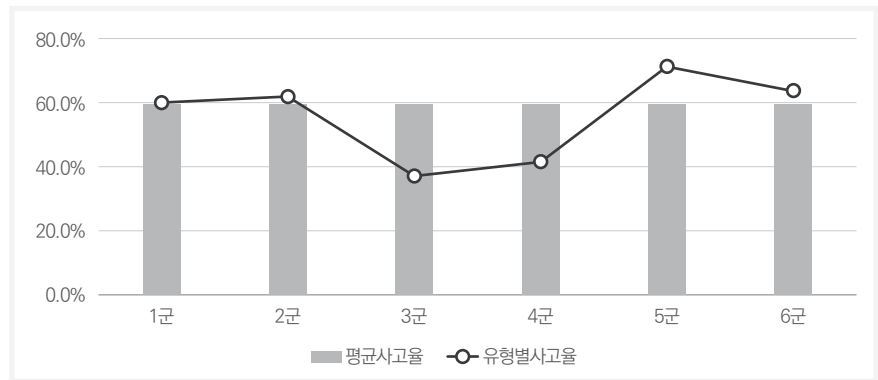
② 화상 사고(4군) 발생률 역시 영아기 사고의 특징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379건 중 2세 119건(31.4%) 발생

③ 신체조절능력이 능숙하지 못하여 스스로 넘어짐/떨어짐/미끄러짐(1군) 사고가 물체나 사람에 부딪힘(2군)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남

3세 이상 사고비율 대비 유형별 사고율

(단위 : %)



※ 3세 이상 유아(아동)의 평균사고율은 59.8% (11,888건/19,897건)임 (참고: 현원 비율은 40.5%)

사고유형별 특징

- ① 이물질 삼킴(삽입) 및 흡입, 음식물 섭취(5군) 사고 비중(위험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365건 중 3세 이상 261건(71.5%) 발생
- ② 신체활동성이 높아지고 활동영역 및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끼임/눌림/당김/찢림/베임 및 기타 사고(6군)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 전체 4,698건 중 3세 이상 2,997건(63.8%) 발생
- ③ 대근육의 발달 등 신체움직임이 활발해짐과 함께 충돌 사고(부딪힘, 2군)가 높게 나타남
* 전체 6,098건 중 3세 이상 3,815건(62.6%) 발생

나. 안전사고 유형별 특성과 예방

- 유형 1군(넘어짐/떨어짐/미끄러짐, 34.1%)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하고 있으나,
 - 특히, 행동범위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주변 대상들에 대한 모방행동이나 놀이 등을 하게 되는 2세 이하 영아들에게 주로 발생함
 - 신체조절능력이 능숙하지 못한 연령별 특성을 감안한 예측과 예방조치가 필요함
- 유형 2군(물체/사람에 부딪힘, 30.7%)의 경우도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하고 있으며,
 - 다만, 대근육의 발달 등 신체움직임이 활발해짐과 함께 자기중심적 상황판단이나 성인에 비해 좁은 시야범위 등으로 인해 충돌 사고(부딪힘)가 주로 3세 이상 유아들에게 자주 발생하므로,
 - 보호환경 공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구성 및 교사에 의한 적절한 중재와 함께 생활안전에 대한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함

- 유형 3군, 4군의 경우 영아기 사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유형 3군(꼬집음/할퀴/물림, 7.8%)의 경우, 자기감정조절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친구와의 놀이 중 상대아동에 대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 등이 특징이며,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은 주로 2세 이하에서 많이 나타남
 - 유형 4군(화상, 1.9%)의 경우, 호기심이 왕성하고 예측되지 못한 행동들이 빈번한 2세 이하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보육교직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임도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과 철저한 주의와 함께 세부 사고유형별 예방조치가 필요함
- 유형 5군(이물질삼킴(삽입) 및 흡입/음식물섭취)의 경우, 구강기 특징인 탐색 본능과 연관 지어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 안전사고 사례로 접수되는 것은 주로 유아들에 의한 교구(예 역할놀이 관련 음식재료 교구재 등)나 동전/건전지 등의 삼킴/삽입이나 음식물 섭취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유형 6군(기타, 23.6%)의 경우, 끼임, 찢림, 베임, 기타 야외사고(물에 빠짐 등)나 교통사고 등으로 전 연령기에 걸쳐 나타나지만, 활동 영역 및 공간이 늘어나는 유아기의 특성으로 파악됨
-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원 중인 영유아 등에 대한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조치만이 아니라 가정과의 협력(올바른 옷차림 및 생활습관(예절), 손톱정리, 신체적·정서적 정보 공유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 안심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와의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요소임을 함께 인식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MEMO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학습목표

-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 구성별/활동별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고 예방법을 이해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외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이나 잠재적 위험 발견 시 제거 및 수리 등 정기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들이 실내·외 환경의 안전수칙을 익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시에 사전예방 및 대피훈련 등을 일상화해야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처요령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실내외 환경구성별 사고사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1. 실내 환경구성별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2. 실외 환경구성별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01

실내 환경구성별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Part 1. 실내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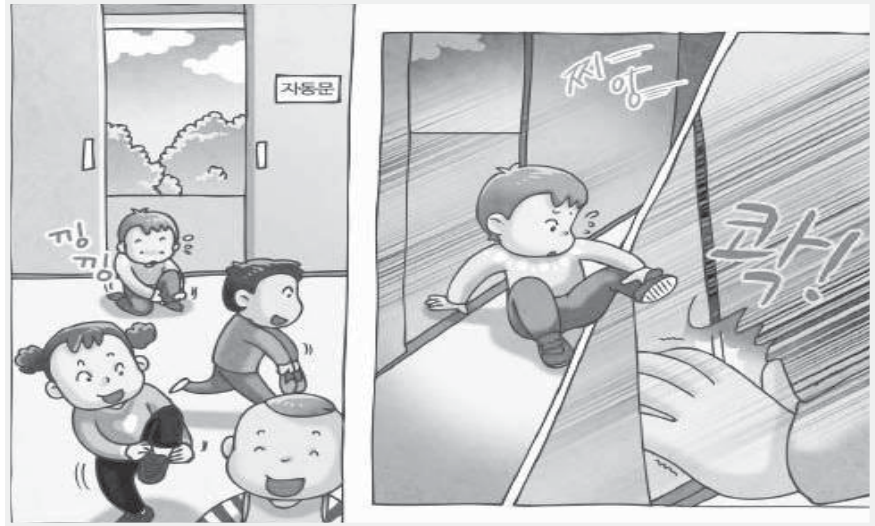
- 1 현관, 출입구
- 2 복도, 계단
- 3 보육실
- 4 유희실
- 5 화장실
- 6 조리실, 식당



1)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1 현관/출입구¹⁾

사례 ① 자동문은 편리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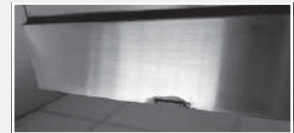


가) 영유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안전하게 관리

-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도록 개폐관리
 - 필요 시 현관 출입통제 장치(인터폰 등) 설치
 - 손끼임방지 및 속도조절장치 등 안전설비 구비
 - 현관 내부: 눈/비 오는 날 물기 제거(우산꽂이, 매트 등)

주의!

- 현관 유리문 스텐 몰딩 노후화로 인해 베이거나 넘어짐(찢김) 사고 발생 → 점검 후 교체(소재 등)
- 문 사이 경첩에 끼여 손가락 절단 등 사고 발생 → 손끼임²⁾ 방지 및 속도조절장치 등 구비



〈현관문 노후〉

2) 현관문 등 어린이집 내 모든 문에 적용

- 신발장
 - 문이 없는 개방형 신발장 권장
 - 성인용 신발장과 구분 수납
 - 신발장 위 불필요한 물품 치우기 및 안내판 등 설치 시 단단하게 고정

나) 진입(경사)로

- 계단, 입구에 미끄럼방지 설비(매트 등)

사례 2 신발을 꼭 맞게 신어요**가) 영유아 복장 및 신발 등에 대한 가정과의 연계 및 안전 관리**

- (복장) 활동하기에 편하고 구슬 등의 장식이 있는 옷은 피하도록 지도
- (신발)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신발, 끈이 있어 신거나 벗기에 불편한 신발은 피하도록 함

※ 보호자와 연계·협력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통일된 생활습관 형성

나) 귀가 지도 시 현관에서의 질서 유지

- 귀가 지도 시, 현관 앞이 혼잡할 수 있으니 영유아들이 차례대로 나와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

※ (부모 연계) 보호자 이외에 타인이 귀가를 담당할 경우 이름, 인상착의, 관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함



MEMO

2 복도 / 계단

사례 ① 복도 손잡이를 올바르게 잡아요



가) 복도

- 최소한 성인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너비 확보 (영유아 충돌 방지)
- 창문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기구(안전창), 방충망 설치
※ 필요 시 창틀에 모서리안전장치 설치

나) 계단

- 계단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 계단의 끝부분에 미끄럼방지대 설치
- 계단中间的 끼임공간(참) 관리
 - 유리재질, 철판 등 배치 지양
- 계단의 난간 사이 간격을 8cm³ 이하로 설치
- 추락방지를 위해 레일 사이 공간을 막음

3) (준용) 19년 보육사업안내 '육내중간놀이' 난간 안전수칙
격 기준



미끄럼방지대

→ 복도 내 분전반 관리

- 분전반 내·외부 불필요한 물건이 적재 또는 방치되어 있을 경우 즉시 치움
※ 벽지, 적재물 등으로 분전반을 가리지 않음
- 분전반 내부에는 차단기, 전선이 충전부와 연결되어 있어 감전 우려가 있으니 영유아들이 접촉할수 없도록 하시고 전면에 전기위험 표시판을 부착
- 분전반에서 누전이 발생되면 분전반 접촉에 의한 감전 사고 위험이 있으니 분전반 내부 외함에 접지공사 시공 여부를 확인
- 영유아의 머리 높이에 분전반 손잡이가 위치하고 있어 돌출될 경우 사고 우려가 있으니 임의 조작에 의해 돌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장치 설치
- 아이들이 쉽게 눌러 분전반 손잡이가 튀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



분전반 관리 우수 사례

→ 복도 내 인테리어(합판 등) 방염⁴⁾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한 것 포함)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 종이류(두께 2mm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간이칸막이
 -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방염 라벨

4)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의2/제20조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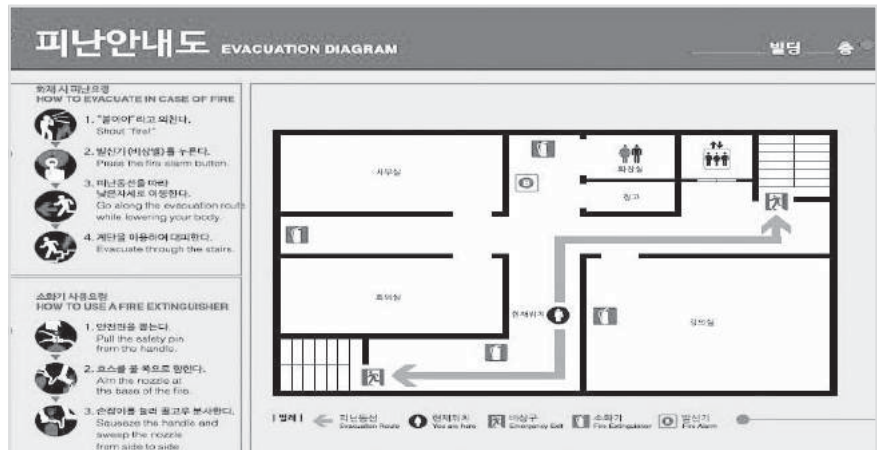
→ 복도 내 피난유도등/비상대피도 관리

- 도보거리 20m 마다 복도통로유도등(바닥에서 1m이하 높이로 설치) 추가 설치
- 유도등은 상시 전원이 연결되어 항시 점등 및 충전
- 꺾임 공간 등으로 복도(거실)에서 비상출입구가 보이지 않을 시 방향지시유도등(천장에 설치) 추가 설치

- 비상대피도를 구성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각 보육실과 출입구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표시
 -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 소방 시설의 위치 표시
 -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표시
- ※ 비상대피도는 보육실 뿐 아니라 눈에 잘 띄는 곳(현관, 복도 등)에도 비치



유도등 설치 우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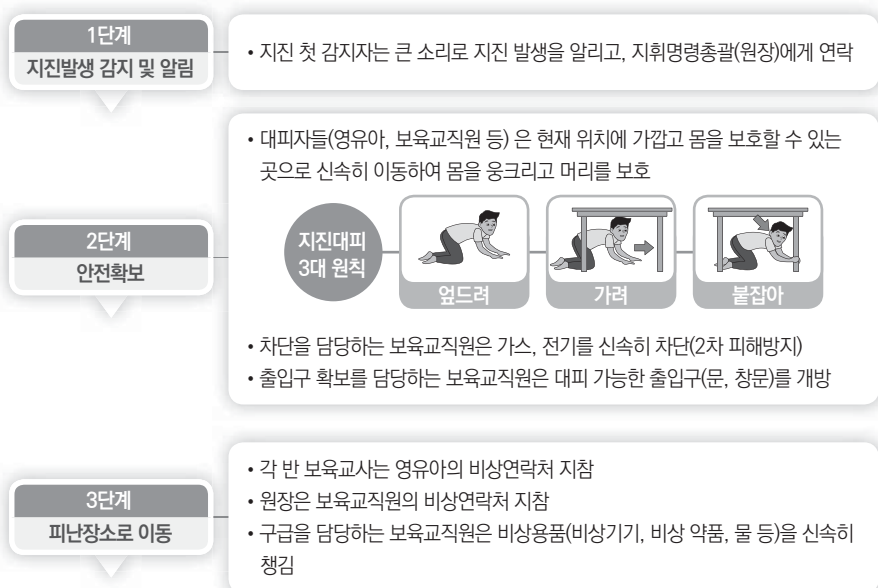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 소방서식 > 공지사항 > 다중이용업소 등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 참고

- 소방대피 훈련 시 주의사항 - 어린이집 외부 안전한 공간(어린이집 앞 제외)으로 대피
- ※ 지진 등 비상대응훈련도 포함 가능⁵⁾

※(참고) 지진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

5) 19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 어린이집 비상대피
훈련 표준 안내
- 평가인증 통합지표
(안전)



3단계
피난장소로 이동



- 지진이 멈추면 피난 경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피난 장소로 이동(큰 공원, 광장 등)

4단계
부상자 확인 및 응급처치



- 보육교사는 영유아 부상자 확인
-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부상자 확인
-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응급처치를 하고 의료기관 등에 연락

5단계
재해정보 확인/
보호자연락 후 인계



- 재해정보 담당 보육교사는 비상기기(라디오, 핸드폰 등)로 재난방송을 통해 지진상황을 확인
- 보육교사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안전하게 인계
-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피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6). 어린이집 지진 관리·대응 매뉴얼-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5) 재구성



MEMO

심화



주제1 >> 소방

➔ ① 소화설비

1) 소화기

- 소화 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
- 소화기 표지판 설치
- 투명 소화기케이스 등에 보관하여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관리 권장
- 압력게이지 및 사용연한(10년) 확인
- 보육실의 경우 화재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보육실마다 1개씩 비치하는 것을 권장

2) 스프링클러 설비

- 화재 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자동으로 열을 감지한 후 소화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설비
- 화재 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헤드)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적재물 금지
- 점검 및 관리
 - 설치된 배관 및 헤드에 변형, 손상, 탈락, 부식, 누설 확인
 - 헤드 주위에 살수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 수원의 저수량은 확보되었는지 확인
 - 가압 송수장치(펌프)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 동결우려가 있는 곳에 보온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 유수검지장치 및 테스트 밸브의 압력은 적절한지 확인

➔ ②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 감지기⁶⁾

- 화재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 장치로 알리는 감지기
- 점검 및 관리
 - 각 실 및 바닥 면적당 개수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시험 버튼을 눌러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여 배터리(건전지)의 작동상태 확인

6)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2018.6.13. 일부처시행)

심화



2) 비상경보설비

- 화재 발생 시 발신기의 스위치를 눌러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 피난 또는 화재의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연기·불꽃을 감지하여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벨, 사이렌 등의 음향으로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

→ ③ 피난설비

1) 비상출구(비상대피로)

- 피난안내도 설치(양방향대피, 소화기 위치, 소화기 사용법, 대피요령 등 명시)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해야 함
- 문은 대피 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 강화 통유리인 경우 비상구 규격에 맞아야 하며, 옆에 비상 망치를 구비
- 비상출구 개방에 방해되는 커튼, 거울, 교구장, 짐 등을 놓아서 비상출구를 막지 않도록 함

2) 비상계단

-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 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

3) 피난기구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 있는 기구
- 어린이집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 종류

구분	정의
미끄럼대	화재 또는 비상 시 안전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장치
구조대	(하강식 경사구조대) 포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써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오며 대피할 수 있는 것
승강기 피난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3 보육실

사례 ① 문을 너무 세게 열었어요



가) 문

- 여닫이문보다 미닫이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한 방향으로 열고 닫도록 설치
- 문틀 사이, 문틀 아래에 공간이 있는 경우 끼임방지대를 설치
- 영유아 신체에 손잡이가 닿을 경우 둥글게 처리된 손잡이를 사용하거나 손잡이 쿠션(커버)을 씌워서 사용
- 영유아가 보육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지 않도록 잠그는 기능 제거
- 가급적 안과 밖이 다 보일 수 있는 강화유리로 된 투명문을 설치하고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부딪침 방지

나) 창문

- 추락방지기구(창문보호대, 난간 등) 설치
- 커튼, 블라인드 선 정리 / 방염⁷⁾제품 사용
- 2층 이상의 경우 보호대 설치
- 강화유리가 아닐 경우, 파손대비 시트지 부착

7) 방염관련 : 본 교재 16
페이지 참조

다) 벽면/바닥

- 필요 시 게시물 모서리에 안전장치 설치 / 게시물 부착시 고정
- 바닥에 충격흡수를 위한 매트(미끄럼방지 처리 된 것을 사용) 설치
- 문턱을 낮추거나 제거

사례 2 장난감을 밟아 넘어졌어요



가) 놀잇감

- 영아(만2세 이하)가 삼킬만한 크기(약 3.5cm) 이하의 놀잇감은 제공하지 않음
- 영유아가 놀잇감의 사용법을 알고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놀이한 놀잇감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
- 유아의 경우, 주사위, 구슬과 같은 크기가 작은 교구까지 정리할 수 있는 정리를 설치하여 유아들이 작은 교구를 유실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 영유아에게 충분한 수의 교구를 마련해주고, 영유아의 선호도가 높은 교구는 동일한 것으로 여러 개 구비 ※ 놀잇감으로 인한 또래와의 갈등 상황 유발 방지
- 바닥에 영유아가 미끄러질만한 작은 놀잇감들은 수시로 교사가 다니면서 치우도록 함

추가 사고사례 - 이물질 삼킴(교구) 사고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자유선택활동시간 놀이 중 자석교구를 가지고 놀던 유아가 손과 입으로 여러 차례 뜯다가 자석을 삼킴. 각기 다른 창자에 위치하여 자석이 붙어 천공 및 과사 직전 상태에서 개복하여 제거



파손된 자석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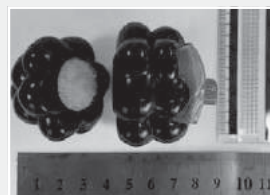


개복술 후 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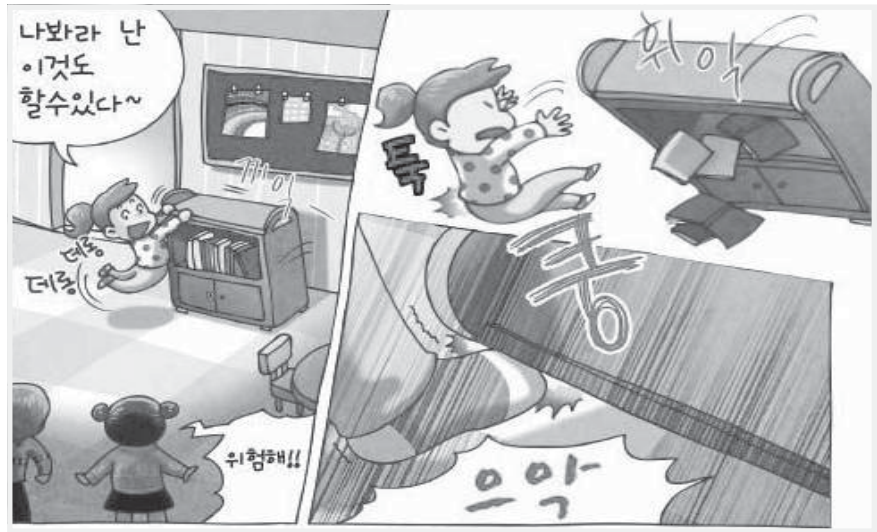
- ▶ **(예방 수칙)**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석교구에 대하여 정기적 점검을 통해 파손되거나 노후된 교구 파기 필요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만 2세 영아가 플라스틱 소재 포도 모양 장난감 교구(가로 4cm, 세로 3.5cm)를 가지고 놀던 중 이를 삼켜 질식사하여 결국 사망
※ 병원 이송 과정 지연으로 인해 적절한 응급대처 미흡

- ▶ **(예방 수칙)** 영아의 코, 귀, 입에 들어갈만한 작은 크기의 교구(직경 3.5cm)는 제공하지 않도록 함



사례 3 교구장이 흔들흔들



가) 교구장, 가구장, 피아노 등

- 교실 내의 가구들은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물함, 교구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것이 필요
- 가구장(이불장 등)이 보육실 내에 있을 경우 영유아가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 설치
- 피아노 밑부분, 건반과 뚜껑사이에 폭신한 천이나 부직포를 부착하고, 피아노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뚜껑을 닫아 놓고 잠금장치 이용

나) 가전제품(공기청정기, 칫솔살균기, 선풍기, 가습기 등)

- 가전제품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선풍기나 히터는 보호망을 사용하거나 벽걸이 용으로 사용
- 가습기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 가전제품 전선이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정리
- 가전제품에 문어발식배선(콘센트에 집중연결) 사용할 경우 과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용을 금지하시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전열기) 가전제품은 전용의 콘센트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 가전제품 전선에 영유아가 이동시 걸려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전선을 정리
- 전기배선 중 비닐코드배선은 과열·감전 위험이 있으니 절대로 사용을 하지마시고 케이블 전선을 사용

주의!

- ▶ 멀티탭은 각 콘센트에 개별스위치 부착용과 과부하시 차단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
- ▶ 멀티탭에서 분진 습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인화성물질이 없는 장소, 주기적으로 분진제거 등 점검이 필요

추가 사고사례 - 멀티탭 사고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어린이집 사무실 내 사무기기(복사기, 컴퓨터 등)의 전선에서 발생한 전기적 스파크가 전선 피복 등에 착화, 발화되어 연소 진행 후 건물 전체 연소로 확대
- ▶ **(예방 수칙)** 전기 사용 시, 정격용량을 초과하면 과열되므로 하나의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꼽지않음



MEMO

사례 4 선생님의 물건은 위험해요



가) 교사 물건

- 보육교직원의 개인 물품은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공간이나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화상의 위험이 있는 비품(글루건, 전기주전자, 텀블러 등)은 보육실에서 사용 금지

나) 기타 비품(약품 등)

- 약품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도록 교구장이나 수납장 안에 보관 /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가구 비치

다) 교사실 등

- 영유아 출입 제한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성인 키 높이)
- 위험한 물건(칼, 성인용 가위, 글루건, 스테이플러 등) 별도 보관



MEMO

심화

주제2 >> CCTV 운영⁸⁾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목적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운영됨

- ★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리/인권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범죄예방 등

→ ① 설치·운영 시 준수사항

1) 설치 의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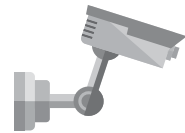
- 모든 어린이집 대상
- 단, ①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설치 / 미운영) 신고한 경우 또는 ②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예외

* ①, ②: 1년간 유효

2) 성능 기준 및 설치구역

- 해상도: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는 수준(고해상도 HD 이상 화질)
 - ★ 카메라 초점을 흐리게 하여 화질 저하 ×
- 저장: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저장 시 초당 10프레임 이상)
 - ★ 3개월 초과 저장 × (주기적 삭제 관리)
- 카메라: 보육실 등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 카메라를 벽 쪽으로 돌려놓거나, 카메라 렌즈 앞 장애물(커튼 등) 설치 ×
- 임의조작(예, Zoom-in 등) 및 녹음 기능 불가
- 설치구역: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 놀이터 제외), 식당/강당(단, 별도로 구획된 경우에 한함)
- 안내판¹⁰⁾: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출입구, 담장 등)에 설치
 - 촬영(녹화)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원칙), 필요에 따라 야간/휴일 등도 가능
 - ★ 안내판과 내부관리계획 상 촬영시간 일치 확인, 외부 설치 시 원 연락처 기재(권고)

- 8) 19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9)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 10) 보육사업안내 부록 5. 별지 제12호 서식

11)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1항 제1호」

12)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 제1항 제2호

13)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 제1항 제4호

14)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

15) 보육사업안내 부록5. 별지 제7호 서식

3)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¹¹⁾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설정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 및 관리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¹²⁾
 -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
 - ★ 학부모 상담실(원장실), 교사실, 현관/출입구 등 오픈 공간에서의 영상정보 노출 통제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영상정보에 대해 다음의 조치¹³⁾
 -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
 -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 설치
 -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

➔ ② 열람 및 제공 시 유의사항

1) 열람의 요청

- 보호자¹⁴⁾는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하여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서면을 통해 열람 요청 가능
 - 단, ①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제출, ② 관계 공무원 등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포함)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제외
 - 열람 결정은 10일 이내 서면으로¹⁵⁾ 통지하여야 함(열람 장소와 일시 등)
 - 열람 일시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회신일로부터 7일 이내)

심화

2) 열람¹⁶⁾

- 어린이집의 원장은 열람 조치 시, 보호자 등이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공문서,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열람 요청자가 다수(2인 이상) 이거나 열람할 분량이 상당하여 수시 열람하게 할 경우 보육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의거 특정한 일시를 정하여 일괄하여 열람¹⁷⁾하게 할 수 있음
- 단,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은 열람 시작 후 20일 이내에 종료

★ CCTV 열람 시 지켜주세요!!

- 어린이집 CCTV 열람자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영상자료를 열람한 후 알게 된 영상 속의 내용을 제3자(타 정보주체인 학부모 등 포함)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열람의 거부¹⁸⁾

- 어린이집의 원장은 거부사유에 해당될 경우 열람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음
- 서면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열람 등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거부 사유
 - 아동의 안전 확인 등 열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60일)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은 영유아의 안전 등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열람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열람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

16)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17)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71조

18)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

4 유희실

사례 ① 위 아래 옆 모두 살피요



가) 실내 놀이기구

- 놀이기구는 영유아의 신장,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여부 확인
- 놀이기구에는 살이 베이거나 찢릴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모서리 등), 돌출 부분(볼트, 너트 등), 파손 부분이 없어야 함
- 1m 이상 높이의 모든 놀이기구에는 벽면, 바닥, 기둥, 모서리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충격 흡수용 표면제)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
-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바닥에는 안전매트를 설치하며 충격을 최소화
- 움직임으로 인하여 옷과 끈 등이 놀이기구에 묶이거나 얽매임이 없어야 함

나) 유희실 구성

- 대근육 활동 기구는 서로 충분한 공간을 둬
-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소그룹으로 나누어 활동
- 영유아 키 높이의 벽면, 바닥, 기둥, 모서리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안전 매트 설치, 대근육 활동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매트 설치
- 창문 없는 벽면에 놀이기구 배치하기



유희실 바닥과 벽면 매트

사례 ② 친구가 화났어요



가) 놀이지도 관련 교사 tip

-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소그룹으로 나누어 활동
- 이탈행동이 빈번하거나 산만한 영유아는 교사가 더 주의하여 살핌
- 놀이 종료시간을 사전에 알려주어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바닥에 있는 놀잇감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살핌
-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 지도 ※ 위험한 행동(뛰기, 눕기 등) 하지 않기
- 파손된 놀이기구 및 놀잇감은 즉시 보수



MEMO

심화



주제3 >> 전기

➔ ① 전기 설비 관리

1) 콘센트

- 접지극(금속부분) 유무 확인 / 접지극부 콘센트를 사용하고 접지선이 접지극과 연결되도록 시공
- 물기있는 장소(화장실, 조리실 등)는 방적형(덮개 부착형)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15mA, 0.03초 동작) 부착된 콘센트를 사용



접지극



방적형 콘센트



누전차단기콘센트

2) 연결 배선 정리

- 연결 배선이 늘어지지 않게 하고 과다한 사용(멀티탭) 금지

3) 냉·난방기구

- 선풍기 덮개를 씌워 보관 시 꼭 전원을 분리하여 정리(선풍기 덮개를 씌워 놓고 전원을 켜 선풍기가 덮개 씌인 상태로 돌아갈 경우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여 정리)
- 전열기구와 인화성 물질(커튼, 블라인드 등)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사용

4) 분전반¹⁹⁾

19) 분전반 관련: 본교재
16페이지 참조

➔ ② 정기 점검 및 일반 관리

1) 정기적 월1회 이상 검사

- 누전차단기 정상작동 점검 방법
 - 배선용 차단기를 모두 내려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를 차단
 - 누전차단기의 우측 또는 하단에 있는 시험용 단추(TEST 버튼)를 누름
 - 이때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누전 차단기를 교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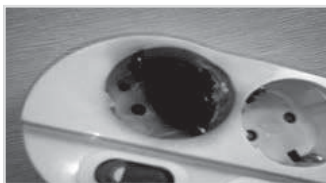
- 전기배선(전선) 및 콘센트 외관 확인
 - 먼지가 쌓인 경우 진공 청소기 또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줌
 - 전기 전선이 노후 되었거나 손상(끊김, 심한 구부림, 가구 등에 눌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새 전선으로 교체
 - 전기 전선에 피복이 벗겨져 있을 경우 가급적 새 전선으로 교체
- 노후 전기기구 교체
 - 전기기구에 발열·외형변형·소음·냄새 발생 시 전문가에게 점검 후 조치

2) 일반적 관리

- 인증 제품 사용
 - 전기용품 사용 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증 받은 KS 또는 KC 제품을 사용
- 전선정리
 - 영유아 손에 닿는 부분에 가급적 노출된 전선이 없도록 배관 또는 물딩을 이용하여 정리
 - 바닥이나 문 틈을 통과하는 전선은 통행에 방해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
- 콘센트
 - 플러그가 정상적으로 꽂혀 있는지 확인 : 발열 또는 검게 그을린 흔적이 없는지 확인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도록 함
 - 전기용품과 벽면 콘센트간의 거리 유지 : 전기용품과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의 이격거리가 좁을 경우 발열·과열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 영유아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콘센트 안전커버를 활용
 - 콘센트에 젓가락 등 쇠붙이, 장난감 등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
 - 파손된 콘센트는 사용하지 않고 신제품으로 교체 사용
 - 콘센트 주위에 물을 치우고 물 묻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함



안전덮개



파손된 콘센트

추가 사고사례 - 전기판넬 전선 과부하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보육교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보육실 전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이들을 대피시킴. 화재현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화재는 진압되었고 소방대가 출동하여 잔불을 진압. 현장조사결과 전기판넬 전선부근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 **(예방 수칙)** 전기 배선 노후화 및 과부하로 전기합선이 되지 않도록 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가 필요/ 월 정기점검과 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 특히, 겨울철 하나의 멀티탭에 여러개의 전열 기구 사용시 화재사고의 주요원인이 됨



MEMO

5 화장실

사례 ① 화장실 앞에서 미끄덩



가) 화장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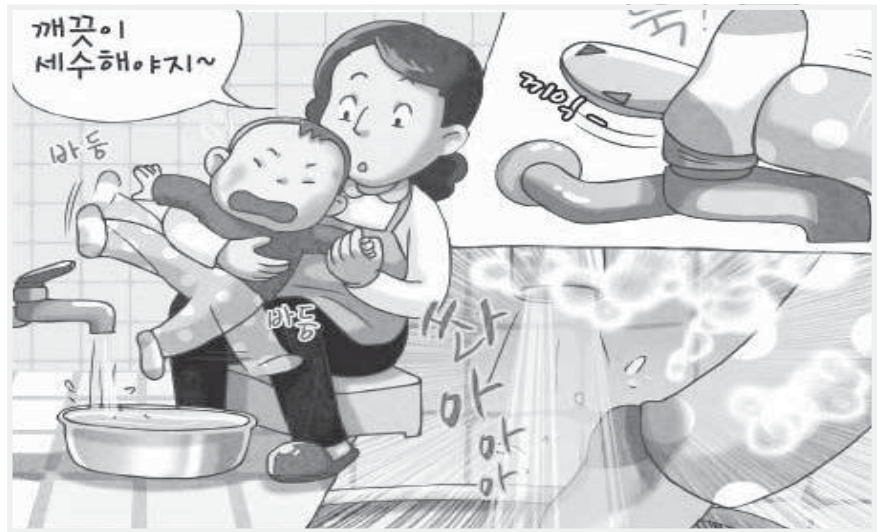
- 세면대는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모서리 안전장치를 설치
- 바닥이 미끄러울 경우 미끄럼방지 또는 물기제거판 설치
- 영유아용 화장실 문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설치
- 영유아가 사용하는 화장실에 설치된 휴지걸이, 수건걸이 등은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하며, 위험요소(날카로운 부분 등)이 없는지 확인
-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인 눈높이에 잠금장치 설치
- 스테인리스, 타일 등으로 제작된 각진 모서리는 손끼임 방지 등 설치

20) 관련법령.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MEMO

사례 ② 갑자기 나온 온수에 화상을 입었어요



가) 화상 관련 (샤워기, 수도꼭지, 라디에이터 등)

- 샤워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하며, 샤워기 줄은 짧게 정리하거나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
- 화상방지를 위해 수도꼭지 및 세면대의 물이 고온으로 나오지 않도록 온수조절장치 혹은 중간밸브를 통해 수압조절

추가 사고사례 - 화장실 온수로 인한 화상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만1세 영아의 기저귀를 벗기다가 바지에 오물이 묻어 화장실로 옮겨두고 교사가 잠시 새 기저귀와 바지를 가지러감. 그 사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 바로 뛰어가서 보니 수도꼭지 손잡이가 온수 쪽으로 돌아가 있었음. 뜨거운 물이 피부에 닿아 화상
- ▶ **(예방 수칙)** 영유아가 이용하는 화장실 세면대 및 밸브를 통해 온수 온도와 유입량을 조절하여 화상사고 방지

- 돌출형 라디에이터의 경우, 화상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설치

6 조리실 / 식당

사례 1 뜨거운 국이 옆질러졌어요



가) 조리실 안전문 설치 / 공간 구성

- 조리실은 영유아 활동 공간과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가 어려운 경우 안전장치 설치
- 주방에서 보육실로 음식을 이동 시, 음식을 여러차례 나르는 것이 아닌 전용 카트에 싣고 한번에 나르도록 함
- 뜨거운 물과 음식은 화상 방지를 위해 미리 식혀서 제공
- 조리실의 벽, 바닥, 천장은 모두 내화성, 내수성,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설비
-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고 환기를 자주 시켜 청정한 실내 환경 유지
- 조리실 내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설치

*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 시 화염이나 열 감지(72℃)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 45°각도로 비산

* 주방용 K급 소화기 설치 :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시 기름 위에 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용 K급 소화기

사례 ② 생선 가시가 걸렸어요



가) 영유아 급·간식 배식

- 급·간식 배식 시에 영유아들은 정해진 곳에서 기다린 후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도
- 급하게 음식을 먹거나, 크기가 큰 음식은 작게 잘라 제공
※ 사탕, 포도, 견과류, 떡 등은 먹다가 기도에 걸리는 일이 잦은 음식

추가 사고사례 - 기도에 떡 걸려 사망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만3세 유아가 원에서 제공된 꿀떡을 먹음(크기는 약 3cm, 자르지 않음). 입에 넣은 떡이 유아의 기도에 걸려 원장이 하임리히법을 하였으나 떡이 빠지지 않았고,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



MEMO

사례 ③ 음식물 알레르기**가) 영유아 급·간식 배식**

- 입소 시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등을 입소신청서, 식생활 요구 조사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록 및 확인

* 개별 알레르기에 관한 정보를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알려 사고 예방

추가 사고사례 - 식품 알레르기 사고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만3세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오후 간식으로 나온 현미떡을 섭취 후 구토 및 두드러기 증상 발생 / 담임교사는 유아가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현미떡에 호두가 들어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간식으로 제공함

• 어린이집에서 알아두어야 할 식품 알레르기 원인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지정하여 관리
- 메밀, 밀, 대두, 견과류, 복숭아, 토마토, 난류, 우유, 육류, 갑각류, 고등어, 오징어, 조개류, 굴, 전복, 홍합, 아황산 포함 식품 등

심화



주제4 >> 가스

➔ ① 연료용 가스 종류

1) 공기보다 가벼운 도시가스

- 도시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인 연료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스가 누출 되면 위로 상승
 - 가스무게 : 공기의 약 0.5배
 - 누출시 특유의 가스냄새가 있으며 체류되면 점화원에 의해 폭발

2) 공기보다 무거운 액화석유가스(LPG)

- LPG는 주로 용기에 의하여 공급받는 가스로 프로판이 주성분이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스가 새면 바닥 등 낮은 곳에 고임
 - 가스무게 : 공기의 약 1.5배
 - 누출시 특유의 가스냄새가 있으며 체류되면 점화원에 의해 폭발

➔ ② 자율 안전점검

1) 사용 전 : 환기

-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 충분한 환기 조치
- 가스레인지 등 가스 연소기 주위에 가연성 물질(종이, 스프레이 통 등)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치우도록 함

2) 사용 중 : 점화 확인

- 점화할 때에는 파란 불꽃이 붙었는지 점화여부를 확인
-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

3) 사용 후 : 밸브 잠금

-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연소기 콕과 중간밸브를 모두 잠금
- 방학, 휴원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잠그고 도시가스의 경우 계량기 전단에 부착된 메인밸브를 잠금

4) 평상 시

- 연소기, 배관, 고무호스, 가스렌지 호스 연결부분 등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지 수시로 비눗물과 가스냄새 여부로 확인

심화



-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입상밸브 및 건물 내외부의 금속 배관에 부식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녹 제거 및 부식방지도장(페인트) 조치
- 고무호스 및 압력조정기 등은 수시로 점검하여 손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교환
※ 권장사용기간 : 고무호스 7년, 압력조정기 6년
- 가스누출경보기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막음 조치 여부 확인
- LPG 용기는 환기가 잘되는 옥외에 빗물이나 직사광선 피하여 보관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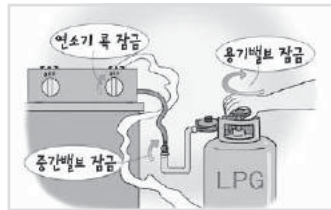
➔ ③ 가스누출시 단계별 대처요령

1) 밸브 잠금

- 연소기 콕, 중간밸브, 용기밸브(도시가스는 계량기 전단밸브)를 모두 잠금

2) 환기

-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충분한 환기조치



3) 화기 조심

-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스파크는 폭발의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기구는 절대로 사용금지

4) 점검 요청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또는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도시가스회사, LP가스 판매업소)에 연락하여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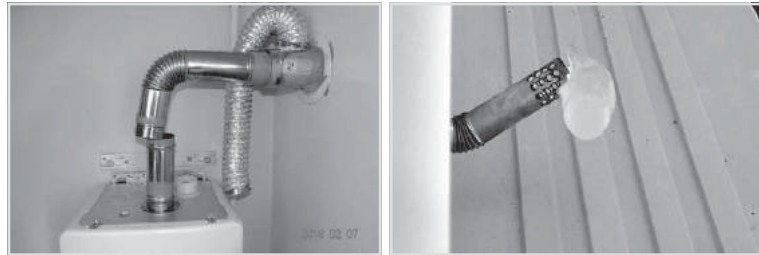
➔ ④ 일산화탄소(CO)중독사고 예방

1)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이탈, 파손, 막힘 여부를 확인

- 특히, 겨울철에 배기통 끝의 고드름 낙하에 따른 파손 및 이탈 주의

2) 가스보일러에 이상소음, 진동, 배기통 이탈 및 파손 등이 발견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또는 가스공급자(도시가스사, LPG 판매업소) 등 전문가에게 안전점검을 의뢰

3) 가스난로 등 난방기를 사용 중 수시로 환기



→ ⑤ 과열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

1) 타이머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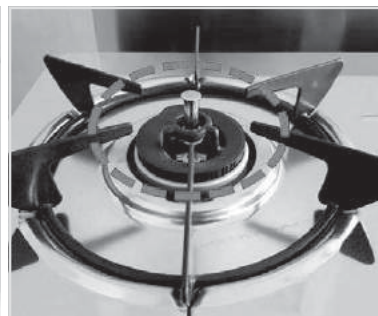
- 가스사용 시간을 설정하여 시간이 경과되면 중간밸브를 자동으로 잠가 과열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

2) 과열방지 장치가 장착된 가스레인지

- 조리기구(냄비, 솥 등) 표면의 온도를 감지하여 일정온도(260℃) 이상이 되면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과열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장치가 내장된 가스레인지



타이머콕



과열방지 장착 가스레인지

심화



➔ 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가스)

1) 가스 사용 중 지진 발생

- 가스 불을 끄고 연소기 콕, 중간밸브를 잠금
- 도시가스 시설은 계량기에 부착된 밸브를 잠그고 LPG 시설의 경우는 용기밸브를 잠금

2) 지진발생 후 안전조치

- 집에 들어오면 가스레인지, 라이터 등 전기 및 화기 사용 금지
- 창문, 출입문 등을 열어 충분한 실내 환기조치
- 호스, 연소기, 배관 등의 이음부를 비눗물(주방세제+물)로 점검
- 누출이 확인되면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조치

추가 사고사례 - 조리 중 화재 사고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원아들의 간식을 만들기 위해 가스불에 기름을 끓이다가, 교재교구 정리를 위해 약 1~2분 정도 조리현장을 이탈함. 다시 부엌으로 가보니 달궈진 기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가스레인지 옆과 후드장치에 불이 타올라 응급조치로 진화작업을 함

▶ **(예방 수칙)** 조리시 조리현장을 가급적 이탈하지 않고, 급한 용무 시 다른 교직원에게 주시 부탁 /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및 k급 소화기 설치



02

실외 환경구성별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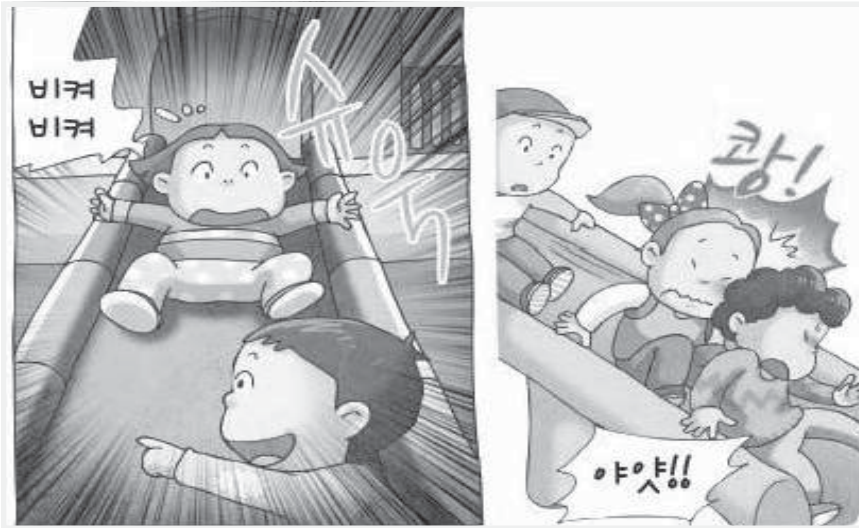
Part 2. 실외 환경

- ❶ 실외놀이터
- ❷ 담장/울타리, 기타 공간
- ❸ 외부 공간(활동)



1 실외놀이터

사례 1 천천히 차례차례 미끄럼틀을 타요



가) 실외놀이터²¹⁾ 설치 및 관리

- 영아용과 유아용 놀이터를 따로 구분하여 적합한 크기의 구조물 설치
- 영유아들이 질서 있게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지도
- 영유아들끼리 다툼이 생기기 전에 사전 개입을 통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놀이시설 볼트, 너트 등 돌출물 관리 및 이음장치, 구조물의 부식 점검²²⁾
- 모래놀이터는 무게감 있는 덮개로 덮어 놓으며, 주기적으로 살균 소독
- 야외 놀이도구의 정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
- 놀이터 이용 안전 수칙 및 픽토그램 게시 권장

21)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

22)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

픽토그램이란?

사물, 시설, 행위 등을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인 그림으로 나타낸 일종의 그림 문자

* 영유아가 픽토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 필요



비밀 밀고 앞뒤려 타지 마세요



반드시 계단으로 타세요

놀이기구 픽토그램 예시

출처 :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www.cpf.go.kr>)

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요약)

•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 기관(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검사를 받음²³⁾

23) 관련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요약

구분	내용
안전점검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검사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설치검사를 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 이용금지/ 정기시설검사를 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 이용금지
안전점검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
안전진단신청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이용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기록 보관
안전교육 이수	시설인도 후 3개월 이내 2년에 1회 재교육
보험가입 ²⁴⁾	시설인도 후 1개월 이내 가입
중대사고보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24) 관련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www.cpf.go.kr>)

Q)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실내에 설치된 작은 미끄럼틀이나 그네도 설치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는지?

A) 해당 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인 어린이놀이기구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설치검사 및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나, 해당 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인 완구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놀이기구 및 완구〉

구분	어린이놀이기구	완구
안전확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설치방법	설치업자가 설치	개인이 구매 설치가능
고정여부	주로 고정식	주로 이동식
예시		

출처: 행정안전부(20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2 담장 및 울타리, 기타 공간

사례 1 강풍으로 간판/담장이 무너졌어요



가)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유형별 원인 파악 및 예방책

- 간판/담벼락 등 고정/접착 여부 주기적 확인
- 특히, 여름철 폭염 시 놀이기구나 지붕재/실외 천정재 등의 접착 성능 저하로 탈락 발생

더 알아보기 - 폭염



폭염 특보 기준

- 주의보 : 33°C
- 경보 : 35°C

■ 폭염 질환 예방 및 행동요령

- 위험시간(한낮) 뜨거운 햇볕 피하기(야외활동 자제)
 - 가볍고 헐렁한 면 소재의 복장 착용
 - 창문에 차단막 설치
 - 실내 햇빛 유입 줄이기
- 냉방기기 바르게 사용
 - 실내온도 적정(26~28°C) 유지 및 정기적 환기
 - 선풍기 등 과열로 인한 화재 방지 유의
- 고위험군(어린이) 건강관리 철저
 -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 시간 갖기
 - 이상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시행

증상	응급조치
피로감, 두통, 오심, 구토, 근육경련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
뜨겁고 건조한 피부(땀이 나지 않음),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러움, 오심, 의식저하	• 환자를 그늘로 옮기고 119에 즉시 신고 •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물과 음식을 함부로 주지 말고 환자를 물에 담그거나 적셔 체온을 식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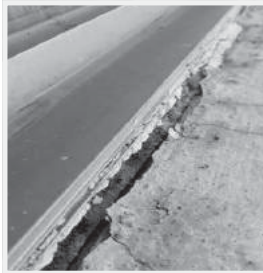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2011). 보육시설 관리자용 폭염대응 건강관리 업무 가이드북

사례 ② 호우로 어린이집이 물에 잠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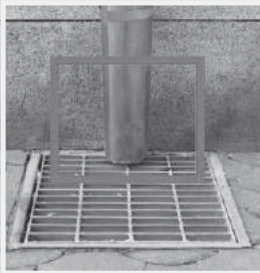


가) 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유형별 원인 파악 및 예방책

- 호우 예상 시 저지대/지하시설 어린이집 공간에 대한 침수 피해 방지
 - 차수막/모래주머니 설치
 - 배수로 정기 청소 등
- 산사태 등으로 인한 옹벽/담장 붕괴 대비
- 노후화된 건물 외벽(창틀 부근) 균열된 틈(크랙) 점검·수리
 - 건물 틈으로 들어온 빗물로 인해 발생한 전기 쇼트(short)가 화재 유발



배수로 막힘 방지



창문틀 크랙



MEMO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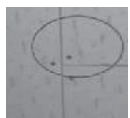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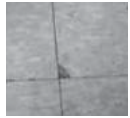
주제5 >> 석면

→ 어린이집 석면 관리

-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법²⁵⁾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함
 - 조사의무대상 : '09.1.1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 ※이전 시행 대상(~'18년) : '09.1.1 이전 건축물 중 연면적이 430㎡ 이상 어린이집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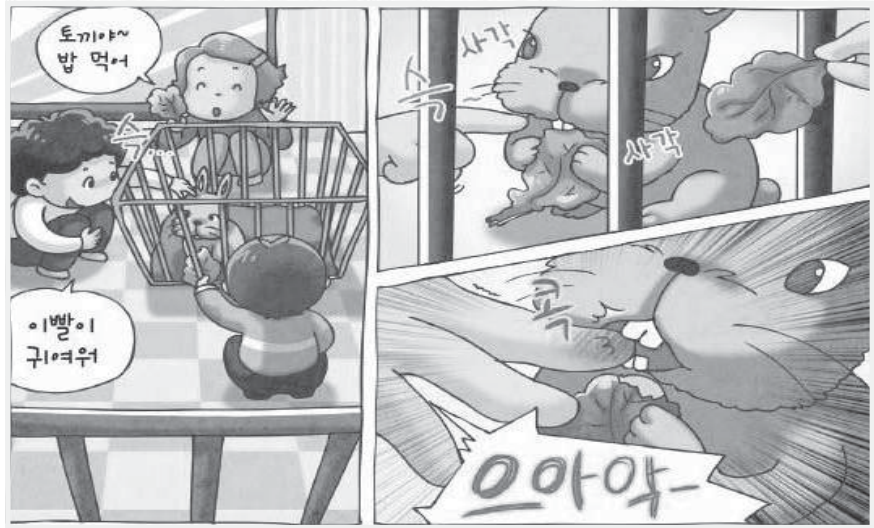
25) 관련법령. 『석면안전관리법』 (2018.5.29. 개정, 2019.5.29. 시행)

→ 어린이집 공간 내 석면 함유물질 예시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천장재	텍스에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경우		텍스의 훼손된 부분을 통해 내부가 보이는 경우	
바닥재	바닥이 찢어진 경우		바닥면이 많이 드러난 경우	
칸막이	칸막이가 굽히거나 균열이 있는 경우		칸막이의 손잡이 파손 등으로 구멍이 있는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2013). 어린이집 석면관리 매뉴얼

사례 ③ 토끼에게 먹이를 주다 손가락을 깨물렸어요



가) 기타공간

• 텃밭

- 농기구 및 약품은 전용 창고 등에 관리하여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함
- 야외의 다른 놀이 공간과 구별

• 실외동물사육장

-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됨
- 동물을 둘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 조치 등을 받아야 함

추가 사고사례 - 동물(개) 물림 사고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텃밭체험 후 차량탑승을 위하여 아이들이 대기 중, 만2세 영아가 묶여있던 개 앞으로 혼자 지나가다가 개에 물림
- ▶ **(예방 수칙)** 산책 중 주변의 비둘기, 강아지 등을 만나면 영유아들이 호기심을 보임. 반면 동물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스트레스를 받아 본능적으로 공격을 하게됨. 동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눈으로만 보도록 지도



3 외부활동(바깥놀이, 현장학습 등)

사례 ① 따가운 나뭇가지



가) 실외활동 시 안전수칙

- 실외활동 전 사전답사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반드시 제거
- 실외활동 전에 비상약품을 챙기고, 영유아의 옷차림(모자끈, 운동화끈 등)을 살핌
- 차량, 골목길, 교통안전 등의 유의사항,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 이탈행동이 빈번하거나 산만한 영유아는 보육교사가 더 주의하여 살핌
- 실외활동 종료시간을 사전에 알려줌
- 미세먼지²⁶⁾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를 수시로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활동으로 대체

26) 보건복지부(2018).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
뉴얼



MEMO

심화



27) 19년 보육사업안내
109페이지 참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7). 관계와 귀기
울임으로 만들어 가
는 유아재난 안전교
육프로그램 참고

주제6 >> 미세먼지 / 실내공기질

➔ 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어린이집 대응²⁷⁾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 요령 교육 및 실천

- 어린이집별로 미세먼지 전파담당자(원장 등) 지정 및 관련 모바일 앱 설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상황 확인(09시, 12시, 17시(익일예보))
- 고농도 발생 시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자제(실내활동으로 대체), 실내공기질 관리(빛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공기청정기 관리 및 가동 등)
-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₁₀ 81 μ g/m³ 또는 PM_{2.5} 36 μ g/m³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

2) 대응 단계별 요건(어린이집)

1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 이상
(PM_{2.5} 36 μ g/m³ 이상, PM₁₀ 81 μ g/m³ 이상)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 → 실내활동으로 대체 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kr),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2단계 고농도 발생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
(PM_{2.5} 36 μ g/m³ 이상, PM₁₀ 81 μ g/m³ 이상 1시간 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외출자제, 외출 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필요
- 실외활동자제 → 실내활동으로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 → 창문닫기, 최소한의 주기적 환기는 필요
- 실내공기질 관리

3단계 주의보

해당 권역의
(PM_{2.5} 75 μ g/m³ 이상, PM₁₀ 150 μ g/m³ 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등 실시
→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4단계 경보

해당 권역의
(PM_{2.5} 150 μ g/m³ 이상, PM₁₀ 300 μ g/m³ 이상 2시간 지속)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진료 등
- 실외활동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

심화



5단계 주의보, 경보발령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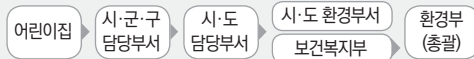
시·도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보(시간당 평균농도 $PM_{2.5}$ $35\mu g/m^3$ 미만, PM_{10} $100\mu g/m^3$ 미만)
*경보(시간당 평균농도 $PM_{2.5}$ $75\mu g/m^3$ 미만, PM_{10} $150\mu g/m^3$ 미만)

-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휴식 또는 조기귀가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



▶ 담당자 현황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3월, 9월)

▶ 경보 조치결과

- 어린이집은 시·도 담당부서에
보고(경보발령 후 7일 이내)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경보조치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3월, 9월)

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요령

- 어린이집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및 대응매뉴얼 이행
 - 미세먼지 농도확인 방법 : 스마트폰 어플 '우리동네 대기정보', 에어코리아홈페이지(www.airkorea.or.kr) 등
-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활동 자체, 바깥공기 유입차단(창문 닫고 공기청정기 활용)
-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실내 물청소 등)

➔ ② 실내공기질 안전관리²⁸⁾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

28) 관련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0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Q1) 미세먼지가 있는 날 환기 해야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초)미세먼지 경보, 주의보, 황사 발령 등의 시간대를 피하여 일일 최소 2회 이상 5~20분 내외로 환기를 실시합니다. 적절한 환기 시기는 영유아 재실 전, 활동량이 많은 시간, 재실인원이 늘어나는 경우, 식사 시간 이후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특히, 음식을 조리하는 도중은 물론 조리가 끝난 후에도 30분 이상 환풍기를 가동하도록 합니다. 다만, 주변 100m 이내 도로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하였거나, 주변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환기를 자제하고,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는 대기가 침체되어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있으니 환기를 피하도록 합니다.

Q2)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가동방법은?

A) 재실자가 없는 야간에도 밀폐된 실내의 건축자재, 가구, 교육용품 등에서 포름알데히드 등이 방출되어 누적, 공기청정기는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과, 교실 내 활동도가 높은 수업 시간에 공기청정기 모드의 최대화(터보)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공기청정기는 공기 흡입구와 배출구가 벽 등 구조물에서 60cm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하며, 벽이나 가구 등에 인하여 일부라도 막혀 있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전자기기 주변에 설치하거나 황사 등 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바닥에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3) 공기청정기 관리방법은?

A) 공기청정기의 관리 방법은 공기청정기 제조사 별로 제공, 어린이집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관리방법 보다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외부는 부드러운 천이나 면봉 등을 이용하여 먼지 등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어린이집에서 세척이 가능한 프리필터 등은 주 1회 이상 세척합니다. 또한 교체해야하는 필터의 교체 주기는 제조사에서는 보통 1회/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경우는 특성을 고려하여 4회/년 이상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어린이집에서는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등 관리 시 알람장(키즈노트 등)의 공지사항을 통해 부모와 공유

출처: 서울시 보육담당관(2018).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사례 ② 의사사고



가) 현장학습(관람, 체험, 견학 등)

• 현장학습 전 준비사항

- 계획 수립 : 연간 보육계획 수립, 영유아 건강 및 날씨 고려, 학부모 의견 수렴
- 부모 공지 : 문서(가정통신문, 보육계획안 등) 및 동의서(참여 유무, 부모서명)
- 사전 답사 : 동선 파악, 위험 요인 확인 / 영유아의 이동 동선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화장실, 의무실과 함께 인근 병원도 미리 확인
- 계획표 및 시간별 세부일정 작성 : 전반적인 계획표 / 교사역할 분장
- 영유아 및 보육교사 안전교육 실시 : 구조법 및 응급처치 요령 숙지
※ 교사는 응급상황 시 연락할 영유아 보호자 전화번호 목록 지참
- 영유아에게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름표 착용
-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확인

• 현장학습 중 주의사항

- 이동시 <도보> 전체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빨리 걷도록 재촉하지 않기, 인원체크
- <차량> 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부 안전사항 살핌, 안전하게 하차, 인원체크

• 현장학습 후 확인사항

- 인원 및 소지품 확인 : 최종 인원 점검, 소지품 확인
- 손 씻기 및 건강상태 확인 : 손 씻기, 건강상태 살핌
- 평가표 작성 : 활동관련 평가, 안전관련 평가

추가 사고사례 - 현장학습 : 키즈카페 사고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①)** 어린이집 인솔 하에 키즈카페(실내놀이터) 현장학습 중, 트램폴린 위에서 놀던 만3세 유아 옆으로 보육교사가 갑자기 접근하여 뒀. 그러자 유아가 반동에 의해 넘어지면서 골절된 사고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②)** 키즈카페 기차놀이 앞 울타리에서 장난을 치던 만3세 유아가 울타리에서 추락하면서 바닥에 부딪혀 골절 됨
- ▶ **(예방 수칙)** 키즈카페는 어린이집과 달리 규모가 큰 놀이 공간으로 영유아가 쉽게 흥분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움. 한꺼번에 여러공간에서 놀이하기 보다 두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시간과 순서를 정해 놀이 규칙을 확정한 후에 놀이하도록 지도

추가 사고사례 - 팔각정(정자) 추락 사고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동산 아래에서 채집 등의 활동 후 동산 중턱의 정자로 이동. 정자 위에서 노래와 율동 수업을 진행하고 이동하기 위하여 일어나도록 지시할 때 만5세 유아가 난간에 접근하여 걸터 앉다가 지면으로 추락. 약 3.5m 아래로 추락한 유아는 의식을 잃고, 구급차량을 통하여 병원으로 이동
- ▶ **(예방 수칙)** 외부활동 시,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계획하고, 교사는 아이들을 더욱 주의깊게 살핌



MEMO

사례 ③ 차에서 잠들었어요



가) 통학차량²⁹⁾ 운행 관련

- (운행신고) 도로교통법³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가능(2008.9.2)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시 행정처분 : 시정명령(시정명령 위반시 최대 3개월 운영정지)

- (차량 내 금연표시) 통학차량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³¹⁾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9) 19년 보육사업안내
차량안전관리

30)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31)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참조」

나) 운전자 등 동승자/담임교사 관련

- (운전자 관리)

- ① 어린이집 원장은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 효력여부(취소 또는 정지 등)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면허운전자가 통학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매 반기별로 운전기사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 ② 운전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³²⁾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32)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참조」

33)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개정 (19.4월 시행) 참조」

• (운전자 의무)

- ①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 부착 /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 비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③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② 통학차량에 승차한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하차한 영유아가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함
- ③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④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함.
- ⑤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하차 확인장치’³³⁾를 작동하여야 함 ※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

• (동승보호자/동승자 관련)

- ①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 ②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 ③ 등·퇴원 차량 운행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④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영유아가 하차한 후 지체없이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미하차 영유아 확인

• (담임교사 의무)

- ①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중 무단결석 영유아가 있을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영유아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여야 함

심화



주제7 >> 통학차량

→ ① 통학차량 차령

1) 통학차량 차령 요건

- 2015년 7월 20일 신설 개정(2019년 시행)된 법³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출시된 지 9년까지(정기검사 기준 충족으로 연장되더라도 1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운행할 수 있음

※ 주의사항

1. 운송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차령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2. 차령 기산일 기준
 - ①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 최초 신규등록일
 - ②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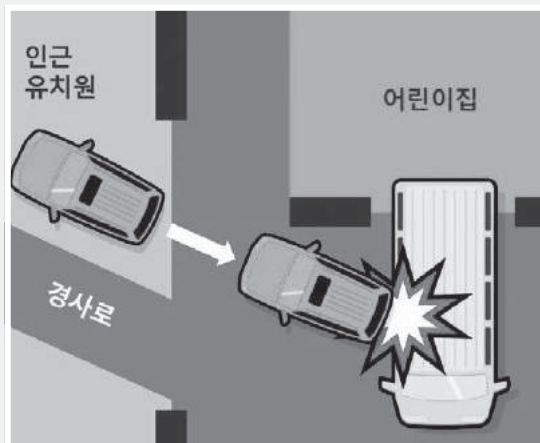
34)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추가 사고사례 - 어린이집 하원 시 잘못된 탑승위치로 인한 사고

-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인근 유치원 학부모가 (1차 책임: 중립 기어 상태로 경사로에 주차한 차량이 뒤로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어린이집의 정문에 세워둔 통학차량 승하차 출입문 쪽으로 돌진, 하원차량 탑승을 위해 대기 중이던 만2세 아이가 치임. 이후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

▶ (예방 수칙)

-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주·정차 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도로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위해 요소가 없는 방향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정차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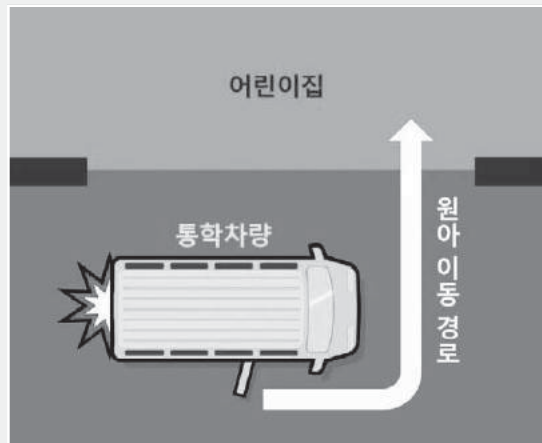


추가 사고사례 - 차량 후진 사고

▶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등원 중 차량 오른쪽(출입문)이 어린이집 입구 반대편을 향하도록 차를 정차시키고 영유아를 하차시킨 상황에서 만2세 아이 홀로 차량 뒤쪽으로 돌아가다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짐

▶ **(예방 수칙)**

- 운전자는 차량 후진 시 영유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영유아의 모습이 자동차에 가려질 수 있으므로 담임교사나 보호자에게 인계 되었는지 확인 후에 출발함
- 교사는 영유아가 차량의 앞·뒤를 횡단해야 할 경우 안전하게 횡단하였는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함



MEMO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학습목표

- 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절차를 이해한다.
- 안전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방법을 숙지한다.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차 사고 후 적절한 대응 조치는 추가적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 장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하는 응급처치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례를 통해 숙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응급처치 관련 심폐소생술은 실습을 통해 습관적으로 훈련되어지도록 별도의 교육 수료를 권장합니다.

1. 안전사고 대처법
2. 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응급처치



01

안전사고 대처법

가.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 당황하지 않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당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교사가 당황하게 되면 사고를 당한 영유아나 나머지 영유아들이 함께 당황해 하거나 더 불안해 할 수 있음
 - 사고를 파악할 때에는 누가 어떻게 다쳤는지, 그 현장에 남아 있는 위험이나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판단
- 다친 영유아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법 실시
- 119나 응급실에 구조를 요청
- 부모에게 연락
- 남은 영유아를 안심시킴
- 사고보고서를 작성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어린이집의 장이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5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보육교직원의 자세

- 모든 보육교직원은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법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응급처치는 가까운 전문기관에서 교육
- 보육교직원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필요한 물품이 갖추어진 구급상자를 준비함
 - 구급상자에는 응급전화번호, 약품의 사용방법 등을 부착함
- 영유아의 비상연락망, 응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와 응급절차 과정 목록 등을 전화기 옆에 비치
- 야외학습을 나갈 때 교사는 휴대용 구급상자와 비상연락망을 준비함
-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부모동의서를 받도록 함

다. 응급처치의 기본원칙

-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자신부터 안전을 확보 / 구조자가 위험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달려드는 것은 양쪽 다 해로운 일임
- 언제나 신속, 침착,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함
- 여러 환자가 있는 경우 긴급한 환자부터 처치해야 함
- 이송이 필요한 상태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함

※ 응급환자 신고 시 전달할 기본 정보

- ❶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 ❷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상태
- ❸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 ❹ 환자의 수

-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가급적 음식물을 주지 말아야 함. 특히 무의식 환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도를 막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하며, 심각한 손상, 심한 출혈 등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음식물 제공은 수술시작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음
- 부상자 운반 시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이송하는 행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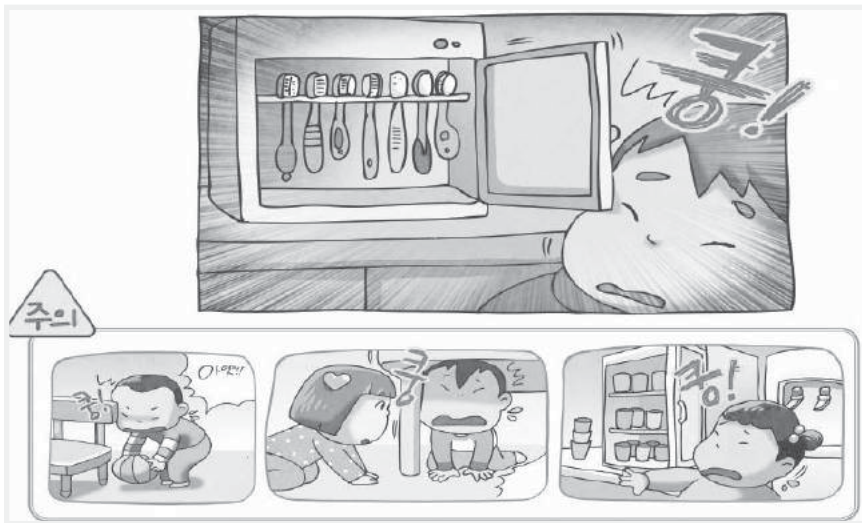
MEMO

02

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응급처치

1 찢어짐

사례 1 빨리 양치하고 싶었어요



가) 찢어짐(타박상, 찰과상 등)

- 가벼운 상처의 경우 깨끗한 상처는 그대로 두고 밴드를 붙이지만, 더러운 상처인 경우에는 다친 부위를 식염수나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
- 물기를 깨끗한 거즈로 닦은 다음 상처에 밴드를 붙임
- 더러운 상처 중 토양, 분변, 타액에 오염된 상처, 화상, 동상에 의한 상처 등은 파상풍 백신 접종 또는 파상풍 능동 면역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병원 방문이 필요
- 상처가 깊은(진피층까지 침범)한 경우나 상처가 큰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흉터가 심할 수 있어 봉합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감염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
- 병원 방문 시에는 아이가 무엇에, 어떻게 다쳤는지,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나 먹고 있는 약이 있는지, 아이의 예방 접종력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

참고 - 피부의 구조와 상처의 종류



찰과상
마찰에 의하여 피
부의 표면에 입는
상처



타박상
외부의 힘(충돌
등)이 피부의 넓
은면에 가해질 때
생기는 상처



절상
끝이 예리한 물체
(칼, 유리, 파편 등)
에 의해 피부가
잘려져 입는 상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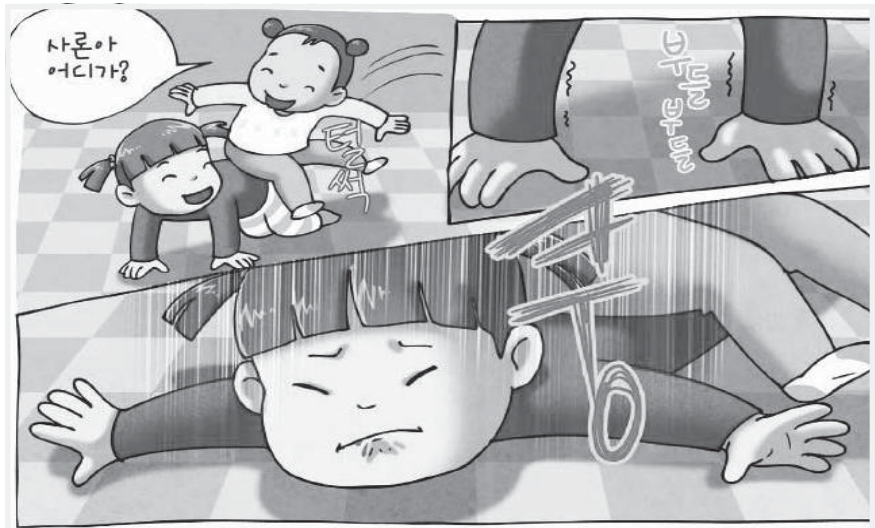
자상
끝이 예리한 물체
(못, 창 등)에 의
해 피부가 찢려서
입는 상처



열상
외부의 자극에 의
해 피부가 찢어져
입는 상처

2 치아손상

사례 ① 입술을 바닥에 찢었어요



가) 치아손상

- 부러진 이가 땅에 떨어졌다면, 부러진 치아의 씹는 면을 잡고 생리식염수를 부어 씻어 낸 후 차가운 흰 우유에 넣어서 얼음팩과 함께 아이스 박스에 넣어 치과로 가져감
- 영구치가 빠졌는데 영구치와 유치 구별을 하지 못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부모와의 통화) 후 조치함



MEMO

3 골절 / 탈구

사례 ① 팔이 당겨져서 아파요



가) 골절 / 탈구

- 다친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고정된 후 병원에 방문
- 다리를 다친 경우에는 살살 눕힌 후 부목이 있다면 부목으로 고정하거나 없다면 나무판, 박스 등을 무릎과 발목 아래에 넣어 받쳐 주어 고정함
- 팔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의 위아래 관절까지 부목을 단단하게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함



MEMO

4 화상

사례 ① 전기 주전자의 물이 쏟아졌어요



가) 화상

- 화상 부위를 물(수돗물 등) 또는 생리식염수 등으로 흘려보내며 상처를 식혀주는 것은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10~20분)
- 화상 부위가 손이나 발일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에 천이나 거즈를 끼워서 서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 깨끗한 붓대로 손과 발을 느슨하게 함
- 초기 대응 후 젖은 거즈나 수건으로 상처부위를 감싼 뒤 신속히 병원 방문

주의사항

- 물집을 제거하는 것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음
- 크림, 연고,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음
- 화상은 육안으로는 중증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

심화



주제8 >> 화상

→ 화상유형별 대처

1) 열상 화상

- 화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김
- 환부를 흐르는 찬물로 15~30분 정도 식힘
- 수포가 발생하였거나 영유아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

2) 흡입 화상

-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김
- 의복을 느슨하게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함
- 호흡 또는 심장 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시작

3) 화학 화상

- 즉시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학물질 제거
- 화학화상은 3도 이상의 화상으로 간주하여 응급실 방문

4) 전기 화상

- 상처 부위가 크고 작은 것과 달리 모든 전기 화상은 3도 화상임
- 전기로 인한 화상은 외전상 보이는 화상보다 심한 내상을 흔히 동반
- 전기 감전 발생 시 함부로 환자를 직접 떼어내지 말고 일단 전기 스위치를 내려 전기공급 중단
- 화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김
- 좌측 팔의 전기화상은 심장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필히 응급실 방문



응급처치 및 생활가이드

- 물 혹은 불에 데인 경우에는 옷을 벗겨야 하는데 옷을 벗기거나 환부 부위의 옷을 자르는 행동은 가급적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하도록 즉시 응급실을 방문함
- 물질이 생긴 경우에는 임의로 터뜨리지 말고, 물질이라도 절대 벗겨 내지 않도록 함
- 상처 부위를 소독한다고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등의 자극성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음
- 화상부위에 간장을 바르거나, 감자를 붙이는 경우 등의 민간요법은 2차 감염을 일으키거나 창상 감염을 일으켜 패혈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초래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www.snuh.org>

5 물림

사례 ① 강아지가 화났어요



가) 물림(동물)

-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도록 하며, 개방성 상처인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
- 병원에 방문하여 동물의 종류와 정황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
- 동물의 주인이 있을 경우 동물의 병력을 확인하여 의사에게 설명하고, 야생 동물인 경우 물린 장소, 시간, 동물의 특징 등 사고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 함

- 주인이 있는 동물의 경우 사후 사건 처리를 위하여 동물 주인의 전화번호를 받아 놓도록 함
-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진술과 신원을 기록
- 동물에게 물린 상처는 일반 상처에 비해 감염률이 약 8~9배로 매우 높은 수준
- 물린 상처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상처가 깊을 가능성이 크고 타액에 세균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상처의 깊이 등을 진단하도록 함

나) 물림(사람)

- 사람의 구강 내에는 입으로 물 때 옮겨질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균들이 산재
- 사람에게 물렸을 때 만약 피부에 상처가 없다면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깨끗이 씻는 것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 만약 피부에 상처가 났다면,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난 후 사고 일지에 기록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함

다) 물림(벌, 곤충 등)

- 침이 박혀 있을 경우는 침을 잡아당기지 말고 신용카드 같은 것의 모서리로 살살 긁어 침을 제거하고, 침 끝에 남아 있는 독이 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잡아당기거나 상처 부위를 쥐어짜지 않도록 함
- 이차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흐르는 물로 상처를 깨끗이 닦아주고, 연고를 바름
- 쏘인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한 후에 냉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킴

- 대부분의 곤충 물림은 물린 부분의 염증 반응만 몇 시간 정도 진행된 후 호전되나, 간혹 전신 두드러기, 감염, 아나필락시스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에피네프린 주사의 투여가 늦어지면 사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곤충에 물린 아이가 입술, 얼굴, 팔 등이 심하게 붓거나, 호흡 곤란, 심한 기침,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있으면 빠른 응급실 방문 필요



MEMO

6 이물질 삼킴

사례 ① 콧구멍에 쏙



가)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코)

- 반대편 콧구멍을 막고 세차게 코를 풀도록 함
- 면봉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하다가 더 깊이 밀어 넣거나 점막 손상으로 코피를 유발할 수 있음
- 풀어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거나, 코를 풀 수 없는 영아의 경우에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확인

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눈)

- 눈의 표면에 먼지가 붙어 있을 경우 눈꺼풀을 벌려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을 흘려 씻어 내도록 함
- 영유아가 눈을 비비면 각막이 손상 될 수 있으니 눈을 비비지 않게 함
- 눈을 감게 하고 깨끗한 손수건 등으로 띠를 만든 후 눈을 가려 눈을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

사례 2 비눗물을 삼켰어요**가) 화학제품 사고 관련³⁵⁾**

- 세제나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 중 신체일부에 접촉하거나, 음료 등으로 오인하여 마셔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 입으로 마시거나, 눈에 접촉하는 사고 다발(음용 77.5%, 안구접촉 19.5%, 기타 3% 등)
- 어린이집에서는 활동자료로 세제, 화장품 등의 화학제품이나 콩, 씨앗 등 작은 곡식 등은 가급적 사용 자제

35) 한국소비자원(2018).
생활 화학제품 어린
이 중독사고 주의하
세요

나)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 (강산, 강알칼리 성분) 화학제품을 삼키거나 빨아 먹은 경우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음
 - 억지로 구토하게 하는 경우 토사물 흡인, 식도 손상 등 합병증을 유발
 - 입과 얼굴을 철저히 헹구고 병원 응급실로 이동
 - 삼킨 제품의 성분에 따라서 겉으로는 증상이 없어도 심한 식도, 위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는 것이 중요
 - 병원 방문 시 영유아가 삼킨 제품의 성분, 삼킨 양 등을 확인하여 의사에게 전달
- 제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 눈을 비비지 말고 흐르는 물로 씻어 낸 후 병원 이동
- 피부에 접촉제(분드, 풀 등)이 묻었을 경우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고, 미지근한 물과 세제를 이용해 제거

7 질식

사례 ① 작은 호두 조각이 목에 걸렸어요



가) 질식(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경우)

• 기도가 막힌 경우

- 음식물이나 사탕, 장난감 등이 기도로 넘어가 호흡이 막히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목을 감싸 쥐고 괴로워 할 때, 즉시 119에 연락하고 응급처치(하임리히법 등)를 실시



MEMO

심화



주제9 >> 응급처치(기도가 막힌 경우)

➔ ① 1세 이하의 영아를 위한 응급처치(~12개월)

- 아기를 왼쪽 팔에 얹어 올려놓고서 영아의 목과 머리를 받힘
- 오른쪽 손바닥으로 아기의 어깨죽지 사이를 빠르고 힘 있게 4번 연속해서 때려줌
- 위의 방법으로 이물질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아기를 딱딱한 바닥에 바로 눕히고 영아의 가슴 중앙의 뼈 있는 부위(흉골)를 손가락 2개로 힘 있게 4차례 눌러줌

※ 너무 세게 누르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

- 그래도 숨을 쉬지 못하면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로 영아의 양 볼을 눌러서 입을 벌린 후 가제나 수건으로 혀를 잡아당겨서 영아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
- 이렇게 해도 이물질이 깊숙이 들어가서 호흡곤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즉시 영아의 입과 코를 교사의 입으로 덮은 채 숨을 불어 넣어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서둘러 응급실로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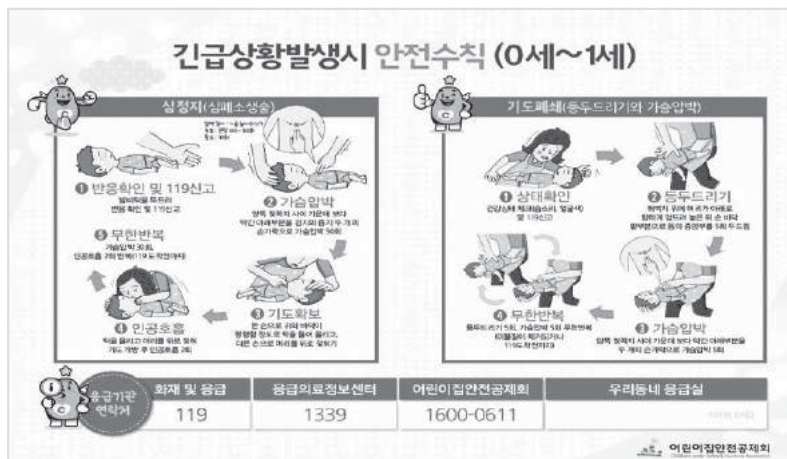
➔ ② 1세 이상의 영아를 위한 응급처치

- 응급처치로 이물질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영아를 딱딱한 바닥에 똑바로 눕힌 후에 명치와 배꼽 사이에 교사의 한쪽 손바닥을 대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얹은 후 아래에서 위로 끌어 올리듯이 밀어 올리며 몇 차례 재빨리 눌러줌

※ 간이나 갈비뼈가 상할 수 있으므로 너무 심하게 누르는 것은 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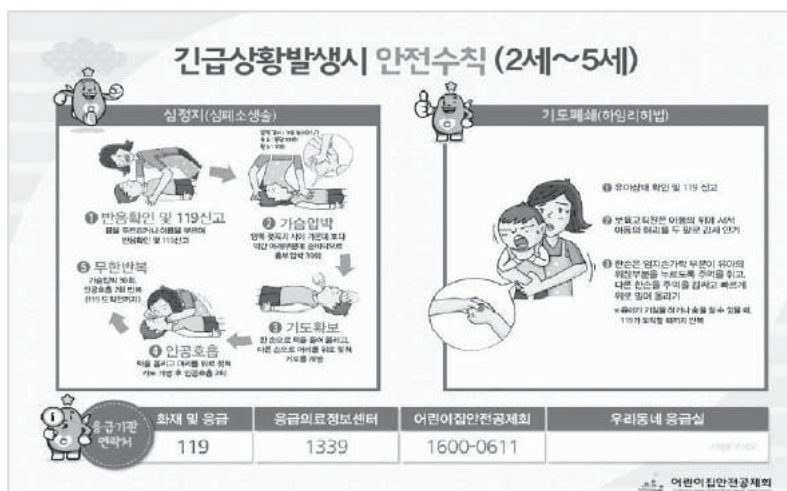
- 영아가 계속 숨을 쉬지 못하면 입을 벌리게 한 후 혀를 잡아당겨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함
- 그래도 숨을 쉬지 못하면 인공호흡과 복부 압박을 각각 5회 반복하면서 119의 신고 또는 얼른 응급실로 옮김





→ ③ 유아를 위한 응급처치 - 하임리히법

- 유아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 유아를 안음
- 제일 아래쪽 갈비뼈 바로 밑과 배꼽 약간 위쪽에 한 손의 주먹을 밀착시킨 뒤 다른 손으로 덮고 세게 꺾어낸 것처럼 45도 정도의 각도로 위쪽으로 눌러줌
- 물체가 나올 때 까지 5회씩 반복
- 물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19에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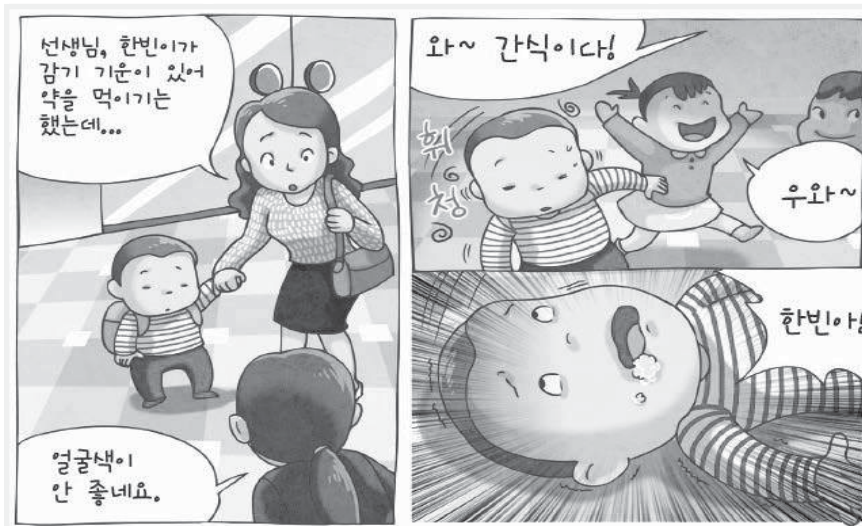
36)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e.csa.or.kr) > 예방자료실 >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 포스터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5)³⁶⁾.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 행동 매뉴얼

※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은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 요망

8 열성경련

사례 ① 열성경련



가) 발작(경련)/ 구토

- 경련은 열성경련이라 하더라도 경련이 반복되거나 지속될 수 있고, 단순열성경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경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경련이 발생하면 경련이 멈췄더라도 일단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
- 영유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이나 억제를 하지 않고, 목과 허리 부분의 옷을 느슨하게 함
- 구토를 하거나 입 안에 구토물이 보이는 경우 질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억지로 입을 벌리지 않음

※ 설압자 등(없으면 나무젓가락을 거즈로 말아서) 사용하여 혀가 말려들어가지 않게 함

나) 열이 날 때

-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 해열제·감기약 등을 투약할 경우 미리 부모의 투약 의뢰서 또는 부모의 투약요청 의사를 확인(유선 등)하고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 가능 시 투약 실시 ※투약 시 약품에 기재된 투약기준(용법, 용량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어린이집에서는 해열제를 복용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해열제 복용 후에도 고열이 지속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병원 진료를 권유

• 해열제

해열제를 복용하여야 하는 경우	해열제 사용 시 주의점	해열제 사용
- 백일 이후 - 섭씨 39도 이상 - 만성적인 폐·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 이전 열성경련이 있었던 경우 - 열이 상승하는 시기에 먹임	- 정확한 양, 4~6시간 간격을 두고 투여 - 자주 사용은 금할 것 - 자는 아이를 깨워서 투여하지 말 것	- 해열제는 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며, 병의 경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 영유아가 평상시처럼 잘 먹고 잘 놀며 잠을 잘 자는 경우에는 해열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됨

• 해열제 종류

타이레놀(Acetaminophen)	이부프로펜(ibuprofen)
- 4~6시간 마다 10~15mg/kg(몸무게kg당 0.3~0.5cc)로 사용 - 하루 5회 이상 투여해서는 안됨 -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시간이 걸리므로, 복용 - 1시간 내에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시 투여해서는 안됨 - 간 기능 및 신장기능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음	- 6~8시간 마다 5~10mg/kg(몸무게kg당 0.25~0.5cc)를 사용 -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시간이 걸리고 타이레놀에 비하여 지속시간이 길며, 진통효과가 좋아 밤새 통증이 있거나 열이 있는 경우 사용 - 큰 부작용은 없으며 소화불량이나 구역감이 5% 정도에서 생길 수 있고 아주 드물게 위장출혈, 뇌수막염, 신장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심하게 토하고 탈수가 심한 영유아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함

출처 : 보건복지부·대한소아과학회(2011).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



MEMO

즉시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야하는 경우

▶ 열날 때

- 열이란? 직장 온도 섭씨 38도, 구강온도 섭씨 37.5도, 겨드랑이온도 섭씨 37도 이상으로 정의. 가벼운 열(38도-38.5도)은 운동을 하거나 옷을 많이 끼어 입거나 목욕을 하거나 더운 날에 측정될 수 있음. 의심스러우면 30분후 재측정
- 3개월 이하의 영아가 열이 날 때
- 매우 아파보이고 점점 심해진다고 판단될 때
- 의식이 없거나 점점 나빠질 때
- 다리를 절거나 움직이지 못할 때
- 빠르게 숨을 쉬거나 숨쉬기 힘들어서 잘 먹지 못하거나 놀지 못할 때
- 목이 뻣뻣하거나 경련을 할 때

▶ 토할 때

- 반복적으로 심하게 토할 때
- 배가 평소보다 부푼 듯이 보일 때
- 배를 움켜잡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심한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
- 3일 이내에 머리를 다친 적이 있는 경우
- 탈수 현상(소변 양이 줄고 혀가 말라 있는 등)이 있는 경우
- 녹색 혹은 피 색깔의 구토를 하는 경우

▶ 기타

- 처음으로 경기를 할 때
- 검은색 변을 보거나 피가 섞인 변을 볼 때
- 머리를 다친 후 의식이 흐리거나 자려고만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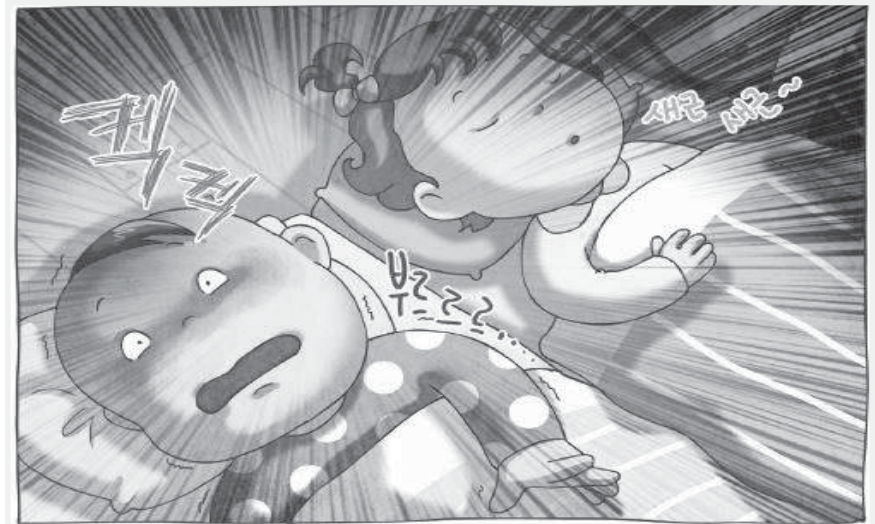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대한소아과학회(2011).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



MEMO

9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례 ① 영아돌연사증후군



가)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정의 및 현황

- 정의 : 영아가 예기치 않게 사망한 경우는 종합적으로 영아돌연사(SUID: Sudden Unexpected Infant Death)라고 함
 - 그 중 영아돌연사(급사)증후군(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은 임상 기록의 검사, 사망 현장의 검사, 완벽한 부검 실행을 포함하여 철저한 사건조사 후에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1세 미만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의
 - ※ 어린이집에서 영아 사망 시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고,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사안별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음
- 현황 : 계절별로는 겨울 및 환절기에, 시기별로는 생후 6개월 내 주로 발생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5년간) 국내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망건수는 총 393건으로 연평균 약 78건임
 - 이 중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공제회로 접수된 사례(추정 포함)는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3건, 2017년 0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3건이며, 최근 감소 추세에 있음
 - ※ 다만, 1세 이상의 영아 또는 유아의 경우도 SIDS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면 시 주의를 요함

나)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안전수칙 (To Do / Not To Do)

해야 할 일 To Do

- 수유 후 트림시키기
- 영아를 재울 때 등을 바닥에 대고 천장을 보도록 바로 눕힘
- 영아가 수면하는 바닥의 면이 단단해야 하며 답지 않게 함
- 어둡지 않게 하여 수면 중인 영아의 얼굴을 살필 수 있어야 함
- 가벼운 이불로 영아의 가슴까지만 덮게 함(머리/얼굴을 덮지 않도록 함)
- 영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함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숙지함

하지 말아야 할 일 Not To Do

- 영아가 자고 있는 주변에 위험한(독신한) 물건을 두지 않음
- 영아와 같은 침대에 자거나 바로 옆에 눕지 않도록 함
- 흡연과 간접흡연 금지/방지
※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³⁷⁾ 시행(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37) 관련법령. 「국민건강
증진법(18.12.31 시
행)」 참조
단, 3개월 계도기간

'영아돌연사증후군' 이렇게 예방하세요!



부록 ① 어린이집 분야별 안전점검 (소방, 전기, 가스)

38) 관련법령. 「화재예
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39) 관련법령. 「전기사업
법 시행규칙 제35조
의 2」

40) 관련법령. 「도시가
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41) 관련법령.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70조」

구분	정기 안전점검 대상시설		주기	주체	비용
소방 ³⁸⁾	간이스프링클러 및 스프링클러 설치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1년 1회	자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체	신청자
전기 ³⁹⁾	일반용전기시설(용량 75kW 미만)			관할 전기안전공사	신청자
가스	도시가스 ⁴⁰⁾	1종 보호시설(어린이집) ※ 월사용 예정량(1000㎡) 이상 시 실시 기준량 미달 시 의무 아니나, 지자체별 상이		관할 가스안전공사	신청자
	LPG ⁴¹⁾	1종 보호시설(어린이집)			지자체별 상이

설비종류		설치기준
소방 설비	소화기	연면적33㎡ 이상 ※ 노유자시설의 경우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선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1 이상으로 설치 가능 / 소화기수량산정 : 노유자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100㎡마다 1능력 단위 이상, 3.3kg소화기 3능력 단위
	스프링클러	바닥면적합 600㎡ 이상 노유자시설
	간이스프링클러	바닥면적합 300㎡ 이상 600㎡미만
		바닥면적 합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포함)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노유자시설
	단독형감지기	구획된 모든 실(소방법 및 영유아보육법)



MEMO

부록 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의무화 및 콘텐츠 안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대상 아동에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제2항 개정('18.2.21.)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개정('18.8.28.)에 따라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1회 의무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의 실시 결과⁴²⁾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42) 19년 보육사업안내
115 페이지 참조

※ 예방교육 관련 문의

-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고객센터-Q&A게시판질의)
- ▶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형석선임(hskim@nia.or.kr, ☎053-230-1340,1342)

온라인 콘텐츠 활용교육**<동영상 콘텐츠>**

- 교육방법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방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속 유아 대상 시청각 교육 진행
- 이용방법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 내 [콘텐츠·자료실]에서 검색 조건을 [대상-유아, 포맷-동영상]으로 설정하여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표준강의안 등을 활용한 자체교육

- 교육방법 : 표준강의안(PPT) 및 보조자료(동화, 동요, 체조 동영상)를 활용한 어린이집 자체 강의 진행
- 교육내용 : 균형적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형성 및 자기조절능력 강화
- 이용방법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 내 [콘텐츠·자료실] 메뉴에서 검색어를 [표준강의안]로 입력하여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전문강사 초빙교육

- 교육방법 : 전문 예방교육 강사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표준강의안을 활용한 강의 진행
- 운영기간 : 2019. 3. ~ 12. (매년 운영)
- 신청방법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에서 신청
 - ※ www.iapc.or.kr 방문 → [예방교육] 메뉴 →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메뉴 → 신청하기
 - ※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해당 지역 스마트쉼센터 담당자 확인 및 강사배정 후 신청 교사에게 문자와 메일 알림 진행(교육수요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문의처 :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대표번호 1599-0075)

부록 ③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발간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www.csia.or.kr) > 자료실 > 예방자료실

연번	책자	연도	연번	영상/음원	연도
1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 길라잡이	2014	1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2015
2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 행동 매뉴얼	2015	2	소중한생명 영아심폐소생술로 지켜요	2015
3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 포스터,스티커	2016	3	등하원시 주의사항	2015
4	어린이집안전관리백과 (1권)-실내외 보육환경 (2권)-소방,재난,자연재해 (3권)-통학차량과 등하원 (4권)-건강,환경,위생,급식	2016	4	놀이시설 이용안전	2015
5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안전교육 프로그램	2017	5	지켜보아요 안전약속	2016
6	관계와 귀기울임으로 만들어가는 유아 재난안전교육프로그램 연구	2017	6	안전가나다	2016
7	연령별로 알아보는 영아안전교육프로그램 (개정판)	2018	7	세피와 함께하는 화재/재난 대피 요령	2017
8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안전교육 자료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8			
9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 안전교육계획안 작성법을 중심으로	2018			
10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부모용) 교수자료 개발 결과보고	2019			



MEMO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18).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_____(2019). 2019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대한소아과학회(2011).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대한소아과학회(2011). 보육시설 관리자용 폭염대응 건강관리 업무 가이드북.
 보건복지부·대한소아과학회(2013). 어린이집 석면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4).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 길라잡이.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6). 어린이집 지진 관리·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환경부(2017).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소방청 홈페이지 www.nfa.go.kr
 서울시보육담당관(2018).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4). 창립5주년 기념 대국민 토론회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5).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 행동 매뉴얼.
 _____(2016a). 어린이집 안전관리 백과.
 _____(2016b).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집 vol2.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www.snuh.org
 질병관리본부·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health>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한국소비자원(2018). 생활 화학제품 어린이 중독사고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www.cpf.go.kr
 행정안전부(20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홍창의(2009). 홍창의 소아과학.
 Kliegman, & Robert M (eds.) (2015).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Elsevier Science Health Science.
 Layug ML, Barrett EJ, Kenny DJ.(1998). Interim storage of avulsed permanent teeth. *J Can Dent Assoc.* 64(5):357
 Blomlöf L, Otteskog P, Hammarström L.(1981). Effect of storage in media with different ion strengths and osmolalities on human periodontal ligament cells. *Scand J Dent Res.* 89(2):180.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목차

제1장

아동학대 예방

89

I. 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

89

1. 아동학대 개념

89

2.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90

3.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92

4. 아동학대 현황

94

II.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

99

1.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99

2. 아동학대 신고 현황

100

3. 아동학대 신고 방법

101

4.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과정

103

III.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판결·행정처분 사례

106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사례

106

2.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결 사례

109

3.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사례

113

IV. 어린이집 하루일과에서의 부적절 행위 사례와 교사의 역할

114

1.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아야 할 부적절 행위

114

2. 하루일과에서의 연령별 부적절 행위 사례와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

115

3. 부적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의 기본자세

126

제2장

성폭력·실종 예방

129

I. 성폭력 예방

129

1. 아동성폭력의 정의

129

2. 아동 성폭력의 현황

130

3. 아동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132

II. 실종 예방

135

1. 실종에 대한 이해

135

2. 실종·유괴 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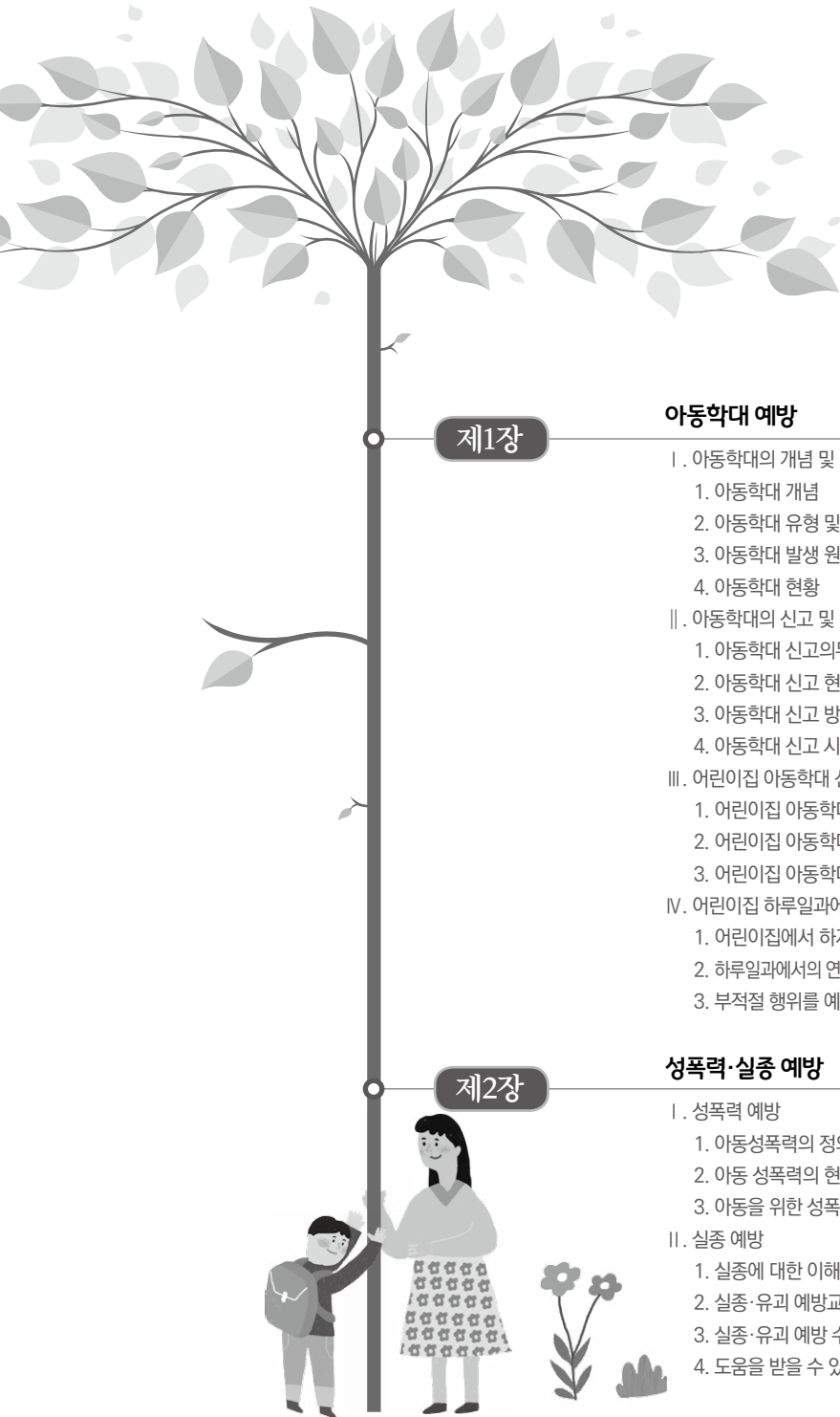
136

3. 실종·유괴 예방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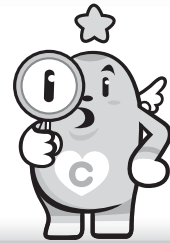
139

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140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획/편집

성명	소속	직위
우현경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성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	팀장
이선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	보육전문요원

집필

분야	집필
아동학대 예방	이완정 교수(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김흔숙 원장(인천성모병원어린이집)
성폭력 예방	정인자 공동대표(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
실종 예방	이기순 강사(실종아동전문기관)

제1장

아동학대 예방

I

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

1. 아동학대 개념

우리나라는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처벌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이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¹⁾을 통해서도 협약이행을 위해 강조되어 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아동이 부모,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를 가하거나(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돌보지 않아(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아동의 복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모두 아동학대인 것이다. 또한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의 형태로 해당 협약의 조항에 대한 포괄적 해석이나 의무이행자의 협약이행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당사국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 등을 공표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너무 좁게 해석하면 아동의 ‘신체의 안전 및 장래의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고, 광범위하게 정의를 내리면 ‘애매하고 경미한 행위’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영어 ‘child abuse’나 ‘maltreatment’ 모두 아동학대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maltreatment’는 ‘child abuse’를 포함한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낱어가 있다. ‘maltreatment’는 ‘부적절 행위’ 혹은 ‘부당 행위’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영유아에 대한 ‘부적절 행위’가 잘못된 훈육행동이라는 인식 없이 반복되거나 심화될 때 심각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과 제17조(금지행위)에 따라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학대유형의 구체적인 행위와 징후²⁾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표 1-1〉 신체학대 행위 및 징후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핍박하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도구로 때림, 뺨치기,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에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든,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기, 물에 빠뜨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 - 흔들린 아이 증후군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굳힌 상처 -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굳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굳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굳힌 상처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등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은 대개 2세 이하의 영아를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중대한 아동학대로 보고 있는 신체학대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아동학대로 판명되어 부주의한 양육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머리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은 영아의 머리를 바치지 않은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흔들거나, 유모차를 심하게 물고, 목말을 태워 조깅을 하는 경우에 뇌출혈과 망막출혈, 늑골의 골절 등 복합적인 여러 손상이 동반될 수도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의 약 30%가 사망하고, 약 60%가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실명,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간질 등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

2)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

2)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표 1-2〉 정서학대 행위 및 징후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학대를 지켜보도록 강요하는 행위	- 발달 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행동적 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밟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 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3)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표 1-3〉 성학대 행위 및 징후

구체적인 행위	행동적 징후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성적 행동지표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수면장애

4)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표 1-4〉 방임 행위 및 징후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에 무단결석을 시키는 행위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발달 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행동적 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잦은 결석

3.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1) 발생 원인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원인을 부모, 보육교사, 가정·지역사회, 어린이집 요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아동학대 발생 원인

부모 요인	보육교사 요인
•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 잦은 가정의 위기 • 어릴 적 학대 받은 경험 • 알코올 중독·약물중독, 불안,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 •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 • 부모의 심리적 미성숙	• 아동발달과 보육에 대한 지식부족 •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 • 아동학대, 훈육, 체벌에 대한 개념의 혼동 •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 아동존중에 대한 인식 부족 •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교사
가정·지역사회 요인	어린이집 요인
• 가족관계·가족구조의 문제 •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 결여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신체적 체벌에 허용적인 문화 •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 •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	•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 • 아동문제 지도 방안에 대한 논의 부족 • 업무과중을 조절하는 소통과 재원의 부족 • 교사교육 부족 • 원장의 운영 철학 • 영유아발달에 부적합한 환경

*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p139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을 아동에게서 찾는 것은 아동을 학대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아동이 부모나 양육자에게 신체적·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켜 학대를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동을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

2) 후유증

아동학대는 고의성과 지속성을 판단의 근거로 하지만 영유아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므로 일회성이라도 행위에 따라 학대로 판정될 수 있다. 특히 아동사망은 아동학대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1건의 사망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017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만 6세 미만 아동 수는 38명으로 전체 84.1%를 차지하였다. 영유아의 경우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대를 경험하더라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이로 인해 사망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표 1-6〉 아동학대의 신체적·정서적 후유증

구분	내용
신체적 후유증	• 신체손상: 신체일부의 변형, 피부의 결손, 자상, 화상, 기능소실과 신체장애(예: 청력저하, 시력저하, 대·소변 조절 능력의 저하, 뇌졸중 등) • 발육부진: 표준 체중과 신장 미달
정서적 후유증	• 지능손상: 지능발달에서 결함을 보임 •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높은 충동성으로 인해 각종 충동적인 행동을 보임 • 감정의 불안정성: 불안, 우울, 감정의 기복 등을 보임 • 사회성의 저하: 또래 관계 및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움 • 학교 부적응: 학교를 자주 빠지거나 혹은 졸업을 하지 못함 • 각종 정신과적 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형 사회적 참여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 출처: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p140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서적으로 아동의 성장을 방해하고, 평생에 걸쳐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후유증을 남긴다. 아동은 학대 받은 경험으로 우울하고 불안해질 뿐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충동조절에 손상을 주고 공격성과 낮은 자존감, 사회성이 저하되어 원만한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갖을 수 있다.

4. 아동학대 현황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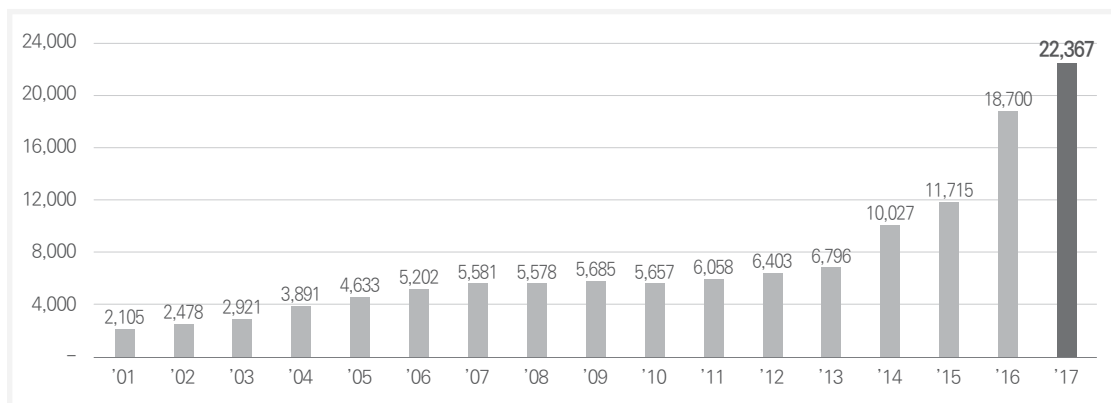
1) 아동학대 일반 현황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는 총 22,367건으로 2001년 2,105건 대비 약 10배 증가하였다.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 사례율이 19.6%('16. 18,700건→'17. 22,367건) 증가하였다. 2014년에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고, 해마다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및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통합, 신고의무 강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1-1]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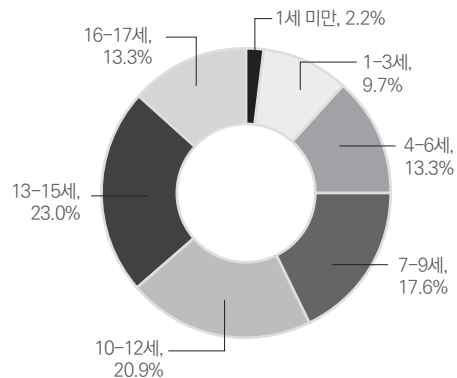
(단위: 건)



(2) 피해아동 연령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 6세 미만 아동 5,645건(25.2%), 만 7~9세 3,942건(17.6%), 만 10~12세 4,670건(20.9%), 만 13~15세 5,131건(23.0%), 만 16~17세 2,979건(13.3%)로 나타났다. 아동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만 6세 미만 아동이 아동학대전체 사례의 25.2%를 차지하고 있어,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이 학대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아동학대 피해 아동 연령



3)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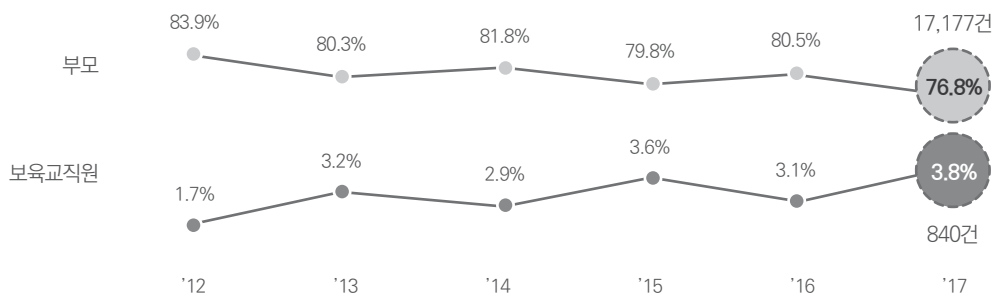
(3) 아동학대 행위자와 발생장소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7년 아동학대 사례 22,367건 중 부모가 17,177건(76.8%)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리양육자 3,343건(14.9%), 친인척 1,067건(4.8%) 순이었다.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교 직원은 1,345건(6.0%), 보육교직원은 840건(3.8%), 유치원 교직원 281건(1.3%)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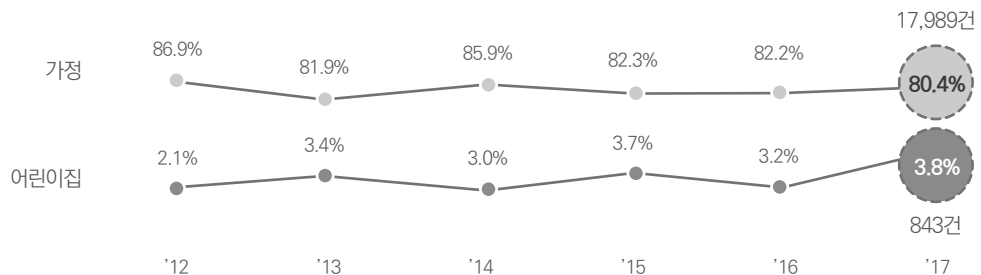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17,989건(8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에서는 843건(3.8%)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0.6% 상승한 수치이며, 건수 또한 587건에서 843건으로 256건이나 높아졌다.

[그림 1-3] 연도별 아동학대 행위자와 아동학대 장소 추이

행위자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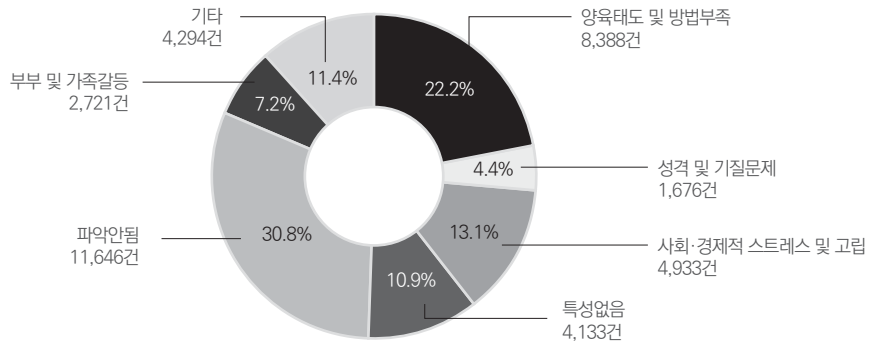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3.8%(840건)로 전체 아동학대사례 비율에 비하면 높다고 볼 수 없으나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고, 최근 몇 년간 수치와 비교해서도 2017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 다 음으로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에서의 학대경험은 아동에게 미치는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보육교직원은 아동 양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인식 개선과 아동학대 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4)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은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살펴 본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8,388건(22.2%)으로 가장 높았다(파악안됨 제외).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933건(13.1%), ‘특성없음’ 4,133건(10.9%),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2,721건(7.2%), ‘성격 및 기질 문제’ 1,676건(4.4%)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자녀 돌봄 및 양육 관련 지식 경험이 세대 간에 전승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족규모의 축소, 가구세대 구성의 단순화 등 가족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가족 내 돌봄, 교육, 정서적 지지 등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교육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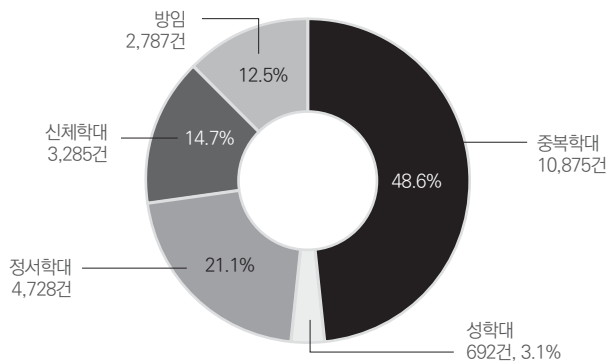
[그림 1-4]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



(5) 아동학대 발생 유형

아동학대는 단일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 두 가지 이상 중복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그림 1-5]와 같이 중복학대가 10,875건(4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학대 4,728건(21.1%), 신체학대 3,285건(14.7%), 방임 2,787건(12.5%), 성학대 692건(3.1%) 순이었다. 또한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중복학대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44.9%로 가장 높았고, 신체학대 38.6%, 방임 13.3%, 성학대 3.2% 순이었다.

[그림 1-5] 아동학대 발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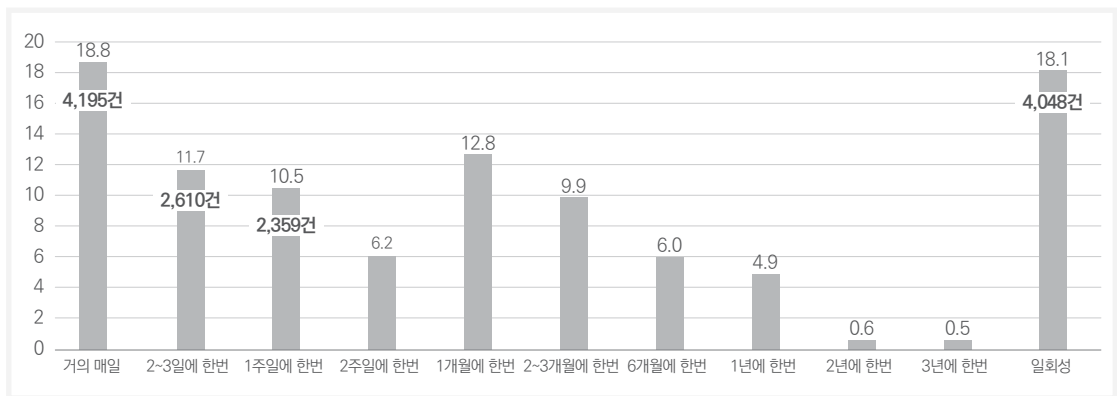
(6) 아동학대 발생 빈도

2017년 아동학대 발생 빈도는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4,195건(18.8%), 2~3일에 한 번인 경우 2,610건(11.7%), 일주일에 한 번인 경우 2,359건(10.5%)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41.0%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일회성 학대는 2016년 3,085건(16.5%)에서 2017년 4,048건(18.1%)으로 증가하였다. 아동학대는 일회성에 서 만성적인 학대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일회성인 경우도 심각한 아동학대로 판단된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에게 행해진 부적절한 행위는 일회성일지라도 장기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갖게 되는 영향과 같기 때문이다.

[그림 1-6] 아동학대 발생 빈도

(단위: %)



아동학대가 장기화될 경우 아동의 생애 전반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학대의 빈도가 더 잦고,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에는 공격성 표출, 우울성향, 자아존중감의 손상 등 학대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총 22,367건에서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는 840건(3.8%)이었다. <표 1-7>과 같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2013년 217건에서 2017년 840건으로 약 4배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연도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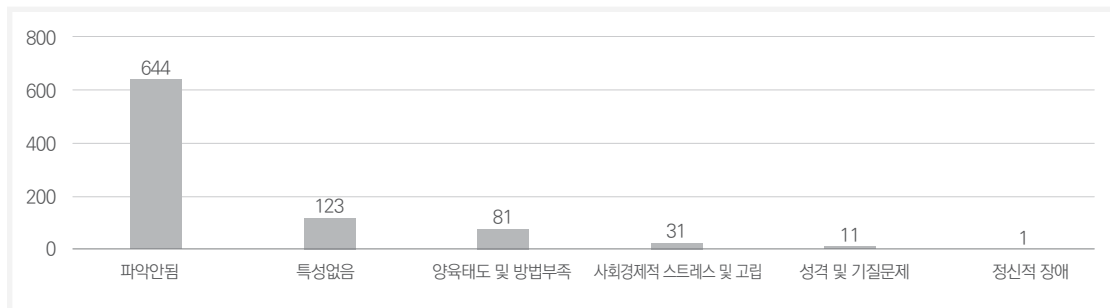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발생건수	217	295	427	587	840

(2)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자 특성(중복파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파악안됨’과 ‘특성없음’을 제외하고는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81건(9.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31건(3.5%), ‘성격 및 기질문제’ 11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로 보육전문가인 보육교직원도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으로 인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7]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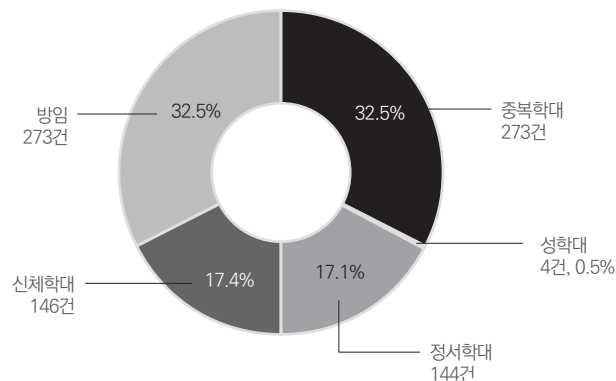
(단위: 건)



(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유형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 273건(32.5%), 방임 273건(32.5%), 신체학대 146건(17.4%), 정서학대 144건(17.1%), 성학대 4건(0.5%)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은 전체 아동학대 사례 유형에서는 방임이 12.5%인 것에 비해,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방임이 32.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성학대의 경우, 전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7년도에는 4건이 발생하였다.

[그림 1-8]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유형



II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

1.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제63조

• 제1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017년 기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전체 건수의 28.6%에 불과하며, 보육교직원의 신고는 313건으로 1.0%에 불과하다. 이는 5,168건(16.7%)을 신고한 초·중·고교 교직원과 비교된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75조에 의해 소속 기관의 장이 신고의무자교육을 미 실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제75조 (시행령 제26조)

•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요약 제시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내용: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표 1-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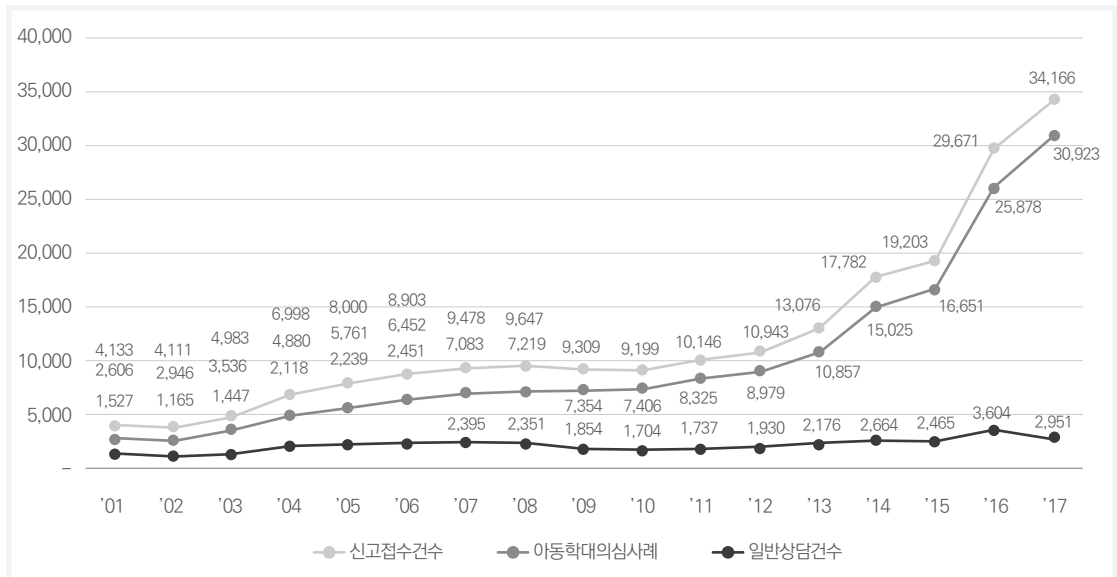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의2)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면 안 됨	(제12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제8조)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범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안 됨	(제46조) 어린이집 원장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 가목에 해당하면 2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2. 아동학대 신고 현황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2001년 2,606건에서 2017년 30,923건으로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고·접수 상승세는 2017년에도 이어져 전년 대비 15.1% 상승하였다.

[그림 1-9]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현황

(단위: 건)



*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아동학대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의심징후에 대해 조금 더 민감해야 한다. 본인의 행동이 아동의 안전을 해치는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아동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학대 의심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1) 어린이집 아동 결석관리

보건복지부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결석하는 경우, 부모가 보육교사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거나 유선이나 스마트 알림장 등 대화방법을 통해 어린이집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무단결석을 할 경우 가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방문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원장은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한다.

(매일) 영유아 건강·안전 확인 및 결석 아동의 결석 사유 확인

- 부모는 유선, 스마트알림장 등 대화방법을 통해 교사와 아동의 결석 사유 공유
- 교사는 아동 결석 당일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하여 결석 사유 확인

(무단결석) 2일 이상 어린이집 무단 결석 아동 발생 시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

- 가정방문은 보육교직원,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2) 아동학대 신고 절차

[그림 1-10] 아동학대 신고 절차



- ①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이 가능하며, 아이지킴콜 112를 활용한다.
- ② 아동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등 긴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후 신고한다.
- ③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한다.
- ④ 아동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 교사가 함께 아동 조사에 참여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예시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익명으로 신고가능).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_____의 이유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합니다.
 아동의 현재 상황은 _____입니다.
 ※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상황 등
 아동의 인적사항은 _____입니다.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학대행위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은 _____입니다.
 ※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 학대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신고자는 _____입니다.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등

※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3)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처나 징후가 있다면 먼저 보호자와 이야기하고 설명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직접 아동을 상담하기 보다는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신고를 통하여 전문가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아동 진술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는다.
-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하고 신고 후, 신고자와 피해 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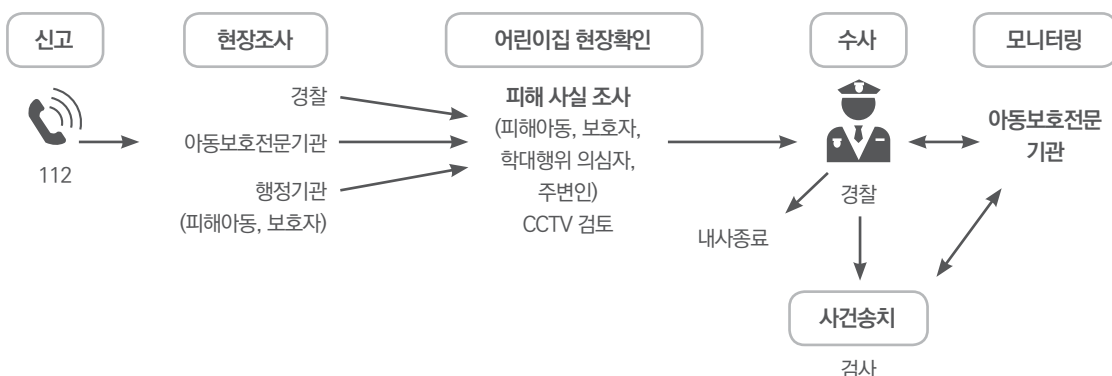
1) 아동학대 신고 시 사건 처리과정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⁴⁾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행정기관이 함께 현장조사를 위해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만난다. 또한 현장조사를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 등을 확보하고 보호자와 피해아동 뿐 아니라 학대행위 의심자와 원장과 교사 등 주변인 등이 조사를 받게 된다.⁵⁾

경찰이 수사에 있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사종결 혹은 불기소 의견 송치를 하게 되며, 혐의가 있을 시 기소 의견 송치를 하여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그림 1-11).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과 검찰, 법원의 결정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관계기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자료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예방경찰에 의해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기록된다.

[그림 1-11] 아동학대 신고사태에 대한 사건처리 1.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결정 전 조사⁶⁾(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통해 ‘공소 제기 처분’이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아동학대예방 관련기관에서의 상담, 교육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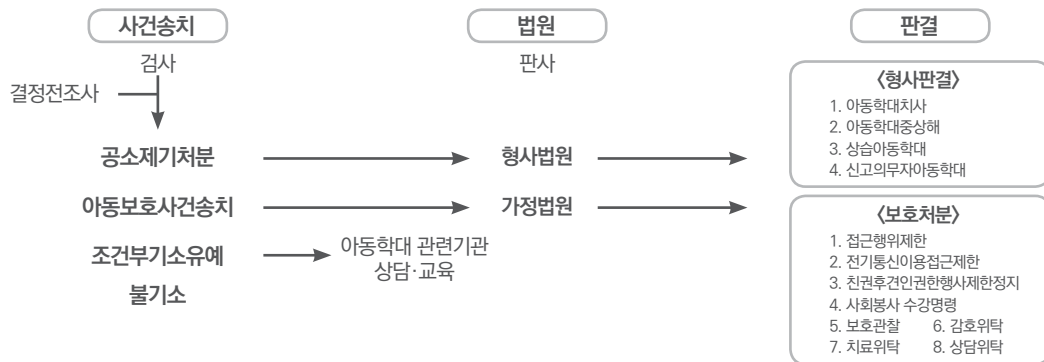
4) 아동학대전담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은 아동학대예방과 수사활동,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전담하며 장기 결석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현장에 반드시 출동하여 학대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와 아동연관기관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APO는 미취학 아동 및 초중등 결석과 아동학대 뿐 아니라 향후 노인 장애인 학대를 총괄하는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5) 경찰의 경우 사복을 입고 어린이집을 방문하도록 요청하는데 이는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을 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6)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공소제기 처분으로 형사법원이 ‘아동학대치사’로 형사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불가), ‘학대중상해’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아동학대’의 경우 벌금형없이 1/2까지 가중 처벌되며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⁷⁾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에 제한이 된다(아동복지법 제29조제3항).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은 사회봉사·수감명령의 사례가 다수이다(그림 1-12).

[그림 1-12] 아동학대 판결 사례에 대한 사건처리 2⁸⁾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018년 12월 11일 공포, 2019년 6월 12일 시행)에 따라 기존 취업제한 기간의 경우 10년으로 일괄 적용 되었으나,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변경되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8) 기재한 형사판결은 특정 판결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된 조항으로 실제 형사판결은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해당된다. 또한 아동보호사건송치는 가정법원으로 소수인 곳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아동보호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2)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상담과 교육, 사후관리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표 1-9>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 행정기관과 공조하며, 현장 조사 및 학대여부의 판단 및 조치 과정에 관여한다.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에 총 63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표 1-9〉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개입과정	역할
1.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신고접수〉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24시간 운영) •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시 현장조사 실시 • 일반상담 접수 시 타기관 연계(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호 통보) 〈현장조사〉 • 상담원 2인 1조 출동(경찰 우선/동행 출동) • 학대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 - (필수조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 (추가조사) 신고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인 • 아동학대혐의 판단(사법적 판단은 아니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체 판단)
2.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	〈피해아동 보호조치〉 • 응급조치: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 의료기관으로 인도 • 보호명령: 피해아동 보호위탁, 상담 및 치료위탁, 가정위탁, 친권·후견인 권한 제한 및 정지* * 보조인 및 후견인 선임 〈학대행위자 조치〉 • 응급조치: 학대행위자 범죄 행위 제지 및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임시조치: 학대행위자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 친권·후견인 행사제한 및 정지, 상담 및 교육위탁,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 보호명령: 행위자 퇴거 등 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제한, 행위자 친권정지
3. 사례관리	• 피해아동: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사건처리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등 • 가족: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원가정복구를 위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4. 사후관리	• 사후관리 연계기관 결정 • 사후관리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III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판결·행정처분 사례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사례

1) 피해아동 행위와 보육교직원의 학대 행위

<표 1-10>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 분석을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 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피해아동의 어떤 행위로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가 나타나는지를 설명의 편의를 위해 순위로 제시하였다. 학대 피해아동의 행위는 6가지로, 크게 ‘교사가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음’, ‘이유 없음’, ‘식사 습관의 문제’, ‘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 ‘친구와의 갈등’, ‘잘못된 실수’ 등의 이유로 발생되었다.

<표 1-10> 피해아동 행위와 보육교직원의 학대 행위

순위	피해아동 행위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1순위	교사가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음 (대집단 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음, 낮잠을 자지 않음, 상황이 명확하지 않음 등)	- 꿀밤 - 엉덩이, 얼굴, 팔, 머리, 어깨 때리기 - 밀쳐 넘어뜨리기 - 머리 밀치기 - 손을 꽉 잡기 - 잡아끌기 -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기 - 가두기 - 다른 반으로 보내기 - 아동의 작품을 찢거나 구기기 - 머리를 눌러 제압하다 아동의 얼굴이 책상에 부딪히게 하기 - 베란다에 가두기 - 아동의 머리끼리 부딪히기 - 얼굴을 잡고 흔들기 - 발로 밀기, 발로 차기 - 꼬집기 - (다수의 아동) 끌고 가기 - 소리 지르기 - 방치하기 -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기 - 아동이 잘 때 몸 위에 담요나 쿠션 올리기 - 아동을 밀어 앞니 부러지게 하기 - 앉았다 일어났다 70회 시키기
2순위	이유 없음	- 폭언 - 머리 발로 치기 -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는 종교활동 실시하기 - 사고 시 대처하지 않기 - 분무기로 뿌리기 - 차량에 두고 내리기 - 배달음식(자장면)으로 급식 시행하기 -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 부적절한 언어 사용하기 - 낮잠시간에 아동 방치하기 - 뺨 때리기 - 머리를 세게 잡아당겨 뺨기 -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기 - 사고 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기 - 밀치기 - 하루 종일 바운서에 묶어 놓기 - 어린 영아를 방에 가두기 - 학대 행위 목격하게 하기 - 밥, 죽, 반찬을 모두 섞어 먹이기 - 아동이 울 때까지 때리기
3순위	식사 습관의 문제 (밥을 늦게 먹음, 편식 함)	- 억지로 먹이기 - 아동이 토하는데도 억지로 먹이기 - 식판을 치며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 - 등 때리기 - 체벌(자로 발바닥 때리기) - 잡아끌기 - 점심 늦게 제공하기, 점심 제공하지 않기 - 아동의 옷에 일부러 음식을 묻히기, 쏟은 음식물 옆에 아동을 눕히고 사진 찍기 - 꿀밤 - 입안에 있는 것을 억지로 빼기 - 아동의 머리끼리 부딪히기 - 허벅지 때리기 - 꼬집기 - 분리하기 - 어두운 교실에서 밥 먹이기

순위	피해아동 행위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4순위	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을 함 (소리 지름, 뛰어들, 높은 곳에 올라감, 친구와 장난치, 밖으로 나감, 울음, 교재교구를 부숨)	- 꿀밤 - 등 때리기 - 얼굴 때리기 - 코, 볼, 귀를 꼬집어 멍들게 하기 - 팔을 잡고 끌고 감, 머리를 밀치기 - 한 팔만 잡아끌기 - 세게 흔들기 - 장시간 교실에서 제자리 뛰기 시키기 - 장시간 분리하기 - 방치하기 - 아동 얼굴에 의료용 테이프로 공갈 찢꼭지를 붙이기 - 부적절한 언어사용
5순위	친구와의 갈등	- 엉덩이 때리기 - 머리 때리기 - 꼬집기 - 손바닥을 손톱으로 누르기 - 바닥에 강하게 내려놓기 - 머리를 잡아당기기 - 물기 - 한 자리에서 생각하기(타임아웃) - 장시간 무시하기 -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두기 - 핀셋으로 찌르기
6순위	실수를 함 (옹변, 컵의 물 쏟음, 음식 흘림 등)	- 아동이 한 문제행동 따라하기(깨물기, 얼굴 때리기, 신발로 때리기, 장난감으로 때리기, 깔고 앉기) - 손, 엉덩이, 입, 머리 때리기 - 바닥에 세게 내려놓기 - 아동의 발을 잡고 끌고 나가기 - 소리 지르기 - 뒤통수 잡아끌기 - 세게 밀치기
		- 밀치기 - 흘린 음식 다시 먹이기 - 부적절한 언어 사용하기 - 엉덩이 때리기 - 방치하기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표 1-10>을 보면 보육교직원의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의 행위와는 관련 없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밀치기, 때리기, 잡아당기기, 꿀밤, 분리하기,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 소리 지르기, 부적절한 언어사용하기’ 등이다. 행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아동을 억압하고, 벌주고, 교직원의 말에 무조건 따르게 하려는 강압적인 행위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 6세 미만 아동의 발달 특성상 교사가 지시한 것을 한 번에 따르기는 쉽지 않다. 아동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강요하기보다 아동의 발달 특성과 이들의 욕구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장난감을 잘 정리하지 않는 다던가, 낮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보육교직원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부적절한 행위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2)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의 행위 특성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직원의 행위 특성을 살펴 본 결과 크게 ‘온정적이지 않은 반응’, ‘식사 지도 문제’, ‘체벌과 가혹한 행위를 훈육으로 알고 있음’, ‘대집단 운영 문제’, ‘아동보호 문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 ‘안전사고 대처 문제’ 등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문제로 이어졌다.

보육교사는 보육전문가가 되기 위해 개인 자질의 향상뿐 아니라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이 식사지도를 위해 억지로 먹이고, 훈육을 핑계로 가혹한 행동을 하거나, 대집단 활동 수행을 잘 못하는 아동을 벌 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자신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아동을 때리고 밀치는 등 아동의 안전에 무심한 것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표 1-11〉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의 행위특성

순위	행위특성	내용
1순위	온정적이지 않은 반응	• 아동이 울고 있는데 달래지 않고 하루 종일 방치함 - 아동이 울며 교실 한 구석에 있으나 교사가 아동을 달래거나 말을 걸지 않고 방치함 •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을 할 때 아동을 무시하거나 방치함 - 아동이 기저귀를 간 후 바지를 입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자, 아동의 바지를 입히지 않고 30분 이상 방치함 - 카네이션 만들기와 편지쓰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교실에 아동을 혼자 방치함 • 부적절한 언어 사용- 우는 아동에게 “시끄러워, 울지마”라고 말함
2순위	식사지도 문제	- 먹지 못하는 반찬을 억지로 먹임 - 토한 것을 다시 먹임/ 토한 것을 아동에게 치우도록 지시함 - 밥을 늦게 먹는 아동을 어두운 곳으로 분리시켜 밥을 먹임 - 밥을 늦게 먹는 아동의 식사를 뺏음 - 식사 시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공포 분위기 조성 - 점심식사를 늦게 제공 -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음 - 특별활동 시간에 맞추기 위해 빨리 식사 지도를 함
3순위	체벌과 가혹한 행위를 훈육으로 알고 있음	- 체벌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함 - 체벌을 학대로 인식하지 않음 - 손을 잡고 이야기 하는 것, 아동을 다른 장소로 분리하는 것, 다른 공간에 가두는 것, 아동을 끌고 가는 것, 장시간 분리하는 것(타임아웃) 등을 훈육으로 인식함
4순위	대집단 운영 문제	- 대집단 시 교사의 다리를 만지는 아동을 힘으로 제압함 - 울동을 반대로 하거나 따라하지 못한다고 때림 -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만들지 못하고, 편지를 쓰지 못한다고 방치함 - 재롱잔치를 준비하며 따라하지 못하는 아동을 때리거나 밀침 - 활동을 다 하지 못해 방치된 아동을 두고 다른 활동을 하려감 - 활동을 다 하지 못한 아동을 다른 반 교사에게 훈육을 보냄
5순위	아동보호 문제	- 대변 본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음 - 머리를 세게 뺨음 - 양치 지도 시 너무 세게 이를 닦아줌 - 세면 시 아동의 얼굴이 뒤로 넘어가는 강도로 닦아 줌
6순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	- 갈등 상황에서 때린 아동을 똑같이 때림 - 자신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아동에 화가나 때리거나 밀침
7순위	안전사고 대처 문제	- 사고 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치료 강행 - 사고 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동을 귀가시킴 - 사고 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2.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결 사례

다음에 제시한 11건의 판결 사례는 법원의 형사판결과 보호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으로 2014년 12월에서 2016년 2월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요약한 「아동학대 판례 100선」(2016년) 중에서 판결문 원본까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아동학대 판결 사례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인 보육교사는 주로 신체체와 정서학대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아동의 학대 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아동이 받는 정서적 어려움도 정서학대로 판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실에서 교사의 영향력이 전체 아동에 이른다는 것을 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중 실형을 받은 사례는 3건(판례1, 2, 8)으로 징역을 받았으며, 기타 판결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회봉사명령, 형의 선고유예, 벌금 등이 나왔다.

또한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자로서의 실질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74조에는 원장이 보육교사의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주의의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양벌규정⁹⁾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례 1] 부모와 사회의 신뢰상실을 초래한 보육교사와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원장 선고 사례					
학대행위자1	보육교사	학대유형	폭행, 신체학대, 정서학대	판결	징역 2년,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 학대피해 아동 행위 ① 울동을 따라하지 못함 (아동 3명) ② 점심을 늦게까지 먹고 김치를 먹지 않음 ③ 옆에서 함께 지켜보던 아동 13명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울동 시 아동이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 바닥으로 밀어 주저앉힘. “울동하는 것을 보지 말라” 하면서 반대쪽으로 보고 있으라고 지시함 • 식판에 남겨놓은 김치를 손가락으로 모아 아동의 입에 강제로 넣었으나, 아동이 손을 입으로 가져가 뱉어내려 하자 왼손으로 아동의 팔을 6회 세게 잡아당기듯이 쳐내고, 식판의 남은 음식을 손가락으로 모아 아동의 입에 강제로 넣음. 아동이 토해내자 화가나 손으로 아동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세게 때려 아동이 바닥에 넘어지게 함. 아동에게 “니가 뱉었으니 니가 치워”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아동으로 하여금 토사물이 떨어진 바닥으로 기어와 손으로 토사물을 집어먹게 함 • 다른 아동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함					
▷ 양형이유 • 피해아동들이 공격적 행동을 보이거나, 불안해하는 등의 모습을 보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진단 됨 • 교사로서 임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신뢰상실을 초래함 •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의 범죄경력이 있음					
학대행위자2	원장	학대유형	-	판결	벌금 500만원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학대행위자가 아동들에게 큰소리를 내고 그로 인해 아동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함					
▷ 양형이유 •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아동들에 대한 중한 범죄가 발생함,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9)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2] 아동에게 큰 상해를 입힌 보육교사와 이를 방조한 원장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1	보육교사	학대유형	신체학대, 폭행, 정서학대	판결	징역 1년 6개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 학대피해 아동 행위 : 말을 잘 듣지 않음 (4명)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일부)					
- 바지를 입지 않고 장난치듯이 걸어가자 양손으로 아이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끌어당긴 뒤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림. 아이를 팽개치듯 바닥에 내려놓은 뒤 양팔 부위를 잡고 빨랫감 털듯이 6회에 걸쳐 강하게 바닥에 내리침. 아이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발 뒤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기저귀를 갈아주다 바닥에 엎드려 기어가던 아이의 발을 손으로 잡고 교사의 몸 쪽으로 세게 잡아 끌어 아이의 몸이 바닥에 쏠리면서도 끌려오도록 하고, 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1회 때림					
▷ 양형이유 : 피고인의 학대행위의 정도와 그 결과가 매우 중함					
학대행위자2	원장	학대유형	-	판결	벌금 500만원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도록 방조함					
▷ 양형이유					
아동 학대행위자인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였고, 피해아동들이 약 6주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하는 등 그 결과도 상당히 중함					

[판례 3] 교사가 초범인 점을 참작한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보육교사	학대유형	신체학대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 학대피해 아동 행위 : 울면서 고집 부림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입 부위를 손바닥으로 4대 때리고 아동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한쪽 구석으로 들어 옮긴 다음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는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밀고, 주저앉은 아동이 발을 동동거리며 울자 아동의 다리부위를 수차례 차고, 약 30분 가량 나오지 못하게 함					
▷ 양형이유 : 보육교사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례 4] 신체학대를 한 보육교사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보육교사	학대유형	신체학대	판결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 학대피해 아동 행위 : 낮잠을 자지 않음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주먹으로 아동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멍이 들게 함					
▷ 양형이유 : 별도 명시하지 않음					

[판례 5] 어린이집 운영을 고려한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1	보육교사	학대유형	신체학대	판결	벌금 200만원
▷ 학대피해 아동 행위 : 낮잠을 자지 않고 친구의 배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손톱자국이 생기게 함					
▷ 양형이유 : 별도 명시하지 않음					
학대행위자2	원장	학대유형	-	판결	선고 유예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도록 함					
▷ 양형이유					
- 이중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원장이 없는 자리에서 교사가 아동의 볼을 꼬집음, 원장이 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한 달 반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학대가 벌어졌음 - 원장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임, 원장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례 6] 벌금형으로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직할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한 선고 사례

학대행위자	보육교사	학대유형	신체학대	판결	벌금 300만원
▷ 학대피해 아동 행위 : 간식을 먹다 뱉음, 이유 없음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입 부위를 강하게 툇툇 치고 턱을 올려침 - 오른손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의 왼쪽 뺨 부위를 세게 밀면서 때림 - 왼쪽 손바닥으로 아이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심하게 밀치고 다시 왼손으로 아이의 왼팔을 힘껏 잡아당김					
▷ 양형이유					
- 벌금형이 확정되면 보육교사가 향후 10년간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점 -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보육교사가 초범인 점 등 참작					

[판례 7] 보육교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선고 사례

학대행위자	보육교사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판결	벌금 200만원
▷ 학대피해 아동 행위 : 나물 반찬을 먹지 않음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이의 입에 손으로 음식을 밀어 넣고, 엎드려 울고 있는 아이의 고개를 들게 하여 손으로 입을 벌려 확인한 다음 손가락으로 음식을 강제로 먹임					
▷ 양형이유					
- 보육교사가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보육교사가 주된 의도가 피해아동에 대한 식습관 교정이었던 점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이전까지 3년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음 -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 어린이집 동료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판례 8] 보육교사와 원장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한 선고 사례

학대행위자1	보육교사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판결	징역 1년 4개월
▷ 학대피해 아동 행위 : 잠을 자지 않음, 알 수 없음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바운서에 눕혀 머리가 아래위로 흔들릴 정도로 바운서를 세게 흔들어 신체적으로 학대함 - 바운서에 아동을 묶은 뒤 분유병을 물린 채 2시간 정도 불이 꺼진 방에 혼자 놓아둠 -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아동의 몸을 잡아끌며 신체적으로 학대함					
▷ 양형이유					
- 보육교사로서의 자질을 현저히 결여한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학대행위자2	원장	학대유형	신체학대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학대피해 아동 행위 : 낮잠을 자지 않음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아동의 얼굴에 담요를 덮음 - 아동을 바운서에 묶는 것을 도와주고 아동에게 분유병을 물린 뒤 방에서 나가 교사가 불이 꺼진 방에 약 1시간 동안 아동을 방치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함					
▷ 양형이유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학대행위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했고, 그 양태도 유아인 아동의 얼굴에 담요를 덮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참작					

[판례 9] 보육교사가 딸과 함께 사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을 참작한 선고 사례

학대행위자	보육교사	학대유형	신체학대	판결	형의 선고유예
▷ 학대피해 아동 행위 : 아동이 예쁘고 통통하다는 것 말고 이유 없음, 밥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침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아동의 양쪽 팔을 입으로 물어 멍들게 함 • 아동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꼬집어 멍들게 함					
▷ 양형이유					
• 피고인이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함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딸과 함께 사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					

[판례 10] 아동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선고 사례

학대행위자1	보육교사	학대유형	신체학대	판결	무죄
▷ 학대피해 아동 행위 : 말을 듣지 않음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아동을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아동의 코 부위를 3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함					
▷ 양형이유 :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음					
학대행위자2	원장	학대유형	-	판결	무죄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도록 함					
▷ 양형이유 : 위와 동일					

[판례11] 보육교사가 초범이며, 정서학대의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한 선고 사례

학대행위자	보육교사	학대유형	정서학대	판결	벌금 150만원
▷ 학대피해 아동 행위 : 다른 원생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함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혼자 화장실에 남겨둔 채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약 10분간 감금함					
▷ 양형이유					
• 피해아동의 부모가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 보육교사는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음 • 보육교사가 초범이며, 정서적 학대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후 피해아동에게 특별한 변화나 징후가 보이지 않음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3.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사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인지되면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조사하거나 피해 아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등도 범죄 사실은 인정되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르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자격취소, 어린이집의 폐쇄와 위반사실 공표 등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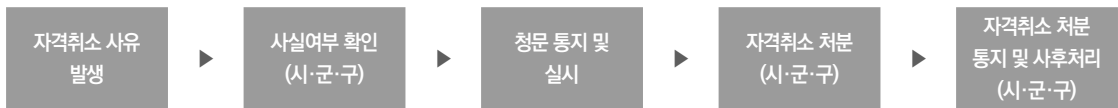
〈표 1-12〉 아동학대 관련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사유

구분	원장, 보육교사
자격정지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취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둘 다 취득한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 취소

*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9 보육사업안내.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와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에는 [그림 1-13]의 절차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이 주어진다.

[그림 1-13]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 취소 절차



또한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위반사실의 공표’에서 위반시설과 위반행위자의 조회가 가능하다. 위반시설의 경우, 어린이집명과 함께 대표자명, 원장명,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이 공표되고,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본인 이름과 법 위반 이력,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의 내용이 자세히 공표된다.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은 누구나 접근가능하다.

[그림 1-14]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위반사실의 공표’



IV

어린이집 하루일과에서의 부적절 행위 사례와 교사의 역할

1.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아야 할 부적절 행위

앞에서 살펴본 아동학대의 개념에서 아동학대는 ‘child abuse’ 혹은 ‘maltreatment’를 번역한 용어라고 하였다. ‘maltreatment’는 ‘child abuse’를 포괄한 것으로 아동학대, 부적절 행위, 혹은 부당 행위라고 번역할 수 있다. 즉 ‘부적절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부터 부적절한 훈육행위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용어이다. 사소한 부적절 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이 반복될 경우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경계심이 줄어들어 본인도 모르게 아동학대 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어린이집 관리자는 평소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지도가 부적절하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지도방식에 부적절한 소지가 없는지 자기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근래 OECD국가에서는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영유아기관)의 종사자가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신입종사자 오리엔테이션, 관리자의 모니터링, 종사자 재교육 등에 사용하고 있다.

〈표 1-13〉 보육교직원이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금지 목록의 예¹⁰⁾

영유아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금지 목록	신체나 도구(자 등)로 영유아를 위협하거나 때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영유아를 향해 물건 등의 물체를 던지지 않는다.
	강압적으로 아동을 끌어당기거나 앉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영유아 훈육 시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금지 목록	훈육 시 화장실이나 교구·교재실 등에 아이를 혼자 있도록 하지 않는다.
	지도 시에 영아의 손목 및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가한 압력을 주지 않는다.
	영유아가 그대로 당해 보게 하는 반복성 행동을 하지 않는다(너도 꼬집혀 볼래?).
	cctv 사각지대로 영유아를 데리고 가서 훈육을 하지 않는다.
영유아의 기본생활요구 지원 시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금지 목록	오염된 기저귀, 젖은 옷 등 영유아의 기본생활요구를 방치하지 않는다.
	영유아를 위협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하지 않는다.
	영유아의 의사표현(울 때, 아플 때 등) 및 요구를 모른 척 방치하지 않는다.
	영유아에게 먹기 싫은 음식을 다 먹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영유아 존중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금지 목록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껴도 절대 이를 영유아에게 나타내지 않는다.
	영유아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한 채 교사의 기분, 감정으로 다그치지 않는다.
	영유아의 이름이 아닌 “애, 아, 너” 라는 호칭을 삼간다.
	영유아를 비교하며 조롱하거나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지 않는다.

* 출처: 이완정(2018).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당행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p.97). 한국아동권리학회.

10) 이 목록은 이완정(2018)의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이는 우리나라 보육교사들에 의해 직접 도출된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도출하기 위해 첫째, 국내외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둘째, 어린이집 보육교사 초점집단 예비조사를 거쳐 목록을 구성하였으며,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보육교사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에 문항별로 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무게 값에 따른 순서대로 최종 목록을 도출하였다.

2. 하루일과에서의 연령별 부적절 행위 사례와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

다음의 내용은 어린이집 하루일과의 여러 상황 속에서 각 연령을 담당한 보육교사가 행하는 부적절 행위와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것이다. 일과 중에 무심코 하는 보육교사의 말과 행동이 영유아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해칠 수 있고, 반대로 적절한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제시된 내용이 정답은 아니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방법을 찾는 하나의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1) 만 0~1세

(1) 발달특성

<만0세>

- 배밀이나 무릎을 세우고 기어 다닐 수 있다. 때로는 기는 단계를 건너뛰고 잡고 일어서서 걷는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조각을 집으려 하거나 잡을 수 있다.
- 움직이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따라다닌다.
- 감정이 풍부해지면서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프고 무섭고 화가 나는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관심을 끌기 위해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 12개월 전후 혼자 걷기 시작하며 이후 도움을 받아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다.

<만1세>

- ‘엄마’, ‘아빠’, ‘맘마’ 등 2~3개 단어를 말할 수 있다.
- 한 단어를 사용하며, 두 단어를 사용해 불완전한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짜증이나 화를 내거나, 밀거나, 꼬집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개별 발달특성에 따라 배변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다.
- 내적 표상으로 자연모방이 가능해진다.

(2) 만 0-1세 담당 교사의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역할

1. 등원 및 맞이하기	
상황	등원 시, 영아가 엄마와 헤어지기 힘들어 하는 경우
부적절 행위	“이러면 안 되지? 씩씩하게 헤어져야 착한 친구지? 엄마 가시는데 속상해 해서, 울면 안 되지. 이렇게 울면 미운 사귀는 돼요.”
바람직한 상호작용	“사랑하는 우리 ○○. 이리 오렴. 선생님께 안아 줄까? (영아를 안아준다) 우리 ○○이가 왜 울까? 엄마와 헤어지기가 힘든? 선생님과 재미있게 놀고 싶으면 엄마가 데리러 오실 거야. 선생님과 어떤 놀이할까?” “(가족사진이나 애착물건을 보여주며) 엄마가 어디 계실까? 엄마가 여기 있네. (새로운 놀이감을 제공하며) 이건 뭐지? 손님이 나네.”
교사의 역할	• 부모와 함께 있고 싶은 영아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등 스킨십을 하고 이를 통해 교사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다. • 영아의 분리불안은 발달특성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등원 시 영아가 부모와 헤어지기 싫어하고 불안해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영아가 부모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울거나 부모를 찾는 경우, 영아의 관심을 끝만한 놀이감을 제시하며 주의를 환기시킨다.

2. 자유놀이

상황	○○이 쌓기놀이영역에서 종이블록 자동차를 만들어 놀이할 때, □□이 와서 만들어 놓은 종이블록 자동차에 앉으려 하거나 종이블록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경우
부적절 행위	“친구가 만든 자동차잖아. 네가 가지고 가면 어떡하니? 자동차가 망가졌잖아.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바람직한 상호작용	(1) “□□아, 왜 ○○이가 만든 자동차에 앉았니? 이렇게 자동차에 앉으면 ○○이 마음이 어떨까? 같이 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우리 ‘같이 놀자’라고 말하면 되겠다.” “○○아, □□이가 네가 만든 자동차가 정말 멋있네. 같이 놀고 싶다고 하네. ○○이는 어떻게 하고 싶니?” (2) “□□이도 종이블록이 필요했구나. 그런데 ○○이가 만든 블록을 그냥 가져가면 ○○이 마음이 어떨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교사의 역할	• 이 시기의 영아는 어린이집 놀잇감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함께 나누어 놀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 영아의 흥미와 개별 차이를 인정하며 교사가 놀잇감을 나누어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영아의 의견을 듣고 선택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영아의 발달특성을 이해하여 동일한 놀잇감을 여러 개 준비한다.

3. 정리정돈

상황	자유놀이 이후 정리정돈 시간임을 알려주었음에도 계속 놀이를 지속하는 경우(예: 음식모형 자르기 놀이를 계속하고자 함)
부적절 행위	“○○은 또 정리 안하는구나. 선생님 말 안 듣니? 선생님을 쳐다보지도 않네. 안 들리니? ○○가 놀았어 ○○가 다 정리해야지. 정리 안하면 바깥놀이 못 나가란다.”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선생님하고 정리할까? 사라 놀이감은 어디에 놓아둘까? 와! ○○이가 바구니를 찾았네. 우리 ○○이가 정리를 잘하구나.”
교사의 역할	• 영아의 놀이 진행 상태를 관찰하여 정리정돈 시간을 갖도록 하되 사전에 안내하고 다른 일과로 전환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 놀잇감을 영아 혼자 정리하는 것은 아직 어려우므로 교사가 함께 정리한다. • 정리시간을 놀이의 연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의 모델링을 통해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한다.

4. 점심시간

상황	점심시간에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자 손으로 먼저 먹는 경우
부적절 행위	손등을 치며 혹은 화를 내며 “손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포크로 먹어야지.”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우리 포크로 먹어볼까? 두부를 손으로 만지면 손에 묻는단다. 선생님과 함께 포크를 사용해 보자~ (포크를 든 영아의 손을 맞잡고) ○○가 좋아하는 두부를 포크로 꼭 찍어서 먹으니 더 맛있겠네?”
교사의 역할	• 영아의 손등을 치는 것은 신체학대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영아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영아기는 아직 도구(손가락, 포크 등)의 사용이 미숙한 시기임을 인정한다. 손가락과 포크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므로 도구를 잡고, 음식을 뜨고, 입으로 가져가는 등의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며 단계적으로 설명해 준다.

5. 기저귀 같이	
상황	기저귀 같이 후 바로 배변을 한 경우
부적절 행위	“또 응가 했니? 어휴, 왜 매번 기저귀 갈아주면 응가를 하는 거냐? 꼭상해.”
바람직한 상호작용	“(눈을 맞추며) 우리 ○○이가 응가를 했네. 잘했어. 우리 ○○이는 밥도 맛있게 잘 먹고 응가도 잘하니 쑥쑥 크겠다. 선생님이 깨끗하게 닦아줄게~ 뽀뽀새 기저귀를 갈아입자~”
교사의 역할	• 배변을 자주 한다고 하여 영아를 야단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영아에게 수치심을 유발하여 지나치게 움츠리게 할 수 있다. • 영아 발달에 있어 배변의 횟수, 양, 상태 등은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리적인 수단이므로 교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6. 낮잠시간	
상황	낮잠시간에 영아가 잠을 안 자고 있는 경우
부적절 행위	“얼른 자야지! 경찰아저씨한테 ○○이 장마가 가세요 전화해야겠다!”
바람직한 상호작용	“○○이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누워볼까? 선생님이 ○○이 곱들이 이불 덮어줄게요. 노래 소리가 들리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자. 선생님이 툇툇툇 해줄게.”
교사의 역할	• 영아에게는 집이 아닌 공간(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낮잠을 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이해한다. • 영아의 발달 단계 및 개별 욕구에 따라 낮잠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만 0세아는 낮잠에 대한 개별 요구를 반영하도록 한다. • 하루일과 중 바깥놀이나 대근육 활동시간을 마련하여 숙면에 도움을 준다. • 부모와 영아의 건강상태와 전 날의 숙면여부, 잠잘 때 습관 등 개별적인 성향을 파악한다.

2) 만 2세

(1) 발달특성

- 숟가락이나 컵을 사용하여 혼자서 음식 먹는 게 가능하다.
- 2~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의 짧은 문장을 구사한다.
-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질문을 많이 한다.
- 큰소리로 말하면 때렸다고 하거나(과잉확대), 우리 집 고양이만 고양이라고(과잉축소) 하는 경향이 있다.
- 자신의 정서와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느낌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으며,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
- 자신의 장난감, 옷, 부모 등에 강한 소유욕을 나타내며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영아와 놀잇감을 나누어 쓰기 어렵다.

(2) 만 2세 담당 교사의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역할

1. 등원 및 맞이하기	
상황	등원하여 외투와 가방을 정리하지 않고 보육실 바깥에 서서 친구들과 교사를 쳐다만 보고 있을 때(교사가 들어오라고 이야기한 후에도)
부적절 행위	“○○이 안 들어오니? 바깥리 교실로 들어다. 아직 혼자 옷도 못 벗었니? 네가 스스로 해야지. 이제 너는 아기가 아니야. 선생님이 해줄게 이리다. 왜 안하는 거야? ○○이는 놀이하고 싶지 않은가 봐.”
바람직한 상호작용	“○○이 왔니? ○○이가 무엇을 보고 있을까? 볼록볼이 하는 친구를 보고 있네. 우리도 볼록볼이 하러 갈까? 그럼 먼저 외투도 걸어놓고 가방도 넣어보자. 아~ ○○이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잘 안되겠구나. 선생님과 함께 해 볼까?” “(옷 벗고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며) 그렇지. 우리 ○○이 옷도 혼자 벗고 정리도 잘 하네. 우리 이제 볼록볼이 할까?”
교사의 역할	- 만 2세는 간단한 옷이나 모자를 혼자서 입고 쓸 수는 있지만 손과 눈의 협응력이 아직 정교하지는 않다. - 영아 스스로 옷을 벗고 소지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교사가 모델링을 통해 방법을 알려준다. 혼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격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가 도와준다.

2. 자유놀이	
상황	역할놀이영역에서 다른 친구가 놀고 있는 놀잇감(소꿉놀이소품 등)을 그냥 가져가는 경우
부적절 행위	“친구 놀잇감을 빼앗아가면 어떻게하니? 친구가 울잖아.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친구를 울리면 나쁜 친구예요. 여기 다른 가방도 많은데 왜 가져 간 거야. ○○이는 소꿉놀이 못하겠다.”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왜 □□의 놀잇감을 가져갔니? 친구의 마음이 어떻게? 놀고 싶으면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할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음에도 놀잇감이 필요하면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교사의 역할	- 만 2세는 자기중심적이며 자아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에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행동부터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안다. - 교사는 언어적 피드백을 통해 영아가 처한 상황이나 기분, 태도에 따른 다양한 정서를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놀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3. 바깥놀이	
상황	겨울에 외투를 입지 않고 바깥놀이를 한다고 이야기하며,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을 때 ‘싫어’라고 말하는 경우
부적절 행위	“그럼 넌 교실에 있어. 선생님이 얼른 옷 입으라고 했지? 우리 먼저 나갈 거야. ○○이는 교실에서 더 놀아. 지금 외투를 입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 날씨가 추워서 옷을 안 입으면 감기에 걸리거든. 그럼 ○○이는 옷주머니를 맞춰서 병원에 가야한다.”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우리 외투 입고 바깥에 나가자. ○○이가 왜 옷을 입기 싫을까? (이유를 듣고) 그래, 옷이 불편했구나. 바깥 날씨가 어떤가 볼까?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봐~ 어떠니? 걸음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맞아, 콧물이 날 수도 있어. 바깥이 못 들어오게 단추도 꼭꼭 잠가볼까? 바깥놀이 가서 오늘 무슨 놀이 할까?”
교사의 역할	- 영아가 ‘싫어’라고 반응하면 잠시 기다리거나 다시 상황을 설명해 준다. ‘싫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앞, 뒤 맥락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장 먼저 입고 싶었는데, 혹은 실내에서 더 놀고 싶은데, 무언가에 화가 났다는 표현일 수 있으므로 감정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준다. -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4. 정리정돈

상황	친구들이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해서 놀이하며 정리하지 않는 경우
부적절 행위	“다른 친구들은 모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너만 놀고 있니? 놀잇감을 제자리에 놓지 않으면 놀잇감이 너를 미워 할 거야. 네가 놀이한 것은 방구니에 넣어야지. 뭐하고 있니?”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지금은 놀잇감 정리시간인데, 뭐하고 있잖아? 놀잇감 정리하고 맛있는 점심먹자.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해 볼까? 이 놀잇감은 어디에 넣어야 하지? 그래~ ○○이가 잘 알고 있네. 방구니에 담아 볼까? 와~ 우리 ○○이가 정리를 잘 하구나.”
교사의 역할	• 아직 스스로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므로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함께 정리한다. 영아가 제자리에 놀잇감을 가져다두거나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칭찬을 통해 영아를 격려한다.

5. 점심시간

상황	점심시간에 계속 옆 친구를 안거나 만지고, 두 팔로 기대어 눕듯이 앉아있는 등 바르지 않은 자세로 식사를 할 때
부적절 행위	“ (교사가 손으로 영아의 등을 밀며) 똑바로 앉아서 빨리 먹어야지. 자꾸 그러면 밥 먹을 수 없어. 또 그렇게 앉아서 먹는 거야? 똑바로 앉지 못해? 바르게 앉지 않으면 정리할거야.”
바람직한 상호작용	“ (교사가 옆에 앉으면서) ○○아, 우리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볼까? 친구에게 기대면 음식을 흘릴 수 있어. 우리 ○○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가 있네. 책상 앞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자. 선생님이 도와줄까? 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으니까 음식도 안 흘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네.”
교사의 역할	• 점심시간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바르게 앉는 방법을 이야기하거나 교사가 바른 자세를 보여준다. 거칠거나 강압적인 목소리는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영아가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등 두려움만 가질 수 있다. • 영아의 시야에서 놀잇감을 치운다든지, 책상의 구조와 앉는 자리의 조절을 통하여 식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 식재료에 관련된 이야기나 어린이집, 가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과 대화를 통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손 씻기

상황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물장난을 하는 경우(거울이나 친구에게 물을 뿌리고, 수도꼭지 입구를 막고 있거나 계속 물을 틀어놓고 있는 경우)
부적절 행위	“누가 물장난하라고 했니? 또 젖었네. 어떻게 할 거야, 응! 너 또 물장난 해? 빨리 손 씻고 나와야지. 네가 물장난만 하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손을 씻을 수 없잖니.”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손 씻었니? 계속 물놀이하고 있었구나. 화장실에서 물장난하면 옷이 젖을 수 있고 친구가 많이 기다려서 속상할 수도 있어. 물놀이는 다음에 바깥놀이 시간에 하자. 지금은 손을 깨끗이 씻어볼까? 먼저 옷소매를 팔꿈치까지 올려보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이제 바누를 문히고 손을 비벼볼까? 물로 헹구니까 바누거품이 없어지네. 수건에 물기를 닦아보자. 와~ 우리 ○○이의 손이 깨끗해졌네.”
교사의 역할	• 바른 손 씻기의 모습을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바르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돕는다. • 물놀이는 영아에게 매력적이므로 바깥놀이 시간에 물놀이 관련 활동을 진행하며, 손 씻는 것이 즐거운 활동이 되도록 지도한다.

7. 낮잠시간

상황	낮잠시간 중에 깨어 노래를 부르거나 자고 있는 친구를 만지고, 바닥을 쿵쿵 쳐서 다른 친구의 낮잠까지 방해하는 경우
부적절 행위	“지금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잘 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자지 않고 있으면 도깨비 아저씨 불러 올 거야. 무서운 도깨비에게 잡아가게 할 거다. 안 잘 거면 이불 정리해야겠다.”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잘 잤니? 일어날까? 아넌 좀 더 누워있어도 돼. 아직 친구가 자고 있으니까 크게 이야기하거나 만지면 친구가 잠에서 깰 수도 있단다. 이쪽으로 와서 조용히 놀이 할까? 조용한 놀이하면서 친구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자.”
교사의 역할	• 낮잠에서 깨는 즉시 영아의 기분과 상태를 관찰하여 낮잠이 더 필요한지, 잘 자고 일어난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이 더 필요한 경우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하고, 잠이 깬 경우에는 다른 영아의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한 놀이를 한다. • 만2세도 아직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 두려울 수 있으므로 영아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한다. • ‘도깨비’ 등 영아가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억박지르는 것은 정서학대가 될 수 있다.

8. 귀가지도

상황	하원 시, 어린이집의 공룡 놀잇감을 집에 가져 가려고 울면서 떼를 쓰는 경우
부적절 행위	“어린이집 놀잇감을 가져가면 나쁜 사람이에요. 안 돼. 여기에 놓고 가야지. 이건 나쁜 행동이야. 제자리에 놓고 오세요.”
바람직한 상호작용	“공룡 놀잇감을 집에 가져가고 싶었니? 하지만 이 놀잇감의 집은 여기 어린이집이란다. ○○이도 집에 못가면 속상하지? 이 놀잇감도 집을 떠나면 속상하대. 어린이집에 잘 두고 내일 다시 만나볼 것은 어떨까?”
교사의 역할	• 울고 떼쓰는 행동을 보일 때는 영아의 마음을 공감해주되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은화하게 설명해야 한다. • 아이의 손에서 물건을 뺏은 것은 적합하지 못하며, 영아와 힘겨루기를 통해 강제로 놀잇감을 두고 가기보다는 설명을 통해 설득한다.

3) 만 3세

(1) 발달특성

- 기본적인 운동기능이 확립되며 숟가락, 포크 사용이 능숙해져 밥과 국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
- 자기주장이 뚜렷해지고 요구도 커지며 질투심이 강해진다. 울음횟수가 줄고 우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 스스로 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아진다. 몸이 피곤하거나 통제를 받으면 화를 잘 내는 경향을 보인다.
- 차례 지키기가 점차 가능해지고 간단한 규칙, 타인의 요구를 지킬 수 있다.
- 성인과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고, 성인의 칭찬과 승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2~3명이 상호작용하는 소집단의 놀이가 가능해지고, 성별의 구별 없이 또래와 놀이하지만 점차 동성 또래에 대한 접근이 빈번해진다.

(2) 만 3세 담당 교사의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역할

1. 등원 및 맞이하기	
상황	등원하면서 가져 온 팔찌를 보여주고 싶어서 교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
부적절 행위	“선생님이 지금 바쁜 거 아니냐? 간식 챙기느라 정리하느라 바빠잖아. 알았어, 빨리 돌려라. 집에서 물건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
바람직한 상호작용	“(반갑게 인사한 후) ○○이가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나? 선생님도 정말 궁금한데, 지금은 친구들이 오는 시간이든 잠깐만 기다려줄래? 친구들 맞이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기다려줘서 고맙워.” “팔찌를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지금은 선생님이 간식을 나눠주고 있어서 가방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네. 간식 먹고 조금 후에 같이 보면 어떨까?”
교사의 역할	- 유아의 마음을 인정해 주되, 현재 바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준다. - 유아가 교사를 기다려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한다.

2. 자유선택활동	
상황	미술영역에서 친구들과 색종이 접기를 하는데 간단한 접기를 하지 못하여, 선생님한테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울면서 보채는 경우
부적절 행위	“다른 친구들은 혼자서도 잘하는데, 넌 이것도 못하? 얼마나 알려주야 할 수 있는 거냐? 어려워면 하지 마. 잘하는 □□한테 해달라고 해. 그렇게 장장대면 더 해줄기 싫어.”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무엇을 접고 싶나? □□이처럼 세모를 접고 싶어? 그런데 잘 안 되구나.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줄까? (함께 색종이 접기를 하며) 라~ ○○이도 혼자 세모를 접었네. 그래 이 끝을 잡고 위 끝에 맞추면 되겠다. 이제 ○○이도 색종이 접기 잘하네.”
교사의 역할	- 유아가 교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 지지해주며, 작은 것부터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 유아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을 인정해주고,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방법을 제시한다.

3. 정리정돈	
상황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유아가 교사의 말을 듣고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색종이까지 더 꺼내려고 할 때
부적절 행위	“친구들은 다 정리하는데 너만 뭐하니? 태 놓고 있는 거야? 우리 먼저 나가다. 네 살 동생들도 정리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종이접기를 더 하고 싶나? 그런데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다. 오늘은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려고 (공을 보여주며) 선생님이 이렇게 공을 준비했어.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보을까? 우리 정리하고 공놀이하려고 바깥에 나가자. 종이접기는 오후에 계속 하면 어떨까?”
교사의 역할	- 유아가 놀이를 끝내고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된 하루 일과를 미리 알려준다. 특히 정리시간을 갑자기 알려주면 유아의 놀이 흐름이 끊어지므로 음악 등으로 유아가 미리 정리시간을 예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만 3세이지만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므로 시간이 되면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는 규칙을 반복해서 알려준다.

4. 대·소집단활동

상황	봄소풍을 가기 전 나비 동화를 들려주고 있는데 유아가 부모님과 여행 등에서 경험한 나비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이어갈 때
부적절 행위	“선생님 동화 다 읽어주면 이야기라고 몇 번 말했어? 너만 이야기하고 싶은 줄 아니? 좀 기다려봐. 너 때문에 선생님도 동화를 들려 줄 수가 없잖아?”
바람직한 상호작용	“○○이가 나비를 본 적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은 ‘나비 동화’를 듣고 있니까 다 듣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나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친구들이 궁금해 하네.” (동화가 끝난 후) ○○아,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이 나비 이야기를 들어볼까?”
교사의 역할	- 대집단활동은 전체 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므로 한 명의 유아만 이야기를 하거나, 전체 활동의 흐름이 끊어져서 다른 유아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유아가 알고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음을 이해하고 대집단활동을 고려하면서도 개별 유아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5. 점심시간

상황	‘고기’ 등 특정 음식 위주로 먹고 ‘야채’ 등은 전혀 먹지 않는 등 편식을 하는 경우
부적절 행위	“○○이는 고기만 먹네? 야채는 하나도 안 먹었네. 그러면서 고기를 더 달라고 하니? 안 돼. 야채가 얼마나 몸에 좋는데 먹지 않네. 그렇지 애들아~ 야채 다 안 먹으면 바깥놀이 못 나간다.”
바람직한 상호작용	“○○이가 고기를 잘 먹구나. 시금치는 먹기 싫어? 고기만 먹으면 영양도 잘 안 나오고 배도 아플 수 있어. 오늘은 시금치를 조금만 먹어볼까? 선생님이 먼저 먹어보고 이야기해 줄게. 타~ 고소하다. ○○이는 어떻게 할래? (조금 먹은 후) 타~ ○○이가 시금치를 먹었네.”
교사의 역할	- 누구나 선호하거나 싫어하는 음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유아의 편식지도를 위해 음식을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 편식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먹도록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시도’하려는 자세에 대해 칭찬을 해 주며, 심하게 거부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억지로 먹이지 않고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식사지도를 한다. - 오늘 나온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6. 이 닦기

상황	이 닦는 시간에 양치컵으로 물을 받아 바닥에 뿌리거나 거울에 계속 물을 뿜으며 옷을 적시는 등 장난을 치는 경우
부적절 행위	“이거처럼 물놀이 하는 친구네. 지금이 물놀이하는 시간이야? 이 닦는 시간인 걸 모르는 친구들은 동생반에 가야겠어. 선생님 말을 안 듣네? 지금 바스 다 더러워졌잖아.”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이틀 닦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지. 양치컵은 양치를 할 때 쓰는 거지? 잘 알고 있네. 지금은 이 닦는 시간이니까 우리 깨끗이 이틀 닦아 볼까?” “물장난을 치면 옷이랑 양말이 젖고, 그러면 걸리에 걸릴 수도 있어.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물이 튀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단다. 바닥에 물이 떨어져서 미끄러워지면 ○○이가 다칠 수도 있어.”
교사의 역할	- 교사가 모델링을 보이며, 유아가 바르게 양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만 3세는 알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규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지도한다.

7. 낮잠시간	
상황	잠을 잔다고 누운 후, 손과 발로 바닥을 치며 입으로 소리를 내고 친구에게 말을 걸어 잠을 깨우려 하는 경우
부적절 행위	“지금 안 자고 있다가 늦게 잠들어서 깨울 때 안 일어나려고 그러지? 빨리 자라. 좋은 말 할 때~ 언제까지 떠들 거야?”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잠이 안 오나? 우리 음악을 틀어줘서 쉬어 볼까? 지금 쉬고 나면 오후에 힘이 나서 더 신나게 놀 수 있을 거야. 누워 있기 싫으면 조용하게 놀아볼 수도 있어. 친구들이 자고 있으니까 우리 조용히 놀아보자.”
교사의 역할	- 무조건 낮잠 자는 것을 강요하기 보다 휴식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만 3세 유아는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억지로 재우는 것보다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낮잠을 자는 친구를 배려하여 조용히 쉬거나 놀이할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4) 만 4-5세

(1) 발달특성

- 약간 복잡한 운동이 가능해진다. 밥 먹기, 세수하기, 옷 갈아입기, 신발 신기 등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점점 혼자 단추를 채우고 옷을 입을 수 있다.
- 왕성한 지적 호기심으로 질문이 많아지며, 특히 단어의 의미나 정보를 모으기 위한 질문을 한다.
- 다른 사람들과 능숙하게 대화하고 문법에 맞는 말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말할 수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언어에서 점차 사회화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가는 시기이나 아직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점차 협동하기, 양보하기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
- 자신도 어른처럼 독립적인 인간으로 대해줄 때 즐거움을 표현하며, 자신의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2) 만 4-5세 담당 교사의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역할

1. 등원 및 맞이하기	
상황	자신의 가방, 옷, 수첩 등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부적절 행위	“언제까지 정리할 거냐? 같이 온 친구들은 다 정리했는데 뭐했냐? 정리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냐?”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아직 정리 중이냐? 선생님이 도와줄게 있잖아?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렴. 친구들이 ○○아 불러놓고 있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네.”
교사의 역할	• 만 4-5세라 하더라도 기질적으로 느린 아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와주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인지도 살펴본다.

2. 자유선택활동

상황	쌓기놀이영역에서 자동차 모형을 서로 갖고 놀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는 경우
부적절 행위	“자꾸 싸우면 동생한테 줄 거야. 아예 선생님이 가져 갈 거야. 다른 거 가지고 놀면 안 되지? 왜 꼭 같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니? 그럼 둘 다 못 놀게 할 거야.”
바람직한 상호작용	“(다투고 있다면 잠시 떨어지게 한 후) ○○아 □□, 잠시만 선생님과 얘기할까? 둘이 왜 다투고 있었니? (이야기를 들은 후) 서로 같은 놀이감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아의 생각을 듣고) 그런 방법도 있구나. ○○아 □□가 생각한 방법으로 놀이해 볼까? 그럼 사이좋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네. ○○아 □□가 멋진 방법을 생각했구나.”
교사의 역할	• 유아들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규칙을 정하도록 기회를 주고, 함께 생각한 놀이규칙에 대해 격려한다. • 싸움을 먼저 시작하거나 싸움으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이러한 태도를 무시하기 보다는 유아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하면서 해결방안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이 시기 유아의 경우 또래관계가 형성되고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므로 분쟁상황에 대한 모델링을 보이고, 스스로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3. 정리정돈

상황	정리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쌓기놀이영역에서 계속 블록 끼우기를 하다가 정리하자고 하자, 블록을 던지는 경우
부적절 행위	“정리 안하고 친구에게 블록을 던지면 어떻게 해! 정리하라고 했더니 친구들 방해만 하고 있는 거야? 정리 안하는 사람은 다음 활동은 하지 마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해도 블록을 던지면 안 된단다. 블록에 맞아 친구가 다칠 수도 있고, 블록이 망가질 수도 있어.” “○○아, 정리시간인데 계속 블록놀이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들은 후) 그래,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럼 오후에 놀이해 볼까? ○○이 생각은 어떠니?”
교사의 역할	• 물건이나 놀잇감을 던지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경우, 친구들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망신을 주는 등의 야단을 치면 오히려 수치심이나 분노 등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유아에 따라 정리시간임을 인지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완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해 주도록 한다. 유아의 개별 요구를 인정하고 친절하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대·소집단활동

상황	안전교육 관련 대집단활동 시, 자신이 재미있게 보았던 광고의 내용을 계속 따라하거나 지속적으로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면서 장난을 치는 유아가 있는 경우
부적절 행위	“야,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할 거야? 지금 얘기하는 시간 아니잖아. 이상한 소리하려면 밖에 나가서 해. 수업 방해하지 말고. 장난 그만치고, 조용히 해. 떠들지 마세요. 너 때문에 방해되잖아.”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게 어떨까? 지금은 친구들과 교통신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이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 힘들네. 교통신전에 대해 이야기를 끝내고,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놀이할 때 해 주면 어떨까?”
교사의 역할	•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대집단활동 등 전체 유아가 참여하는 시간에는 활동의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 후, 이후 개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 교사는 유아에게 ‘너, 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유아들에게 명령이나 지시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유아가 전체적으로 대집단활동에 흥미가 없다면 대집단활동의 주제, 내용, 방법을 전환하고 유아가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5. 점심시간

상황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오전에 배운 새노래를 계속 부르며, 친구들에게도 부르라고 강요하며 장난을 치는 경우
부적절 행위	“너 아가야? 지금이 뭐하는 시간인지 모르니? 밥 안 먹으면 차를 거야. 선생님이 아가처럼 먹여줘야겠니? 밥 다 먹을 때까지 노래 부르지 마! 지금은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야! 지금 친구들은 ○○의 노래를 별로 안 듣고 싶어 하거든.”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밥 먹고 있니? 점심시간인데 밥을 먹지 않고 노래를 계속 부르면 식사시간이 지나가 버린단다. 또 밥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면 입 속의 음식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점심 먼저 먹고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교사의 역할	• 유아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친구들과 음식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 먹어볼 수 있도록 배려한다. 단, 음식물이 입안에 남아있는 경우 음식물을 삼킨 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식사 예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눈다. • 만 4-5세는 식사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므로 식사를 끝내고 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눈다. • 친구들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며 적당한 이야기를 허용하고 밥 먹는 속도에 집중하기보다 개별 차이를 인정한다.

6. 화장실 가기

상황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복도에서 밖에 있는 작품을 보거나 서로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는 유아가 있는 경우
부적절 행위	“○○은 화장실을 간다고 해 놓고 지금 복도에서 놀고 있는 거니? 여기가 화장실이니? 도대체 화장실은 언제 다녀올 거야? 지금 선생님한테 거짓말 한 거니? 그걸 거면 화장실 가지 마.”
바람직한 상호작용	“○○아!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지 않았니? 화장실은 다녀온 거야? 선생님은 ○○이가 교실에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했단다.” “복도에서 뛰어 다니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과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단다. 복도에서는 어떻게 다녀야 할까?”
교사의 역할	• 유아가 교사에게 말한 것은 지키도록 이야기하고(화장실 다녀오겠다는 이야기 등), 어린이집 공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예절을 이야기 나눈다. • 만 4-5세라 하더라도 항상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므로 기회가 될 때마다 환기를 시켜주고, 무엇보다 안전에 위험이 있음을 알려준다. • 유아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유아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네가 다칠까봐 걱정되었다’ 등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7. 바깥놀이 및 견학

상황	견학 시, 유아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 교사에게 말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동하는 경우
부적절 행위	“자, 앞 친구 보고 줄 맞춰서 가마지. 한 줄 기차 못하는 친구는 아기 반에 가마겠네.”
바람직한 상호작용	“○○이가 보고 싶은 것이 많구나? 그런데 순서를 지키면 더 많이 안전하게 볼 수 있단다. 천천히 봐도 된단다. 기다려 줄게. 다른 어린이집 친구들도 있네까 우리 차례를 지키도록 하자.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 선생님과 친구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단다.”
교사의 역할	• 외부로 견학 등을 갈 경우에는 유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안전을 위한 규칙 등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특히 외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견학 장소(박물관, 소풍 장소 등)에서는 유아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사는 항상 전체 유아의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3. 부적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의 기본자세

위에서 살펴본 어린이집 하루일과 사례는 잠재적 위험환경으로 볼 수 있는 방임과 정서적 부적절 행위 예시가 다수 등장한다. 부적절 행위 예시는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어린이집 현장에서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도 있다.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교사 역할 부분은 일부 예시로서, 어린이집에서 상황에 따라 더 적절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보육교사는 전문가이다. 부드러운 표정과 미소를 보이며, 아동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이 접촉과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아동은 신체 접촉에 기초한 보살핌을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교사는 아동이 전하는 의도를 잘 듣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육교사는 여러 아동을 보육하기 때문에 하루일과에 쫓겨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개별 아동과 상호작용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의 경청기술을 적용하는 노력을 해보자.

▶ 침묵, 소극적인 경청

교사가 말을 많이 하면 아동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조용히 들어주며 ‘네 느낌이 어떨지 듣고 싶다’, ‘네 느낌을 받아줄 수 있다’, ‘네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네가 결정할 수 있도록 너를 지지한다’, ‘너는 잘 해 나갈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 인식 또는 인정하는 반응

아동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다가가 듣는다든지, 미소 짓기, 표정을 짓는 등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다. “아아~”, “음~”, “그랬는데” 와 같이 언어적인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그래, 정말? 그렇구나.”와 같이 맞장구를 쳐주면 아동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 말문 열기 또는 격려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럴 때 격려가 필요하다. 말문을 열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니?”, “그것에 대해 듣고 싶구나”, “좀 더 이야기해 주겠니?”, “그것에 대해 뭔가 느끼는 것이 있는 거 같은데”, “네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구나”와 같은 식으로 격려해 준다. 자신의 이야기에 교사가 격려하고 있음을 아동이 알 수 있도록 한다.

▶ 반영적 경청

아동이 무엇을 느끼고 기분이 어떨지 교사가 알아주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받는다. 이는 아동이 보낸 메시지 의미를 새로운 표현으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자신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언제 점심 먹어요?”라는 것은 “배가 많이 고프 모양이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여 숨은 의미를 끄집어내어 확인해 주는 것은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아동의 문제에 대해 교사가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이야기해 준다. 이와 같은 방법은 처벌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하고 상호존중의 기초 하에 아동을 교사와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구분	예시
네가 ... 하면 (영유아의 행동서술)	네가 견학 와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나는 라고 느낀다 (나의 느낌서술)	선생님은 굉장히 걱정된다.
왜냐하면..... (결과 서술)	왜냐하면 널 잃어버리고 네가 선생님을 찾아 헤맬 수 있거든.

참고문헌

- 경기 Wifi(2018).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시스템, 무엇이 문제일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아름, 박은영, 김재선(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박선권(2018).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NARS현안분석 vol.4. 국회입법 조사처.
- 보건복지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효율적 운영위한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연구.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심층 분석.
- 송길연 등 역(2014).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스토리.
- 이완정(2018).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당행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p.97). 한국아동권리학회.
- 정미영(2017). 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이 아동학대를 매개로 하여 아동학대신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고은 역(2017). 긍정적 훈육:0~3세편, 4~7세편. 서울: 에듀니티.
- EBS다큐시선 - 아동학대의 늪, 대물림(2018).
- 정옥분, 정순화(2016). 부모교육 서울:학지사.
- 관계부처 합동(201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의결안건(제 5-1호).
- 전병주, 최은영(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판례에서의 양벌규정 적용과 시사점. 치안정책연구, 제3권 제1호 pp. 119-150.

제2장

성폭력·실종 예방

I

성폭력 예방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는 아동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을 성적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성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임상적으로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 성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지적장애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 아동에게 불법 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 아동에게 불법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성폭력의 예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
- 몸의 중요한 부위들, 성기나 가슴 그리고 엉덩이나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 등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거나 빠는 것
- 성기나 가슴과 같은 중요한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느낌을 받는 행동
-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
-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신체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이나 놀리는 행동
- 야한 사진이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
- 강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지적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행동
- 아동이 스스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거나 행동을 함께하는 것

2. 아동 성폭력의 현황

한국성폭력상담소¹¹⁾ 2017년 상담통계를 보면 1991년부터 2017년까지 27년 동안 총 81,866회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2017년 전체 상담은 2,118회(1,414건)이며, 이중 성폭력상담은 총 1,955회(1,260건)로 전체 상담건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89.1%이다.

<표 2-1>과 같이 성폭력상담 전체건수 1,260건 중 1,191건(94.5%)이 여성피해자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청소년피해자(19세-14세) 146건(11.6%), 어린이피해자(13세-8세) 83건(6.5%), 유아피해자(7세 이하) 41건(3.3%)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9세 이하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252건(20.0%)으로 나타났다.

〈표 2-1〉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916(72.7)	141(11.2)	75(5.9)	36(2.9)	23(1.8)	1,191(94.5)
남	46(3.6)	5(0.4)	8(0.6)	5(0.4)	2(0.2)	66(5.2)
미상	2(0.2)	-	-	-	1(0.1)	3(0.3)
총계	964(76.5)	146(11.6)	83(6.5)	41(3.3)	26(2.1)	1,260(100.0)

<표 2-2>를 보면 전체 가해자의 94.1%(1,185건)가 남성이며, 이 중 성인은 1,008건(80.0%)이다. 19세 이하의 가해자도 121건(9.6%)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11) 출처: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일부 발췌

〈표 2-2〉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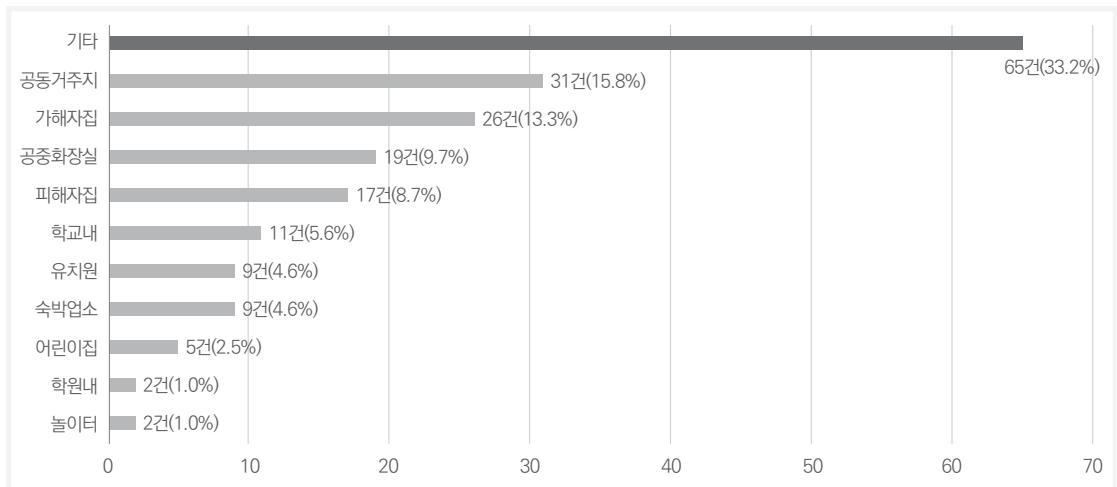
단위 :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33(2.6)	4(0.3)	1(0.1)	3(0.2)	5(0.4)	46(3.6)
남	1,008(80.0)	95(7.5)	16(1.3)	2(0.2)	64(5.1)	1,185(94.1)
미상	6(0.5)	-	-	-	23(1.8)	29(2.3)
총계	1,047(83.1)	99(7.8)	17(1.4)	5(0.4)	92(7.3)	1,260(100.0)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¹²⁾의 「2017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접수사례는 총 518건으로 이 중 성폭력 피해사례가 489건으로 94.4% 접수되었고, 기타사례(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는 29건(5.6%) 접수되었다.

이 중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어 서울해바라기센터를 내방한 아동·청소년 125명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여아가 100명(80%)으로 대부분 여아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아는 25명(20%)으로 2015년 16.5%, 2016년 17.5%에 이어 소폭 상승하는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이를 연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7세 미만 43명(34.4%), 7세~13세 미만 44명(35.2%), 13세 이상 38명(30.4%)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성폭력 피해 발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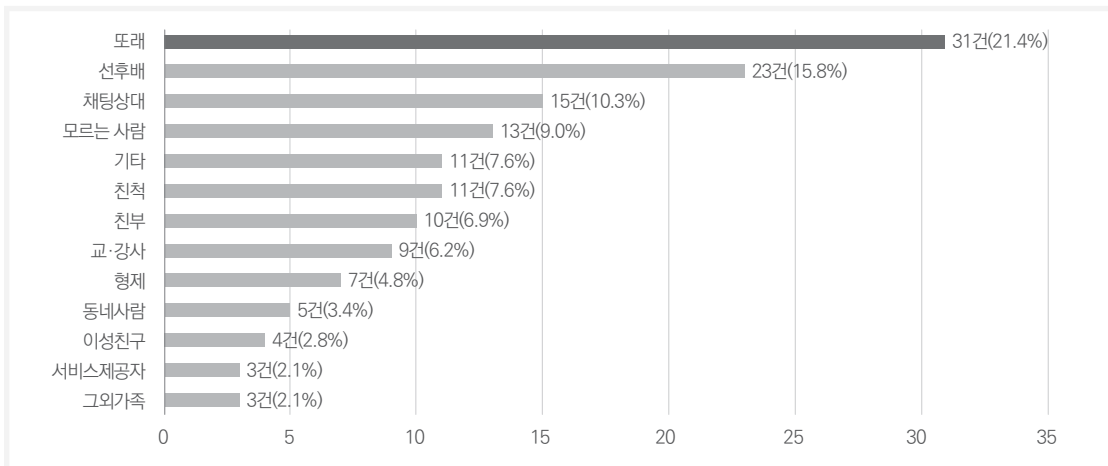


[그림 2-1]과 같이 성폭력 피해 발생 장소는 기타가 65건(33.2%)으로 가장 높았다. 기타 장소로는 영화관, 길거리, 아파트 비상계단, 룸카페, 주차장, 기숙사, 도서관 등이 해당되며, 아동이 피해 장소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공동거주지 31건(15.8%)으로 그중 시설 내 발생건수는 3건이며, 공동거주지는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친부, 형제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이다. 그 외 가해자집 26건(13.3%), 공중화장실 19건(9.7%), 피해자집 17건(8.7%) 순으로 발생하였다.

12) 서울해바라기센터 : 아동(2017). 2017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사업보고서.

[그림 2-2]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림 2-2]는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포함하여 총 145명의 가해자에 대한 통계자료 중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이다. 가해자 중 아는 사람이 132명(91.0%)으로 가장 높고,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13명(9.0%)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 중에는 도래가 가해자인 경우가 31명(21.4%)으로 가장 높으며, 기타의 경우 체육시설 운영자, 종교 지도자가 가해자이거나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아동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아동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특성과 차이를 알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접촉에도 기분 좋은 접촉과 기분 나쁜 접촉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나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부모와 교사에게 알리게 한다. 어른이 어떤 요구를 할 때도 때로는 자기주장을 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음을 알려 준다.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아는 사람이 라도 이상한 행동을 요구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아동이 다른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져서 혼란을 느낀다면 교사나 부모에게 언제라도 이야기하라고 알려주고, 반대로 아동 스스로도 다른 친구의 신체부위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알려준다. 그림이나 사진자료 등을 통해 신체구조와 차이,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 성폭력 예방교육 시 주의사항

부모와 교사가 과도하게 ‘성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강조하여 주의시키거나 관심을 끌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시 많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경험들이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또한 부모나 교사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말을 잘 들어 주고, 아동이 혼란스럽지 않게 설명해주며, 문제발생시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과 따뜻한 포용 등도 중요하다.

아동의 특징

- ① **아동은 힘이 없다.**
- ② **아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아동은 개인적인 안전과 성교육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 이러한 취약성은 더 커질 수 있다.
- ③ **아동은 모든 성인을 믿는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8세 이하의 아동은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든 성인을 잘 믿는다. 심지어 근처강간이나 가정폭력으로 교도소에 있다할지라도 아동은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유일한 보호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 ④ **아동은 성인의 동기나 의도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동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강요하기 위해 강제, 속임수, 위협, 물질공세, 갈취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grooming이란 가해자가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가해자는 아동과 자주 마주치기, 아동이 좋아하는 물건주기 등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하며, 성폭력을 할 때 아동에게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이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
- ⑤ **아동은 성폭력을 애정표현이나 애정의 증거로 오해하기도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은 성폭력적인 행동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이 수 있다. 가해자들은 아동들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성폭력을 행한 뒤 “너를 예뻐해 준거야”, “사랑해서 ~” 라고 아동을 속이기도 한다.

2)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법

(1) 너무 놀라거나 당황스러움을 표현하지 않는다.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표현할 경우 아동은 자신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피해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꺼리거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

(2) 야단치지 않는다.

“왜 조심하지 않았니?”, “왜 도망가지 않았어?”라는 말은 아동에 대한 질책이 될 수 있다. 아동은 성폭력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후 죄책감과 우울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다독여주는 것이 좋다.

(3) 너무 자세하게 캐묻지 않는다.

아동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나 말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그냥 얼버무리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수도 있다. 아동의 혼란스러운 기분을 충분히 안정시킨 후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

(4) 가능한 증거를 보존한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정액이나 혈흔 등이 묻은 중요한 증거물을 없애는 경우가 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필요한 증거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기억해 주세요

- ✓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 ✓ 아동에게 피해사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 ✓ 피해사실에 대해 아동에게 반복해서 묻거나 확인하지 마세요.
- ✓ 아동이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 못하게 막지 말고 잘 듣고 공감해 주세요.
- ✓ 가해자, 피해공간 등 피해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피하세요.
- ✓ 사건 처리과정에 아동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 ✓ 아동에게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말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3) 성폭력 피해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

구분	소개	연락처 등
해바라기 아동센터 	폭력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종합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아동 중심의 종합서비스와 전문가 그룹에 의한 후유증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성폭력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 및 보호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는다.	http://www.child1375.or.kr 1899-3075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에 6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과 교육, 사후관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http://www.korea1391.go.kr 아동지킴이콜: 112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1차적 긴급지원센터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상담이 필요한 여성이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및 피난처를 제공하며 전문 상담소,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여성을 지원한다.	https://www.women1366.kr 전국 어디서나 1366/ 1년365일 24시간 HOT-LINE운영

참고문헌

- 서울해바라기센터: 아동(2017). 2017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사업보고서.
- (사)한국성폭력상담소(2017).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II

실종 예방

1. 실종에 대한 이해

1) 실종아동의 정의 및 유형

종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실종’이다. 또한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관리법」 제2조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표 2-3〉 실종아동의 유형

미아	공공장소 등에서 아동이 길을 잃은 경우
유괴	금전, 성적 만족, 양육 등의 목적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
가출	아동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
사고	사고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버린 경우

〈표 2-4〉 관련 법령 및 용어 해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관련 용어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
	유전자검사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
	유전정보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
	신상정보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사전등록	실종예방을 위해 아동등의 지문,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실종아동 발생 및 보호시 활용하여 신속한 발견과 보호자 인계를 위한 제도(‘12. 2. 5. 도입)
	위치추적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이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위치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정보를 수색 등에 활용하여 신속하게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제도(‘12. 2. 5. 도입)

2) 실종아동 현황

〈표 2-5〉는 우리나라의 각 연도별 18세미만 아동의 실종신고 접수 건으로 총 통계가 작성되며, 접수 건수 중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동의 미발견 건수는 매년 발견 상황에 따라 수정되고 있다. 2014년 이전 누적 미발견 아동 수는 601건이며, 2018년 기준 실종아동 신고 접수는 21,980건, 미발견 아동 수는 108명이다. 다양한 제도 등을 활용하여 매년 미발견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표 2-5〉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미발견 현황

(단위: 건)

구분	18세미만 아동	
	접수*	미발견**
총 누적	-	601
2014년	21,591	2
2015년	19,428	1
2016년	19,870	6
2017년	19,956	7
2018년	21,980	108

*접수: 당해연도, **미발견: '18. 12월말(경찰청 통계 기준),

3) 실종으로 인한 문제

실종을 경험한 아동은 부모와의 분리 경험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실종을 경험한 가족은 슬픔, 죄의식, 죄책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많은 경우 가족 관계의 갈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다. 또한 자녀를 찾으며 실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실종아동 보호양육과 실종 가족지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게 한다.

2. 실종·유괴 예방교육

1) 실종·유괴 예방교육 내용

〈표 2-6〉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실시주기(총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 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 • 유괴범에 대한 개념 •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 시청각 교육 • 사례 분석

▶ 미아 상황의 3가지 수칙

미아 상황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순식간에 일어 날 수 있으므로 영유아가 평상시에 미아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미아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구호 3가지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가족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멈추고 기다리기!	내 이름과 가족의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를 10번씩 생각하기!	기다려도 가족이 오지 않으면 주위에 안전한 사람에게 “도와주세요!”하고 도움 요청하기!

▶ 유괴 상황의 3가지 수칙

유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처방안 교육은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본 교육에 해당한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한 사람과 안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유괴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구호 3가지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가족의 허락 없이는 타인을 따라 가지 않는다는 의사표현 하기!	가족 외의 타인을 따라 가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현 하기!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할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위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라고 도움 요청하기!

▶ 유괴 유형별 교육방법

〈표 2-7〉 아동 유괴범죄의 유형과 특성

유형	특성	대처방법
호기심유발형	선물 등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하면서 유괴한다. - 아동들이 좋아하는 물건이나 돈을 이용한다. - 얼굴이 예쁘니 TV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하는 식의 자부심과 명성을 이용한다. - 유명한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유인한다.	먼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로 거절한다.
지인사칭형	엄마 또는 아빠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며 유인한다. -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며 함께 이동할 것을 권유한다. - 이름을 부르며 친분이 있음을 표현하며 유인한다.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부모님 친구, 친척이라며 같이 가자고 하면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따라 가지 않는다.
동정심유발형	길을 잘 모른다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유괴한다. - 걸어가면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가장하며 유인한다. - 경찰이나 조사관으로 가장하여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도록 하여 유인한다.	길을 잘 모른다고 같이 가서 알려 달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없어요, 다른 어른에게 물어보세요.”하고 싫다고 말한다.
물리적 강제동원형	무조건 강제로 끌고 간다. - 같이 가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며 위협과 공포심을 이용한다. - 술이나 수면제 등이 들어 있는 약물을 이용한다.	한정한 골목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가자고 하거나 데려가려고 하면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하고 큰소리로 외친다.

▶ 유괴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

유괴를 당했을 경우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유괴범을 자극하거나 불안을 조성할 경우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처 방법을 교육한다.

- 격리된 공간에 유괴범과 단둘이 있을 경우, 울음을 참고 이야기를 잘 들을 것
- 고개를 숙이고, 유괴범의 얼굴을 가급적 보지 말 것

- 음식을 주면 먹기 싫어도 꼭 먹을 것
-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유의사항

미아 상황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 조성은 두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어 상황 대처에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처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아동 실종은 보통 큰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놀이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다. 가정문제로 인한 부모의 관심 부족이나 보호 소홀, 고의적인 유기, 유괴 등의 경우 아동에게 다시 집을 찾아 주기란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한 실종아동은 작은 관심으로도 대부분 부모의 품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실종아동 발생 시 신고사항

- 아동의 이름
- 아동의 나이(생년월일)
- 잃어버린 일시와 장소
- 잃어버리게 된 자세한 경위
- 실종 발생 당시 아동이 입고 있던 옷차림과 신발, 소품, 신체특징(얼굴·머리모양, 흉터나 점 등의 여부, 안경 착용여부, 키, 몸무게 등)
- 아동의 최근사진(가능한 다른 모습이 담긴 최근 사진 여러 장)
- 부모 이름 및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주소

▶ 길을 잃은 아동을 발견한 경우

- 아동이 길을 잃고 겁에 질리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으므로 아동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다.
- 가장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한다.
- 아동이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아동의 부모를 기다린다. 아동이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떨어진 경우 아동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이다.
- 아동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달래준다. 아동이 집에 간다고 혼자서 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 아동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 본다. 유괴방지를 위해 아동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두는 경우가 있다.
-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를 하면 실종아동 찾기 안내방송을 해준다.
- 아동을 실종아동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두도록 한다.

3. 실종·유괴 예방 수칙

1) 부모가 알아야 할 실종·유괴 예방 수칙

(1)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세요.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는다. 사전등록은 안전Dream홈페이지(안전 Dream 앱),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하다.

(2)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잠시 외출한다고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가지 않는다. 특히 아동이 잠든 틈에 외출은 금물이다. 아동이 깨서 부모를 찾으러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외출할 때에는 믿을만한 친척이나 이웃에게 자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 아이사랑 3대 실천 사항: 혼자 두지 마세요, 굶기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3)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

가까운 곳에 외출했을 때에도 잠시라도 아동을 혼자 두면 안 된다. 가까운 백화점, 슈퍼나 시장, 쇼핑몰, 영화관, 공원, 공공화장실 등에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화장실을 혼자 가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고, 자동차 안에 혼자 두는 것도 위험하다.

(4)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아동이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못하는 경우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착용토록 한다.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을 때에는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주는 것이 좋다. 낯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자녀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해 주세요.

자녀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버릇 등 상세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은 실종아동 예방 및 실종아동 발생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매일 자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해두고, 아동의 인적 사항을 적어 둔 카드를 집에 비치해 둔다.

(6)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세요.

자녀가 놀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빨리 아동을 수소문하려면 아동의 하루 일과와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외출할 때에는 누구와 가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등을 물어보고 시간 약속을 지키도록 알려준다.

(7) 정기적으로 자녀사진을 찍어두세요.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아동의 사진이다. 아동은 특히 성장이 빠르므로 너무 오래된 사진은 실종아동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가능한 정기적으로 아동 사진을 찍어 보관하도록 한다(사전등록된 경우 아동의 사진 수시 변경 가능).

2) 아동에게 이것만큼은 꼭 알려주세요.

(1) 아동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알려주세요.

평소 잘 알고 있는 내용도 당황하면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연습한다. 아동과 함께 실종 아동 발생상황을 연출해 보고 함께 연극(역할극 등)을 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즉, 쇼핑몰이나 공원 등에서 길을 잃을 경우, 무작정 길을 걷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기다리게 하고, 주위 어른들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만약 아이가 전화할 수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근처 상점 등에 들어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182 혹은 112에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2) 밖에 나갈 때는 누구랑 어디에 가는지 꼭 이야기 하도록 가르치세요.

평소에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이야기하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등을 부모와 약속하는 습관을 들인다. 또한 가급적 외부에서는 잠시라도 혼자 다니지 않고, 친구들이나 믿을만한 어른과 함께 다니도록 알려준다.

(3)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키세요.

처음 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막연히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기 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길을 물어 보며 차에 태우거나, 엄마 친구를 사칭하거나, 강아지를 함께 찾아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할 때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만약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데려 가려고 할 때에는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알려준다.

※ 납치범들이 물건을 들어달라고 하거나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달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차량 등에 납치하는 것에 유의한다.

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1)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학교주변·통학로·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이다.

▶ 아동안전지킴이집 자격

- 아동보호·제도 운영에 자발적 참여의지가 강한 업소
- 경찰관련 협의회 등 평소 협력치안활동에 적극적인 업소
- 사회봉사 및 아동보호에 관심이 많은 업소

※ 단, 풍속업소, 청소년보호법(주류, 담배판매 등) 위반 업소, 풍속법규 등 위반, 성범죄 우려자 등은 배제



2) 아동안전수호천사

아동안전수호천사란, 신뢰성 있는 업체의 외근사원을 수호천사로 위촉하여 외근활동 중 아동보호활동을 한다. 현재 야쿠르트 아줌마, 집배원, 태권도 사범, 모범택시운전자회, 학원차량기사 등이 활동 중이다.

3) 코드 아담

코드 아담(Code Adam)이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마트나 백화점 등의 시설에서 아동 등의 실종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종예방지침이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 조치단계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시설 운영자는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통제나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시에 실종 상황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알리고,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실종자를 수색한다.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대상시설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놀이공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5,000㎡ 이상의 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 도시철도역사나 철도역사, 관람석 5,000석 이상의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과 경마장 등이 대상 시설이다. 코드아담 대상 시설의 운영자는 실종예방지침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 1회 시행해야 하며 해당 결과를 경찰에 보고(미실시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 또한, 해당 시설이 코드아담 미조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앰버경보

앰버경고 시스템은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등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체계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9일 경찰청 주관 하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시행되었다. 만 14세 미만의 유괴·실종 아동 발생 시 전국 고속도로·국도 및 서울시 고속화도로·지하철 전광판 등 총 4천 2백개소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 광범위하게 전파하게 된다.

5) 아이CU

아이 CU는 ‘CU에서 아이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길을 잃은 아이(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포함)를 CU 매장에서 일시 보호하다가 경찰 및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이어주는 BGF의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2018년 4월 ‘편의점 기반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CU 매장과 경찰청 신고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원터치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치방법) 미아 발견 시 CU 근무자는 파악 가능한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결제단말기(POS)에 입력한다. 입력한 정보는 112신고와 동시에 전국 CU에 실시간 공유된다.

[부록 1]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2018년 12월 기준)

시도	기관명	주소	기관 대표번호
중앙	중앙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서계동)	02)701-0431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	02)772-9814~8
	서울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2길 7(대치동 961-17)	02)546-1736~7
	서울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6길 16(성내동 556-1)	02)486-3556
	서울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수유동 410-293)	02)994-7480
	서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2길 50(내발산동)	02)2064-2730~2
	서울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128 2~3층(봉천동)	02)851-2834~5
	서울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56가길 31 3층(군자동)	02)467-1827~9
	서울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구로동지점 3층(구로동)	02)859-5432, 5678
	서울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시흥동)	02)894-2264~5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층(상계동)	02)930-1944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2길 28(방학동 306-10)	02)3494-3341~2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62(답십리동)	02)2247-5843~5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대방동 385-2 3층)	02)823-4567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1길 71(상암동 1686)	02)308-0202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구보건소 별관 우리들 1층	02)3217-9550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46(서초동)	02)598-9340
	서울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60(상왕십리동)	02)499-5675~6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10길19(하월곡동222-6)	02)918-8080~2
	서울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오금동 50번지)	02)449-0505(내선2번)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층(신정동)	02)2646-7790~1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40길 5(신길4동 232-20)	02)833-6022, 6025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꿈나무종합타운 2층	02)749-9673-4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5가길 4(구산동)	02)351-3629/3630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1길 6-3(명륜3가동 147-1번지), 3~4층	02)737-0890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길 5(신당동 292-60)	02)2263-2626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67길 10(망우동) 망우본동복합청사 6층	02)495-0030~1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62	051)866-0536~7
	부산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중앙로 110	051)991-0777
	부산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실로 129	051)526-0756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가야동)	051)936-7011
	부산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210번길 17(래법동)	051)321-3389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24번길 22	051)866-7191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513번길 66-11	051)527-2446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371길 30(내당2동 52-4번지)	053)421-2346~7
	대구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53길 36	053)662-3521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수산동) 남동체육관 내 1층	032)431-4606~9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계산동) 사회복지회관 1층	032)556-5712~4
	인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9번길 10-18 4~5층	032)884-0756
	인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18번길 51, 2층(삼산동)	032)361-8653~4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 264(심곡동)	032)568-7234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청사 내 604호	032)715-8262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내 2층	062)714-3635~6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32 동관1층	042)721-1256~7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	052)266-4173~4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 251(달동 1322-9)	052)256-9508~10
	울산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 1길 61, 2층(전하동)	052)201-0961
	울산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18	052)246-0600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8길 66	052)275-1233

시도	기관명	주소	기관 대표번호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16(중촌동, 종촌종합복지센터 1층)	044)865-0561
경기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031)258-1485
	경기도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9 4층 (의정부동)	031)876-5767~8
	경기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5(화정동)	031)975-3314
	경기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2 가족여성플라자 4층(부림동)	02) 6925-2526
	경기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성채로 78번길 7 (소하 2동)	02)899-0163~4
	경기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 1404-1	031)765-6010
	경기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 34(인창동 527-37)	031)566-2323
	경기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0, 3층(산본동)	031)393-0236
	경기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장기동)	031)985-1901
	경기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어린이이비전센터	031)528-4463~4
	경기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0	032)322-8686
	경기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96번길 30-1 4층(복정동 667번지)	031)721-1640
	경기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4번길47 (정자동)	031)255-5682~4
	경기 수원시동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59번길 29(영통동)	031)273-6690~2
	경기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37, 3층	031)431-5682
	경기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교로155 안산대학교 채플관 B6호(일동)	031)415-2271~3
	경기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39 만안평생교육센터2층(안양동)	031)383-5170~1
	경기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26(고암동)	031)8082-4225-6
	경기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670-2	031)374-5563
	경기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90	031)335-8690
	경기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22 여성회관 지하1층(오전동)	031)455-1853~4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 덕암빌딩 3-5층 (의정부2동 572-5)	031)853-5006-8
	경기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38(중리동)	031)634-9842~4
	경기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1680 문산행복센터 3층	031)954-4800
	경기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성동로 11길 2(비전동)	031)692-7705
	경기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031)536-9632
	경기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4번길 125 6층	031) 796-6579
	경기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도이리 산31-6번지)	031)8059-1640~2
강원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35 (후평1동)	033)244-2660
	강원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용지각길 20번안길 3(3층) (포남동)	033)641-1382
충북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410호(북대동)	043)239-8777~8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13-2(내덕동)	043)222-6660
충남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1층(의회동)	041)634-6234~9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 6로 127(차암동)	041)561-2821~2
전북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1 38 충청북도 여성일자리센터 2층(2-5)	063)276-8080~1
	전북 고창군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 2길 20	063)564-0862
	전북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30(1~2층)	063)911-0756
	전북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궁동로 43	063)859-4765
전남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길 61번길 2동3층	063)905-6509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2층	061)285-5455~6
경북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울산길 27	061)749-4085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360	054)337-9939-40
경북	경북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1로1길 25	054)421-2471, 2470
	경북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기차역옆길 25(흥덕동 257-1)	054)701-2337
	경북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포항시 평생학습원 407호(상도동)	054)256-2580,2,7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로 20 창원대학교 두레관 4층	055)213-2471~5, 7
경남	경남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 64	055)639-4991
	경남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463번길17(하대동)	055)749-5435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가음동 20-8) 창원시여성회관 창원관 4층	055)287-1216
	경남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9	055)934-0883~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북길 13-26 2~3층(해안동)	064)746-2211
	제주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동로22(법환동)	064)739-6275

[부록 2]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8년 12월 기준)

시도	기관명	주소	기관 대표번호
중앙	중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6길 19(역삼동)	02-558-1391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수서동)	02-2040-4242
	서울특별시동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	02-2247-1391
	서울강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시정헌빌딩 2층 (가양동)	02-3665-5183~5
	서울은평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4층(응암동)	02-3157-1391
	서울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407호	02-842-0094
	서울성북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1층(타운힐빌딩)	02-923-5440
	서울마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	02-422-1391
	서울동남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태광빌딩 5층	02-474-1391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31	02-974-1391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2가)	051-791-1391
	부산동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호	051-715-1391
	부산서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상가 405,406호	051-711-1391
	부산남부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503호(범일동)	051-791-1360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동인동3가) 2층	053-422-1391
	대구남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송현동) 2층	053-623-1391
	대구북부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25길 12-1(산격동)	053-710-1391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주안동)	032-434-1391
	인천북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5층 504, 505호(계산동, 삼환1빌딩)	032-515-1391
	인천남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간석동)	032-424-1391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쌍촌동)	062-385-1391
	빛고을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97-2	062-675-1391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울로 156(중촌동)	042-254-6790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성안동)	052-245-9382
	울산남부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355번길 23	052-256-1391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044-864-1393
경기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25번길 20	031-245-2448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4층(도림빌딩)	031-874-9100
	경기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031-756-1391
	경기고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 11, 7층(행신동, 삼정프라자)	031-966-1391
	경기부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79 서호빌딩4층 405호 (중3동 1058-4)	032-662-2580
	경기화성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4층(봉담읍, 송현빌딩)	031-227-1310
	경기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204호(금곡동, 다남빌딩)	031-592-9818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35, 402호	031-402-0442
	경기용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9 505호(구갈동)	031-275-6177
	경기시흥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대야동, 2층)	031-316-1391
	경기평택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소사동)	031-652-1391
	수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392번길 17	031-8009-0080

시도	기관명	주소	기관 대표번호
강원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35(후평1동)	033-244-1391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5번길 33 2층(교동, 반트빌딩 2층)	033-644-1391
	강원서부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7(명륜동)	033-766-1391
	강원남부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 2,3층	033-535-5391
충북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202번길 66-1(울량동)	043-216-1391
	충북북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118	043-643-0943
	충북남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19(옥천읍)	043-731-3685
충남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성정동)	041-578-2655
	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84번길 55(취암동)	041-734-6640
	충청남도서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층 (신경리 903)	041-635-1106
전북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	063-283-1391
	전라북도서부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갈산동 185-3)	063-852-1391
	전라북도동부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향교동)	063-635-1391
전남	전라남도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	061-753-5125
	전남서부권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	061-285-1391
	전남중부권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층	061-332-1391
경북	경북남부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95번길 24	054-745-1391
	경북북부	경상북도 안동시 법적골길 20	054-853-0237-8
	경북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25번길 12, 3층(대잠동)	054-284-1391
	경북서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3층(송정동 80-1 하나빌딩)	054-455-1391
경남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회원동)	055-244-1391
	경남서부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상대동)	055-757-1391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2층(부원동)	055-322-139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064-712-1391-2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서귀동)	064-732-1391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아동학대 예방

발행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발행일 : 2019년 2월

인쇄 / 디자인 : 디자인여백플러스

ISBN : 979-11-85610-28-3

※ 본책자의 판권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의해 본 출판물의 내용 일부 혹은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지킴이 아이안전!
키우세요 아이희망!

2009년 설립되어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2019년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달라지는 점

- 2009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 어린이집 안전사고 위험 분산을 위한 맞춤형 공제상품의 지속적인 보장확대
- 「영유아(방과후) 생명 및 신체피해」 「제3자 치료비 특약」 상품 공제로 인상 없이 보상한도 확대
 - 영유아(1인당 4억원→5억원, 1사고당 20억원→30억원, 형사소송지원금 300만원→500만원), 제3자치료비(100만원→300만원)
 - 자연재해 위험 환경 변화에 맞춘 「풍수해 특약」 상품 보상한도 다양화
 - 풍수해 특약(1천만원 or 2천만원 중 선택 가입 가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사업 추진

-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수행을 통한 영유아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진행
- 보육현장 사례중심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 보육, 소방 등 맞춤형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 공모전 및 뉴스레터 운영으로 영유아 안전 환경 조성
- 영유아, 보육교직원,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대표번호 1600-06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길 용산빌딩 7층 www.csia.or.kr

비매품/무료



9 791185 610283

ISBN 979-11-85610-28-3